

2010년

#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1

연구위원	김갑래
연구원	김수연

1



# 서 언

지난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법이 전면 시행된 이래로 우리 자본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우려를 극복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반한 본격적인 성장의 기로에 서있다. 자본시장법 시행 2주년을 넘긴 현 시점에서 우리 자본시장은 투자은행(IB)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시너지의 창출, 투자자보호와 금융투자업 활성화간의 균형유지 등에 있어 취약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시장친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정책당국은 글로벌 IB 육성, 사모펀드·연기금 활성화,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자금조달 체계개선 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자본시장 제도동향은 이러한 금융정책적 노력의 결과물인 법 규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설명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2010년에는 투자자 보호강화, 사모펀드 활성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주식시장 건전화, M&A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많은 제도적 개선 노력이 있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2010년 한해 동안의 자본시장 제도변화를 전반적으로 개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본문과 부록의 이원적 체제로 편성되었다. 먼저 본문에서는 자본시장제도의 변동사항을 자본시장·금융투자업·감독행정·상장법인·기업지배구조와 구조조정 등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으며, 부록에서는 이들 내용을 법령·금융위원회규정·한국거래소규정·금융투자협회규정 등 각 규정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본 보고서는 한국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갑래 연구위원과 김수연 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저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원고 정리와 편집을 담당한 김지희 연구조원 및 월간 제도동향 작성에 참여한 여

러 연구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가 우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2011년 2월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김 형 태

# 목 차

<b>I. 자본시장</b> .....	<b>1</b>
1. 주식시장 .....	1
2. 채권시장 .....	22
3. 파생상품시장 .....	31
4. 예탁, 결제, 청산 .....	62
5. 기업공시 .....	69
<b>II. 금융투자업</b> .....	<b>87</b>
1. 금융투자회사 .....	87
2. 집합투자기구 .....	101
3. 기업채무안정투자회사 .....	117
<b>III. 감독 행정</b> .....	<b>121</b>
1. 법적규제기관 .....	121
2. 자율규제기관 .....	134
<b>IV. 상장법인</b> .....	<b>145</b>
1. 우회상장제도 .....	145
2. IFRS 관련 규정 .....	157
<b>V. 기업지배구조와 구조조정</b> .....	<b>164</b>
1. 일반기업 .....	164
2. 금융기관 .....	168

## <부 록> 규정별 변경내용

<b>I. 법령 등</b> .....	<b>175</b>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175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9
3. 금융지주회사법 .....	182
<b>II. 금융위원회 규정</b> .....	<b>187</b>
1. 금융투자업 규정 .....	187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191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196
4.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199
5.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	201
6. 은행업감독규정 .....	202
7.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	203
8. 전자금융감독규정 .....	204
<b>III. 한국거래소 규정</b> .....	<b>205</b>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205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9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218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227
5.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237
6.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242
7.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245

8.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47
9.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253
1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259
11.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	263
12.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267
1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269
14.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74
15.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	289

#### **IV. 금융투자협회 규정 ..... 291**

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291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305
3.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심의기준 .....	308
4.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308
5.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	309
6.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311
7.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관한 규정 .....	312
8.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	315
9.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기준 .....	317
10. 연계신용 리스크 관리등을 위한 모범기준 .....	320
11. 표준투자권유준칙 .....	322
12.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324
13.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325
14. 불공정거래방지 업무처리 모범기준 .....	327



# I. 자본시장

## 1. 주식시장

□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전자어음 발행의무 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조 3항 : 2010/3/12 개정 · 시행)

### 약속어음 & 기업어음증권(Commercial Paper, CP)

약속어음 : 발행인이 소지인에 대하여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을 말하며, 어음법에서 규율하고 있음(어음법 75~78조). 전자어음법(6조의2)에 따라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며, 이러한 전자어음은 어음법상 백지식 배서가 금지됨

기업어음증권(CP) : 기업이 상거래에 기인(진성어음)하지 않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약속어음(유통어음)을 말함. 실제 채무증권으로서의 속성이 강한 점을 감안하여 자본시장법상 별도의 규정을 통해 증권성을 부여하고 있음.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하여 종이어음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음(자본시장법 4조 3항, 동법 시행령 4조)

- 전자어음법(2009/5/8 개정, 11/9 시행)에서는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발행 및 유통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 기업어음증권(CP)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법에 따른 전자어음 발행 의무를 면제함
  - 전자어음법상 전자어음은 실물이 아닌 전자문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동법 6조의2, 23조),
  - 자본시장법상 기업어음증권은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용지에
  - 종이어음으로 발행되어야 하므로 전자문서로 발행될 수 없음

- 경쟁대량매매호가 및 경쟁대량매매주문에 관한 정의 조항 및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에 한하여 장중경쟁대량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조 4항, 5항, 4조 1항, 2항, 30조의2, 34조의3 : 2010/7/21 개정, 11/29 시행)

- 경쟁대량매매호가(주문)란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 등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주문)를 의미

**대량매매(block trading)**

주식시장에서 일정한 수량 이상의 대량주문을 혼란 없이 처리하기 위한 매매방법으로 통상적인 매매거래 방식으로는 적당한 시간 내에 적정한 가격으로 주문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사용됨. 즉,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규모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호가(quotation)**

매매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을 경쟁자에게 제시해 시장에서 상대자를 구하는 수단. 호가단위는 시장 가격표시의 최소단위이자 시세변동의 측정기준이 됨

- 장중경쟁대량매매시간은 9시부터 14시30분(4조 3항), 시간외경쟁대량매매시간은 7시30분부터 8시30분으로(33조)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매매거래가 체결
  -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9시부터 15시까지이며, 장 종료후 시간외 시장은 시간외경쟁대량매매가 적용되지 아니함
- 장중·시간외경쟁대량매매 가격은 해당 장중거래 성립 후부터 장 종료시·장개시시부터 장종료시까지 정규시장에서 성립된 해당 거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며,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 없는 경우 당일의 종가, 당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 세척에서 정하는 가격임

-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의 산출방법은 세칙에서 정함
- 호가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 위임
  
- 장 개시전 시장외시장(시장외대량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의 거래 시간을 9시로 일부 연장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4조 3항, 부칙 1조 : 2010/12/1 개정, 2011/5/30 시행)
  - 하지만 장 개시전 시간외종가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는 기존과 동일하게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로 함
  
- 장중경쟁대량매매 및 경쟁대량매매 관련 규정 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조 1항, 13조 1항, 14조, 17조 1항, 25조 3항 : 2010/7/29 개정, 11/29 시행)
  - 장중경쟁대량매매 호가 접수시간을 장개시시부터 장종료 30분전까지로 정함
  - 정규시장의 경우 장중경쟁대량매매와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간, 시간외시장의 경우 시간외종가매매와 시간외경쟁대량매매 호가간 상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 경쟁대량매매 시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등 입력을 금지
  - 경쟁대량매매호가의 수량 일부 취소는 취소 후 호가 잔량이 경쟁대량매매의 호가수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
  - 경쟁대량매매를 통한 공매도의 경우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을 제한하는 규정 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 경쟁대량매매의 경우 회원이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음
    - 즉 경쟁대량매매를 통한 공매도 시에는 업틱룰(up-tick rule)의 적용되지 아니함

### 업틱룰(up-tick rule)

주식을 공매도 할 때에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 즉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업틱룰은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주식을 팔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임. 반대로 자유롭게 매도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룰을 '제로틱 룰(zero-tick rule)'이라고 함

- 장개시전 시장의대량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의 호가접수시간을 기존 8시 30분에서 9시로 연장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조 1항 가목 : 2010/12/6 개정, 12/13 시행)
  - 하지만 장개시전 시간외종가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의 호가접수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로 함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 volume weighted average price) 산출 방법 및 호가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등을 정함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8조의2, 51조의3 : 2010/7/29 개정, 11/29 시행)
  - 장중경쟁대량매매에 적용할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은 해당 거래 성립 후부터 장종료시까지, 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 적용할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은 장개시시부터 장종료시까지 정규시장에서 성립된 해당종목의 총거래대금을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
    - 산출한 금액 중 원 미만은 절사하되,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 증가보다 낮은 경우 원 미만의 금액을 절상
    -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 없는 경우 당일의 종가, 당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 기준가격(평가가격을 포함)을 적용

- 호가수량요건으로 호가수량에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매매수량단위는 100주로 하고,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은 경쟁대량매매종목에서 제외함

□ 경쟁대량매매의 가격 관련 규정 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8조, 109조 6항, 136조 1항 : 2010/7/29 개정, 11/29 시행)

- 수탁자는 경쟁대량매매 주문이라는 사실, 이에 부여된 IOC, FOK 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가격은 수탁 항목에서 제외
  - IOC 조건이란 해당 주문과 관련된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
  - FOK 조건이란 해당 주문과 관련된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의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수량의 전부를 취소하는 조건
- 경쟁대량매매 성립 시 회원은 위탁자에게, 거래소는 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체결수량과는 달리 체결가격의 경우 장종료 후 각각에게 통지하여야 함

□ 경쟁대량매매호가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조 6항 6호 : 2010/7/21 개정, 11/29 시행)

- 경쟁대량매매호가란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거래량가중평균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를 의미

□ 장중경쟁대량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 관련규정 정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19조의3, 21조의2, 39조 3항 단서 : 2010/7/21 개정, 11/29 시행)

- 주권, 외국주식에탁증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에 한하여 장중경쟁대량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
  - 장중경쟁대량매매시간은 9시부터 14시30분(4조 3항), 시간외경쟁대량매매시간은 7시30분부터 8시30분으로(21조의2)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매매거래가 체결
  -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9시부터 15시까지이며, 장종료후 시간외 시장은 시간외경쟁대량매매가 적용되지 아니함
- 장중·시간외경쟁대량매매 가격은 해당 장중거래 성립 후부터 장종료시·장개시시부터 장종료시까지 정규시장에서 성립된 해당 거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며,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 없는 경우 당일의 종가, 당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 세척에서 정하는 가격임
  -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의 산출방법은 세척에서 정함
- 호가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척에 위임
- 회원은 경쟁대량매매의 체결가격을 장종료후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아야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장개시 전 시간외대량매매의 매매거래시간을 오전 7시30분에서 9시까지로 30분 연장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4조 3항 : 2010/12/1 개정, 2011/5/30 시행)

- 단, 시간외종가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는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로 함

□ 호가 접수시간을 장중경쟁대량매매의 경우 장개시시부터 장종료 30분전까지, 시간외경쟁대량매매는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로 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조 1항 1호 다목, 6조 1항 2호 가목 : 2010/7/29 개정, 11/29 시행)

□ 경쟁대량매매의 호가 관련 규정 개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조1항~2항, 7조의3 1호, 8조 1항, 8조 3항, 9조의4 2항, 13조 : 2010/7/29 개정, 11/29 시행)

- 정규시장의 일반 개별경쟁매매에 준하여 호가의 내용 규제
-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및 상장지수펀드에 한하여 경쟁대량매매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경쟁대량매매를 위해 제출되는 호가로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등 입력이 금지
- 경쟁대량매매호가는 경쟁대량매매 이외의 매매거래에 제출하여서는 안 됨
  - 경쟁대량매매호가 정규시장의 매매 거래시 제출하는 호가, 시간외종가·단일가·대량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및 관리 종목 또는 정리매매 종목을 경쟁대량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와 지정가호가 경쟁대량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 입력이 제한
- 경쟁대량매매를 통한 공매도의 경우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을 제한하는 업틱룰(up-tick rule)을 적용하지 아니함
- 경쟁대량매매호가의 효력은 정규시장·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별로 호가 접수시점부터 매매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인정됨

□ 호가가격단위로 신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8조 2항 : 2010/7/29 개정, 11/29 시행)

- 1주 가격이 1000원 미만의 종목에 대하여 1원, 1주 가격이 1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인 종목에 대해서는 5원으로 호가가격단위로 신설
  - 1주는 1증권 및 1증서를 포함

□ 거래량가중평균가격 산출 방법 및 호가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등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2조의3, 24조의2 : 2010/7/29 개정, 11/29 시행)

- 경쟁대량매매에 적용할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은 해당 거래 성립 후부터 정규시장(장중대량매매와 장중경쟁대량매매 제외)에서 형성된 매매거래의 총거래대금을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
  - 동가격이 증가보다 높은 경우 1원 미만 절사, 낮은 경우 1원 미만 절상하여 1원 단위로 산출함
  -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 없는 경우 당일의 종가, 당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 기준가격(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가격)을 이용
- 호가수량요건으로 호가수량에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매매수량단위는 1주로 하고,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은 경쟁대량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함

거래소는 경쟁대량매매에서 형성된 가격의 경우 장종료 후 지체 없이 회원에게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9조 3항 : 2010/7/29 개정, 11/29 시행)

- 회원은 이에 대한 통보를 받은 때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

주문 유형으로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을 거래량가중평균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쟁대량매매주문을 신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7조의2 6호 : 2010/7/29 개정, 11/29 시행)

**<표 1> 거래소 매매방식 비교**

	정규시장매매	대량매매	경쟁대량매매
방식	경쟁매매	상대매매	경쟁매매
주문공개 여부	호가 및 거래공개	비공개(상대방 탐색 과정에서 주문정보 노출)	비공개(익명거래로 주문정보 노출 없음)
가격	지정가, 시장가	당사자간 합의된 가격	거래량가중평균가격 (VWAP)
체결순위	가격, 시간 우선	우선순위 없음	시간우선의 원칙
체결시점	정규시장 거래 중 실시간 체결	당사자간 합의된 시점	거래시간 중 실시간 체결
호가수량 요건	10주 (코스닥의 경우 1주)	500배 혹은 1억원	5억원 이상(코스닥의 경우 2억원 이상)
매매수량 단위	10주 (코스닥의 경우 1주)	1주	100주 (코스닥의 경우 1주)
매매거래 시간	9시~15시(정규시장)	7시30분~8시30분(장개시전) 9시~15시(장중) 15시 10분~18시(장종료후)	7시30분~8시30분(장개시전) 9시~14시30분(장중)
정보공개	호가, 가격, 거래량 실시간 공개	거래량 장종료후 공개	거래량 장종료후 공개
거래 시스템	매매체결시스템	K-Blox+ 매매체결시스템	매매체결시스템
이용자	최유리가격 수요자 및 신속 거래 수요자	당사자간 배타적 거래 수요자	거래량가중평균가격에 의한 대량거래 수요자
특징	가격 발견 및 신속한 체결	당사자간 합의된 거래의 집행	거래상대방 발견 및 익명의 대량거래

□ 외국기업 매매거래 관련 호가입력 제한 근거 마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조 7항 : 2010/4/15 개정, 4/19 시행)

- 외국기업의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해당 호가의 입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거래소가 호가입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력 제한 내용을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함

□ 주문접수 기재대상, 주문위탁방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2조 1항, 42조 2항 : 2010/10/19 개정, 11/29 시행)

- 주문접수시간 기재대상에 시스템을 포함하고, 주문위탁방법에 전자통신방법을 추가하여 조문을 정비
- 회원은 접수한 주문을 한국거래소에 호가로 제출함에 있어 위탁자의 주문간 및 위탁자의 주문과 회원의 상품 운영을 위한 호가 간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 회원은 형평성 판단에 있어 주문입력매체의 특징과 주문건수 등을 감안하여야 함

□ 지주회사 신규상장심사 또는 관리종목지정 관련 매출액 적용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3조 2항, 75조 1항 9호 : 2010/4/21 개정, 4/26 시행)

- 지주회사 주권의 신규상장심사시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액 산정 방식을 적용하도록 함
  - 다만, 지주회사의 설립일 또는 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 매출액은 각 사업연도의 자회사 매출액에 설립 또는 전환 당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함
- 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함

- 신규상장심사요건 중 3년의 영업활동기간 범위를 확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2조 1항 1호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상법상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도 종전 회사의 실질적인 영업활동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개정
  
-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신규상장예비심사 기간을 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5조의2 : 2010/12/30 개정, 2011/1/1 시행)
  - 거래소는 적격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에 대하여 신규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신규상장신청인 또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외국기업의 상장예비심사(재심사 포함)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8조 3항, 부칙 1조 : 2010/12/1 개정, 12/6 시행)
  - 단 거래소가 지정하는 해외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외국기업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제외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등 외국주권의 상장신청서류 작성시 환율적용 기준 명확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51조, 별지 1호 : 2010/4/23 개정, 4/26 시행)
  - 외국법인 등이 작성하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등 서류 기재내용 중 '금액관련 사항'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 적용되는 환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 재무상태표 또는 연결재무상태표상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 : 당해 재무제표 작성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말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준환율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 : 당해 재무제표 작성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중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매일의 기준환율을 산술평균한 환율

□ 상장예비심사청구시 보호예수 의무자에 업무집행지시자 포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4조 2항 4호 : 2010/4/21 개정, 4/26 시행)

- 상장예비심사시 보호예수 의무자에 해당하는 최대주주등에 상장예정법인의 '업무집행지시자(상법 401조의2 1항)'가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업무집행지시자**

상법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이사의 기능을 영위하는 자들에 대해 '업무집행지시자'로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대표소송에 있어 이사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실상의 이사'라고도 하며, ①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②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③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가 이에 해당함(상법 401조의2 1항)

□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상장예비심사청구 전 사전협의 허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4조 1항 : 2010/4/21 개정, 4/26 시행)

- 코스닥시장에 신규 또는 재상장을 하고자하는 법인이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대해 상장예비심사청구 전 상장절차 등에 관해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외국기업의 상장예비심사(재심사를 포함)기간을 3월로 연장함에 따라 시행세칙도 외국기업의 상장심사기간을 2월에서 3월로 변경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8조 3항 : 2010/12/3 개정, 12/6 시행)

- 단 「코스닥시장상장규정」 6조 1항 3호 마목의 거래소가 지정하는 해외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외국기업 즉 적격증권시장 상장의 국기업의 2차 상장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2월의 상장심사기간을 적용받음

-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와 관련하여 자본잠식률, 자기자본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구체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6조 1항 4호 : 2010/12/31 개정, 9/6 시행)

- 자본잠식률 및 자기자본 관리종목 지정요건(상장규정 28조 1항 4호가목 나목)의 경우 반기연결검토보고서 미제출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법인(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은 관리종목의 지정시기를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3에 따른 반기검토보고서의 주식상지분법 적용 재무정보에 의하여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 주권(DR 포함) 대용증권의 사정비율 개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5조, 115조의2 : 2010/11/9 개정, 11/29 시행)

- 주권 등의 사정비율은 현행 70%(코스피50 구성종목은 80%)에서 기업가치 및 유동성을 기준으로 세분화
  - 일평균거래대금이 상위 50% 이내이면서 코스피200 구성종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정비율을 80%로 상향조정함
  - 일평균거래대금이 하위 5% 이내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는 사정비율을 60%로 하향조정함

- 그 밖의 종목은 사정비율 70%를 유지함
- 주권 등의 일평균거래대금은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1년간 해당 종목의 정규시장 총거래대금(장중경쟁대량매매, 장중대량매매 및 장중바스켓매매 제외)을 거래일수로 나누어 산출
- 사정비율은 매분기말 산출하여 다음 분기 동안 적용

#### □ ETF 대응증권의 사정비율 개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5조 : 2010/11/9 개정, 11/29 시행)

- ETF의 사정비율은 현행 70%에서 연동하는 주가지수 및 채권지수의 유형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을 신설함
  - 주가지수 ETF는 코스피200, 코스피50, KRX100에 각각 1:1로 연동하는 경우는 사정비율을 80%로 함
  - 채권지수 ETF는 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CD로 구성된 지수에 연동하는 경우 95%, 일반사채권·CP(주식관련사채권 및 주가연계증권 제외)로 구성된 지수에 연동하는 경우 85%, 주식관련사채권 및 주가연계증권이 포함된 지수에 연동하는 경우 80%로 각각 조정함
  - 그 밖의 ETF는 사정비율 70%를 유지함
- 사정비율은 매분기말 산출하여 다음 분기 동안 적용

#### □ 분기 중 대응증권으로 지정된 종목 등의 사정비율 적용 신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5조의3 : 2010/11/9 개정, 11/29 시행)

- 분기 중 주권 등의 대응증권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분기의 잔여 기간 동안 사정비율 적용함
  - 새로이 지정된 주권 등이 “일평균거래대금이 상위 50% 이내이면서 코스피200 구성종목에 해당하는 종목” 중 일평균거래대금이 가장 적은 종목보다 많은 경우는 사정비율을 80%로 함
  - 또한 지정된 주권 등이 “일평균거래대금이 하위 5% 이내에 해당하는 종목” 중 일평균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보다 적은 경우는 사정비율을 60%로 함

- 그 밖의 종목은 사정비율 70%로 함
  - 분기 중 코스피200 구성종목으로 편입 또는 제외되는 경우의 사정비율은 분기 중 대응증권으로 지정된 주권 등의 사정비율을 준용
- 주권(DR 포함) 대응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ETF 대응증권의 사정비율 개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7조 2항~4항, 47조의2 : 2010/11/9 개정, 11/29 시행)
- 주권 등의 사정비율을 현행 70%에서 기업가치 및 유동성을 고려하여 세분화
    - 일평균거래대금이 상위 20% 이내이면서 코스닥 프리미어지수에 해당하는 종목인 경우 사정비율을 80%로 상향조정함
    - 일평균거래대금이 하위 5% 이내의 종목인 경우 사정비율을 60%로 하향조정함
    - 그 밖의 종목은 사정비율 70%를 유지함
  - 코스닥시장의 ETF 대응증권의 사정비율 신설
    - 코스닥시장과 연동된 ETF의 사정비율은 70%를 적용함
  - 일평균거래대금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해당종목의 정규시장의 총거래대금을 거래일수로 나누어 산출
  - 사정비율은 매분기말에 산출하여 다음 분기동안 적용

**주식예탁증권(DR, deposit receipt)**

일반적으로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국제간 투자 및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증권대체증서. 동 증서는 발행되는 해당 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혹은 장외거래를 통해 외국인 혹은 내국인간 발행국내에서 원 증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됨

□ 분기 중 대응증권으로 지정된 종목 등 및 신규상장종목 등의 사정비율 적용 신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7조의3, 47조의4 : 2010/11/9 개정, 11/29 시행)

— 분기 중 주권 등의 대응증권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분기의 잔여기간 동안 사정비율 적용함

- 새로이 지정된 주권 등이 “일평균거래대금이 상위 20% 이내이면서 코스닥 프리미어지수 구성종목에 해당하는 종목” 중 일평균거래대금이 가장 적은 종목보다 많은 경우는 사정비율을 80%로 함
- 또한 지정된 주권 등이 “일평균거래대금이 하위 5% 이내에 해당하는 종목” 중 일평균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보다 적은 경우는 사정비율을 60%로 함
- 그 밖의 종목은 사정비율 70%로 함

— 분기 중 코스닥 프리미어지수 구성종목으로 편입 또는 제외되는 경우의 사정비율은 분기 중 대응증권으로 지정된 주권 등의 사정비율을 준용

— 신규상장종목등의 사정비율 적용 특례 신설

- 주권 신규상장종목 및 재상장종목은 최초 매매거래 개시일이 속한 분기와 그 다음 분기 동안 사정비율 70%를 적용

□ 신규상장종목 및 재상장종목 등의 사정비율 특례 신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5조의4 : 2010/11/9 개정, 11/29 시행)

— 주권 신규상장종목 및 재상장종목등의 경우 최초 매매거래 개시일이 속한 분기와 그 다음 분기동안의 사정비율을 70%로 적용함

□ 신주상장 및 변경상장 신청기한 변경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51조 : 2010/4/21 개정, 4/26 시행)

- 신주·변경상장의 경우, “신주권 효력 발생 후 또는 변경의 효력 발생 후 지체없이” 상장신청서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신청기간을 변경함
  
- 신주·변경상장 신청시 첨부서류의 제출시기 일원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6조, 27조의2, 29조, 30조 : 2010/4/23 개정, 4/26 시행)
  - 신주발행일정표, 법인등기부등본, 주권견양, 주금납입증명서 등 신주·변경상장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제출시기를 ‘상장신청서 제출시점’으로 일원화함
  
- 신규상장 심사시 주식의 분산요건 판단기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6조 1항 3호, 7조의2 1항 1호 : 2010/4/21 개정, 4/26 시행)
  -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예비심사시 주식분산 요건을 심사하는데 있어, 종래에는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및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함
    - 전환우선주의 과다발행으로 인한 주식분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
  
- 이전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의무 면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0조 5호 단서 : 2010/4/21 개정, 4/26 시행)
  - 최대주주 소유주식등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코스닥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경우, 이전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일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보호예수의무를 면제함

- 보호예수주식등의 인출사유를 신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4조의2 1항 : 2010/12/30 개정, 2011/1/1 시행)
  - 합병,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액면분할·병합 등에 따라 신주권을 교부받기 위한 경우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등의 권리행사를 위한 경우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등의 상환이 있는 경우 등
  
- 상장후 매각을 제한하는 대상 증권의 범위 설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1조 1항 1의2호, 8항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상장후 매각을 제한하는 대상 증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 또는 최대주주들로부터 취득한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로 인해 전환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시킴
  - 상장 직후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전환 및 매각으로 인하여 부당한 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함
  
-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호예수특례기간에 대하여 외국기업 제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1조의3, 20조 1항 2호 : 2010/12/31 개정, 9/6 시행)
  -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의 경우 추가상장일부터 1월간 보호예수
  
-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기준의 정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6조 2항 4호 : 2010/4/21 개정, 4/26 시행)

- 자본잠식율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하는데 있어, 국제회계기준(IFRS)을 조기 도입하여 사용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 및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자본잠식율을 산정하도록 함
    - 단, 자기자본 중 외부주주(비지배주주)의 지분은 제외하고 산정함
  -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에 관한 매출액 산정에 있어 연결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을 적용하도록 함
    - 지주회사의 감사보고서상 기업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조치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대해서는 매매거래정지 사유 중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지주회사의 경우 개별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등에 해당할 경우에도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함
- 풍문 등 관련 종목의 매매거래정지 근거 규정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6조(2010년 12월 1일 개정)에서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40조로 이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9조 단서의 풍문 등 관련 주식관련사채권 및 무보증사채권 매매거래정지규정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57조의2 제3항으로 이관
- 중요내용 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제도 보완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6조 1항 : 2010/6/23 개정, 7/1 시행)
- 자본잠식 등 중요내용공시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이 최초로 확인되는 공시(손익구조변동공시 등)를 기준으로 매매거래정지를 조치하도록 함

- 자본금 50% 이상 잠식, 매출액 50억원 미만,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등

□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괴리 요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조 8항 : 2010/1/14 개정, 1/18 시행)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2조 16항)에서는 보통주와 가격 괴리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선주의 경우에는 제출된 매수호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우선주의 범위를 정함
  - “우선주의 가격이 보통주의 가격보다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우선주의 매수호가 기세를 불인정

□ 보유불가종목과 관련하여 반대매매사유를 설정하는 경우 약관 또는 핵심설명서를 통해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개별적인 동의를 얻도록 하였음

(연계신용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 : 2010/8/19 개정, 2011/1/3 시행)

- 현재 업계 사용 약관은 회사가 임의로 반대매매사유(연계신용으로 취득한 종목이 관리종목편입, 거래정지예정 등 투자위험성이 과도하거나 담보평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당일 장 종료시 최저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SMS 등으로 담보의 추가납부를 최고하고, 고객이 기간 내 추가납부 미이행 시 반대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함

(연계신용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 : 2010/8/19 개정, 2011/1/3 시행)

- 현재 업계 사용 약관은 장중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담보충당기회를 부여함 없이 실시간 매도하였음

- 담보비율은 (계좌내 담보평가금/대출원금) ×100%로서 연계신용의 경우 회사별 통상 115%~120% 수준으로 설정됨
  - 개정안에 따라 증권회사는 장 종료 이후 종가기준으로 연계신용계좌별로 담보유지비율을 산정, 최저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한 고객에게 지체없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여야 함
- 반대매매 사유발생 후 고객이 담보물 미충당시 그 다음날 시장개시 동시호가(9:00)에 담보가치 부족분 해소에 필요한 수량만큼 처분하도록 함  
(연계신용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 : 2010/8/19 개정, 2011/1/3 시행)
- 현재 반대매매 사유발생 즉시 전량 반대매매를 하였음
  - 증권회사는 상이한 최저담보유지비율에 따라 반대매매 시기를 각각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시기는 사유 발생 후 익일 이상이어야 함
  - 담보가치 부족에 따른 반대매매 순서 등은 계약체결 시 고객에게 약관 또는 핵심설명서등을 통해 미리 고지하여야 함
- 반대매매 처분당일 오전 담보물 충당에 대하여 추가로 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안내를 실시하도록 함  
(연계신용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 : 2010/8/19 개정, 2011/1/3 시행)
- 기존 모범규준에는 담보비율 하락 시 2회, 반대매매 처리 후 1회 고객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담보물 충당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데 미흡하였음

- 증권회사에 대하여 연계신용서비스 이용약관의 제정하고 이를 협회에 신고할 것을 모범규준에 명시적으로 규정  
(연계신용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 : 2010/8/19 개정, 2011/1/3 시행)
  - 그동안 연계신용서비스 이용 약관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회사들이 다수였으며, 약관의 부존재로 인해 고객이 연계신용과 관련하여 증권회사에 대한 권리·의무를 파악이 어려웠음

### 연계신용서비스

증권회사가 저축은행 등(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회사, 보험사 등 타 금융기관) 간 업무제휴를 통하여 저축은행 등이 증권회사 고객에게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하고 증권회사는 담보관리시스템(RMS : Risk Management System)을 통하여 담보를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의미

## 2. 채권시장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시장조성에 있어 채권 종목과 호가수익률범위를 개정  
(금융투자업 규정 5-12조 1항, 3항 : 2010/9/1 개정 · 시행)
  - 시장조성채권 가운데 회사채와 금융채 각 2종목 이상을 포함한 9종목 이상의 채권에 대하여 지속적인 시장조성을 하여야 함
    - 과거 회사채 및 금융채 각 1종목 이상을 포함한 7종목 이상이었던 것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조성 기능을 강화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시장조성을 위하여 동시 제기하는 매도 및 매수수익률의 호가 간 호가수익률범위를 국채증권의 경우 20bp 이내, 국채증권 이외의 채권은 40bp 이내로 축소

- 과거 국채증권은 30bp 이내, 국채증권 이외 채권은 60bp 이내였음
- 장내시장의 매도 및 매수수익률의 호가 간 호가수익률범위는 회사채 40bp 이내, 회사채 이외 채권 20bp 이내임

□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의무매수호가수량 확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4조 1항 : 2010/5/7 개정, 7/1 시행)

- 당월발행 소액채권 중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종류별매수호가를 종래 호가의 2배로 확대함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12억원 → 24억원
  - 지역개발채권 : 2억원 → 4억원
- 전월발행 채권의 최초 매매거래일에는, '전월발행 채권의 매수호가 (74조 1항 2호)'가 아닌 '당월발행 채권의 매수호가(74조 1항 1호)'를 적용하도록 함

## 소액채권

제1종 국민주택채권, 특별시 및 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첨가매출되는 첨가소화채권 중에서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당월 및 전월에 발행된 채권으로서 1계좌당(공동계좌는 1인당) 호가수량이 액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채권을 말함. 공정한 가격형성을 통한 소액채권의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장집중거래제도에 따라 거래소시장을 통해 집중매매함(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43조 2호, 동 규정 시행세칙 61조)

## 소액채권전담회원

소액채권의 매매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거래소에 매수호가를 제출하도록 지정·운영되는 회원을 말함. 소액채권 시장집중거래제도에 의해 고객으로부터 소액채권의 매매주문을 받은 증권회사는 반드시 당해 주문을 거래소시장으로 전달하여야 함. 매년 말 소액채권 전담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거래소가 20개사 이내로 지정하며, 소액채권전담회원으로 지정된 증권회사는 소액채권의 매매거래를 위해 채권종류별 및 발행월별로 매일 2회(장개시전과 장종료 매매시) 일정금액 이상의 매수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신고시장가격 산출을 위한 신고가격을 장종료후 16시까지 제시해야 함(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44조, 동 규정 시행세칙 62조)

### 소액채권 매도대행 상품매도호가의 조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6조 5항 : 2010/5/7 개정, 7/1 시행)

- 매도대행물량을 매수한 회원이 매수수량 전량을 '익일 장개시 전'에 매도호가하는 경우에는, 신고시장가격에 경과일수당 1원을 더하여 호가를 제출하도록 함

### 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2의2 : 2010/5/7 개정, 7/1 시행)

- 소액채권 거래실적은 장개시 동시호가 및 장중의 자기매매거래는 각각 순매매량(순매도 또는 순매수)을 기준으로 평가함
  - 소액채권전담회원 신규지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배점과 관련하여, '국채전문유통시장의 거래량'과 '채무증권보유 규모'의 배점을 20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고 '소매채권전문딜러' 항목(10점)을 신설함
- 소액채권전담회원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액채권의 장종료시 매매거래에서 개인외의 위탁매수를 제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2조 2항, 75조 1항, 부칙 2조 : 2010/11/17 개정, 12/1 시행)
- 소액채권전담회원 수를 현재의 20개사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도에 24개사로 함
    - 또한 2011년도 소액채권전담회원 수는 22개사 이내로 함
  - 소액채권의 장종료시 매매거래에서 개인외의 위탁매수를 제한함
    - 현행 장종료 2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의 매수는 접수된 신고시장 가격 이상의 위탁매수호가를 모두 포함 하였으나 법인의 참여를 배제하여 소액채권전담회원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소매채권전문딜러 정규시장에서 채권종류별로 제출하여야 하는 조성호가 대상채권 가운데 특수채증권 범주에 지방공기업채권을 포함시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9조의3 1항, 116조 3항 : 2010/12/30 개정, 2011/1/3 시행)
- 2010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는 지방공기업채권이 일반회사채라는 유권해석을 내림
    - 구 「증권거래법」에서 특수채로 인정받았던 지방공기업채권은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채로 인정받을 근거가 사라졌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특수채로 인정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되었기 때문임
- 지방공기업채권은 2009년 2월 4일 이전까지 발행된 것은 특수채로 이후 발행된 것은 회사채로 분류되나 소매채권전문딜러의 종류별 조성호가 대상 채권에서는 모두 특수채와 동일한 호가방법을 유지하도록 규정
- 일반회사채로 지위가 변경되는 지방공기업채권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대응가격 사정비율을 95%로 유지하도록 규정
  - 대응증권 사정비율 85% 대상채권에 지방공기업채권을 제외

□ 환매채거래의 대상채권 및 대금산정기준, 조기환매근거 마련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61조 4호, 65조 1항, 70조 1항 7호, 부칙 1조 : 2010/12/1 개정, 2011/2/14 시행)

- 환매채거래의 대상채권을 모든 사채권 및 통화안정증권,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제외한 특수채증권으로 확대
  - 환매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전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사채권과 보증사채권에 한하였던 것을 확대함
- 환매채거래 대금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환매채거래의 조기환매 근거를 마련
  - 일반적으로 환매채거래 대금산정에 있어 1원 단위로 산정하되 국고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환매채거래의 경우 금액 계산시 10원 미만을 절사하도록 함
  - 환매채거래의 종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세칙에 위임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 제70조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14일 시행당시 매매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환매채거래에 대하여도 적용함

- 환매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함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6조 1항 7호, 87조 2호, 88조 1항~2항, 90조 5항, 96조의2 : 2010/12/6 개정, 12/13 시행)
  - 환매채 신고매매의 당사자를 국고채전문딜러에서 일반딜러로 확대함
  - 환매채 대상채권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신용평가등급 AAA이상인 종목에서 AA이상(AA-을 포함)으로 확대함
  - 환매채거래의 거래기간 종류에 2일, 4일을 추가하고 환매일에 3일째, 5일째를 추가함
    - 환매채거래 거래기간이란 매매대금을 결제한 날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을 의미
  - 「국고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환매채거래에 있어 금액산정단위를 10원으로 하고, 환매채거래의 조기종료절차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

-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정의 및 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신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7-2조, 7편 9장 : 2010/2/26 개정, 4/1 시행)
  - 협회의 호가집중시스템(BQS)과 메신저 기능을 통합하여 종래의 사설메신저를 대체하는 정형화된 거래 플랫폼인 장외채권거래전용시스템(FreeBond)의 구축 및 이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함

**호가집중시스템(BQS, Bond Quotation System)**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에 대한 호가정보를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협회가 실시간으로 보고 받아 공시하는 시스템

-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의 정의 규정 신설
  - 채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전자시스템

### **채권거래전용시스템(FreeBond)**

채권 장외시장에서 금융투자회사 등 시장 참여자들의 채권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전자 시스템을 말함. 트레이딩보드(T-Board)와 전용 메신저로 구성되어 채권의 매매·중개를 위한 호가, 거래상 상대방 탐색, 관련 정보조회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사전 등록·신고제를 통해 시스템 이용자를 딜러, 매니저, 트레이더 등 채권거래에 특화된 시장관계자만으로 제한함

### **트레이딩보드(T-Board)**

장외채권시장의 상대매매 거래방식을 시스템 형식으로 정형화한 거래 플랫폼

#### 시스템의 지원범위 명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7-33조 : 2010/2/26 개정, 4/1 시행)

-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은 채권 장외거래 또는 장외거래중개 업무를 위한 호가정보 등의 탐색 및 거래상대방과의 협상 등을 지원함
  - 단, 거래의 체결 및 결제는 지원하지 않음

#### 시스템 이용자의 신고·등록제 도입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7-2조 9호, 7-34조 : 2010/2/26 개정, 4/1 시행)

- FreeBond는 채권거래자만을 위한 전용 거래시스템이므로, 시스템 이용자는 채권거래인력으로 제한됨
  - 채권거래인력 : 금융투자회사에서 채권의 장외거래 또는 장외거래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시스템 이용자는 개별적으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시스템 이용자를 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 시스템 이용자를 제한함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채권 거래자에 특화된 기능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함

□ FreeBond를 통한 호가정보 보고의 일원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7-3조 1항, 7-35조, 부칙 1조 단서 : 2010/2/26 개정, 7/1 시행)

-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채권의 장외거래와 관련된 모든 호가정보를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을 통해서 협회에 보고하도록 일원화함
- 다만,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가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을 통해 거래상대방과 호가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협회에 대해 호가정보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일방의 호가정보 제공도 호가정보 교환에 포함

□ 협회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7-36조 : 2010/2/26 개정, 4/1 시행)

- 협회는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스템 이용자의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당해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의 '특수채' 항목 중 '공사채 및 공단체' 란에 정금채를 추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44호 : 2010/12/30 개정, 2011/2/7 시행)

- 금융투자협회가 시장정보의 안정적 제공의 위해 2009년 11월부터 채권평가회사로부터 받아 공표해 온 시가평가기준수익률에서 정책 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정금채)의 수익률 정보에 대한 시장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서식을 개정

□ 채권발행을 위한 주관회사는 실적 공시와 관련하여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에 '표준무보증사채수탁계약서' 사본을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18조, 별지 제3호 서식 : 2010/11/30 개정, 12/1 시행)

- 금융투자협회는 주관회사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협회의 인터넷홈 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투자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쉽고 편리하게 '표준무보증사채수탁계약서'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음

#### 표준무보증사채수탁계약서

표준무보증수탁계약서란 발행회사의 지급불능위험 증가행위 등을 제한하고 위반시 구제방법 등을 규정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회사와 채권모집수탁회사간에 체결하는 계약서를 의미.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 업무 규정에는 증권회사가 인수하는 무보증사채에 대해 표준계약에 의한 체결이 의무화되어 있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1월 주주와 사채권자간 혼선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별로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무보증사채수탁계약서'를 개정하였음

### 3. 파생상품시장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외환파생리스크 관리 기준의 설정 및 운용 의무를 부과

(금융투자업 규정 3-45조의2, 8-72조의2 : 2010/4/12 개정·시행)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는 외환파생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용하도록 의무화함

- 은행의 경우 이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2009/12/31제정, 2010/1/1시행)에 따라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있음(동 규정 41조, 별표15-2)

#### 외환파생상품

자본시장법 5조의 파생상품 중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말하며(외국환 관리규정 1-2조 20-2호), 금융투자업 규정상 외환파생상품은 통화선도, 통화옵션, 기타 이에 준하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외환파생상품에 한함

— 해당 금융투자업자와 종합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운영해야 하는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 관리기준'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금융투자회사 등이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거래상대방(전문투자자는 제외)이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 거래상대방별 거래한도를 설정하고, 은행 등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이미 체결된 외환파생상품 거래잔액을 감안하여 운영할 것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 종합포지션 한도의 상향 조정 및 선물환포지션 한도 도입

(금융투자업규정 제3-47조, 제3-48조, 제3-49조 : 2010/7/26 개정, 10/9 시행)

- 종합매입초과포지션 및 종합매각초과포지션 한도를 각각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
-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 및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 한도를 각각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으로 설정
-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초과가 필요한 업자의 경우 2년 이내의 별도 한도를 인정

□ 장내파생상품인 금선물과 미니금선물 각각의 대량 보유보고 및 변동보고 수량을 규정

(금융투자업 규정 6-29조 1항, 2항 : 2010/9/1 개정 · 시행)

- 거래단위가 중량 1킬로그램인 경우 보유보고 기준은 30건, 변동보고 기준은 6건으로 완화하였음
  - 과거에는 금선물의 경우 보유보고 기준은 10건, 변동보고 기준은 2건이었음
- 거래단위가 중량 100그램인 경우 보유보고 기준은 300건, 변동보고 기준은 60계약으로 설정함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e or Project Financing)**

특정한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당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총칭하는 개념. 이러한 용어는 해외건설 및 대형 프로젝트에서 빈번히 등장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의 기초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의 가치에 두지 않고, 동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에서 창출되는 현금수입과 해당자산에 한정시킴으로써 사업주에 대한 대주의 상환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자금조달기법(Limited Recourse Financing)임

□ 미니금선물의 거래대상과 거래단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56조 : 2010/6/23 개정, 6/24 시행)

- 미니금선물의 거래대상은 금선물과 동일하게 순도 99.99%의 금괴로 함
  - 거래단위 : 100g (금선물 : 1kg)
  - 거래승수 : 100 (금선물 : 1,000)

□ 미니금선물의 가격표시 및 최소가격변동폭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58조 : 2010/6/23 개정, 6/24 시행)

- 미니금선물의 가격은 금선물과 동일하게 '1g당 원화'로 표시하며 최소가격변동폭은 '10원'으로 함
- 미니금선물의 최소가격변동금액은 1,000원(= 거래승수 100 × 10원)으로 함
  - 금선물의 최소가격변동금액 : 10,000원(거래승수 1,000×10원)

□ 미니금선물의 거래시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4조 : 2010/6/23 개정, 6/24 시행)

- 미니금선물의 거래시간을 평일에는 금선물과 동일하게 9시부터 15시15분까지로 하고, 최종거래일시간도 동일함
  - 금선물의 최종거래일시간 :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 미니금선물의 상장결제월 및 거래시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57조 : 2010/6/23 개정, 6/24 시행)

- 미니금선물의 상장결제월(종목)의 수 : 7개(2,4,6,8,10,12월 6개와 그 밖의 월 중 1개)
- 거래기간 : 2,4,6,8,10,12월물은 1년, 기타월물은 2개월

□ 미니금선물과 금선물의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59조 : 2010/6/23 개정, 6/24 시행)

- 미니금선물의 최종거래일 : 각 결제월의 세 번째 수요일
  - 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김
- 미니금선물의 최종결제일 : 각 결제월의 최종거래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 거래일(T+2일)
- 금선물의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도 이와 일치시킴(59조)
  - 최종거래일 : 각 결제월의 마지막 거래일의 직전 2거래일 → 각 결제월의 세 번째 수요일
  - 최종결제일 : 각 결제월의 마지막 거래일 → 각 결제월의 최종거래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째의 거래일(T+2일)

□ 미니금선물의 최종결제방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60조 : 2010/6/23 개정, 6/24 시행)

- 실물인수도 방식인 금선물과 달리, 미니금선물은 현금결제방식을 채택
  - 최종결제일에 매수자와 매도자는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과의 차이로 정해지는 최종결제차금만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최종결제
- 최종거래일의 국제금가격을 1g당 가격으로 환산한 수치에 최종거래일의 미국달러 현물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치를 '최종결제가격'으로 함
  - 국제금가격 : 미니금선물 최종거래일 장종료 이후 The London Gold Market Fixing Limited가 최초로 공표하는 1온스당 美달러화 가격을 1g으로 환산한 가격

□ 금선물 및 미니금선물의 미결제약정수량 제한 도입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54조 : 2010/6/23 개정, 6/24 시행)

- 금선물은 300계약, 미니금선물은 3,000계약을 미결제약정수량 보유 한도로 설정하여, 시장과열, 현·선물을 이용한 시장조작 및 포지션 과다 보유에 따른 결제불이행의 사전에 방지함

□ 주식워런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을 강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조의2 2항, 20조의8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거래소에 의한 유동성공급 실적등을 평가 결과 2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그 때부터 1개월 이상 유동성공급자 자격을 제한(20조의2 2항 3호 다목)
- 거래소에 의한 유동성공급 실적등을 평가 결과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1개월간 유동성공급 종목수를 초과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없음(20조의8)

□ 주식워런트증권의 호가가격단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2조 : 2010/7/29 개정, 11/29 시행)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와 더불어 주식워런트증권(ELW)의 호가가격단위를 5원으로 정하고, ETF와 ELW를 제외한 1주 가격이 1000원 미만의 종목에 대하여 1원을 호가가격단위로 신설
- 1주 가격이 1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인 종목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호가가격단위를 5원으로 설정
  - 1주는 1증권, 1증서 또는 1좌를 포함

### 주식워런트증권 (ELW, Equity Linked Warrant)

특정 주식에 대해 사전에 정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 권리부 증권이어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ELW는 주식옵션과 상당히 비슷한 개념이나 발행주체가 증권사라는 점에서 다름. 살 수 있는 상품을 '콜 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을 '풋 워런트'라고 함

- 주식워런트증권의 호가 제출의무 기간을 확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1조의8 3호 : 2010/12/6 개정, 12/13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에 있어 권리행사기간 만료일 전 최종 5거래일동안 유동성공급호가제출을 제한하여 개별종목 ELW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기간을 확대
    - 기존 개별종목 ELW의 경우 권리행사기간 최종만료일 1월 전 이후 유동성공급호가제출이 제한되었음
  
- 주식워런트증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중 기초자산 요건을 강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1조의2 1항 2호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주식워런트 발행대상 기초자산을 KOSPI200지수 종목 가운데 거래대금 상위 100위 이내의 종목으로 세척이 정하는 종목 또는 당해 복수종목의 바스켓으로 제한
  
- 주식워런트증권 발행대상인 기초자산 종목을 명시하고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의 신고사항을 추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4조의3 1항, 35조의2 1항 12호 : 2010/12/30 개정, 2011/1/1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 발행대상인 기초자산 종목이란 일평균거래대금 100억원 이상으로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 분기별로 공표하는 종목을 의미
-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은 유동성공급회원이 장중 변동성을 직전 대비 10%포인트 이상 변경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함

□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의 거래중단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근거 마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4조의2, 82조의9 3항 : 2010/6/23 개정, 6/24 시행)

####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

해외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와의 협약을 통해 정규거래가 종료한 후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코스피200선물의 연계거래를 말하며,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거래에 대한 매매체결(matching) 및 호가접수 서비스는 CME에서 제공하는 24시간 전자거래시스템인 Globex에서 이루어지지만, 한국의 법률 및 규제가 적용되는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거래이므로 한국거래소가 거래제도, 청산·결제 및 시장운영을 담당함

- 코스피200선물의 야간거래의 회원시스템 장애발생으로 인한 임의적 거래 중단 등 시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거래소가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거래중단 등을 위한 세부적 요건은 세칙에서 정함

□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의 임의적 중단사유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9조의8 : 2010/6/23 개정, 6/24 시행)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82조의9 3항)에 따라, 코스피200선물 글로벌 거래의 임의적 중단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호가를 입력하거나 거래내용의 통지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원의 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이 모든 회원의 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원사 자체시스템 장애에 따른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의 거래 중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조의2 : 2010/6/23 개정, 6/24 시행)

- 회원사 자체시스템을 통한 코스피200선물의 야간거래 중, 최근 6월간의 약정수량을 기준으로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75%이상 장애 발생 시에는 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국채선물 기초자산, 거래단위 및 거래승수 변경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38조 : 2010/9/1 개정, 9/13 시행)

- 3년·5년 국채선물 기초자산의 표면금리를 현행 '연 8%'에서 '연 5%'로 변경함
  - 현행 표면금리는 '99년 국채선물 상품 도입시 8%였던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설정되었음
  - 최근 금리수준은 4~5%로 낮아졌기 때문에 국채선물을 이용한 헤지거래의 정밀도와 효율성이 하락하게 되어, 최근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표면금리를 변경함
- 10년 국채선물의 거래단위(1계약의 크기)는 '액면 5천만원'에서 '액면 1억원'으로, 거래승수는 '50만'에서 '100만'으로 변경함
  - 3년·5년 국채선물의 거래단위·거래승수와 일치하도록 변경함

□ 국채선물 결제월 변경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39조 : 2010/9/1 개정, 9/13 시행)

- 10년 국채선물의 결제월수는 '3개'에서 '2개'로, 각 결제월의 최장거래기간은 '9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함
  - 3년·5년 국채선물의 결제월수 및 최장거래기간과 일치하도록 변경함
  - 장·단기 국채선물 상품 간 스프레드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 국채선물 호가가격단위 변경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40조 : 2010/9/1 개정, 9/13 시행)

- 10년 국채선물의 호가가격단위를 '0.02'에서 '0.01'로 변경
  - 3년·5년 국채선물의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도록 변경함
  - 단, 최소가격변동금액은 10,000원(거래승수 1,000,000×0.01)으로 현행(거래승수 500,000×0.02)과 동일하게 됨

□ 국채선물 최종결제방법 및 최종결제일 변경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41조, 42조 : 2010/9/1 개정, 9/13 시행)

- 10년 국채선물의 최종결제방법을 '실물인수도'에서 '현금결제'로 변경(42조 1항)
  - 장기 국채선물에 대한 결제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경되었으며, 단기 국채선물의 최종결제방법과 동일함

### 실물인수도방식과 현금결제방식

실물인수도방식 : 선물만기일에 현물을 인수도하는 방식으로, 최종결제 가격을 개별 인수도적격국채의 결제대금으로 전환한 후 해당 국채와 결제대금을 수수하게 됨

현금결제방식 : 선물가격과 선물만기일의 현물가격과의 차이만큼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최종결제일에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과의 차이로 정해지는 최종결제차금만을 수수하게 됨

- 10년 국채선물의 최종결제일은 'T+2일'에서 'T+1일'로 변경(41조)
  - 현행 10년 국채선물의 실물인수도 결제방식에 따라 인도 채권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최종결제일을 T+2일로 지정하였으나, 최종결제방식이 현금결제로 변경됨에 따라 결제가 용이하게 되어 최종결제일을 T+1로 변경함
- 3년·5년 국채선물 기초자산의 표면금리 및 10년 국채선물의 최종결제제도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종결제가격 산출식을 변경
  - 최종결제가격은 결제수익률(시장금리)와 채권 현가모형을 이용하여 산출됨

$$\text{3년 국채선물 최종결제가격} = \sum_{i=1}^6 \frac{5/2}{[1+(r/2)]^i} + \frac{100}{[1+(r/2)]^6}$$

$$\text{5년 국채선물 최종결제가격} = \sum_{i=1}^{10} \frac{5/2}{[1+(r/2)]^i} + \frac{100}{[1+(r/2)]^{10}}$$

$$\text{10년 국채선물 최종결제가격} = \sum_{i=1}^{20} \frac{5/2}{[1+(r/2)]^i} + \frac{100}{[1+(r/2)]^{20}}$$

□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지급 범위를 확대 변경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87조 : 2010/9/1 개정, 9/13 시행)

**시장조성자**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자로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를 제출하여야함. 시장조성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투자매매업자, 결제회원 등이어야 함(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 83조 1항·2항)

- 현행 ‘해당 시장조성상품의 거래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조성대가 지급이 가능하던 것을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으로 지급기반을 확대함
  - 저유동성 종목은 거래가 부진하여 시장조성자에게 지급되는 조성대가가 취약하므로 조성유인을 감소시켜 거래부진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지속됨
  - 유동성관리종목 등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조성상품의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파생상품시장 수수료 수입을 조성대가로 지급하도록 범위를 확대함

□ 시장조성기간 개시일 및 시장조성계약 기간, 체결시기 규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1조 4항, 82조 5항 : 2010/10/20 개정, 10/25 시행)

- 최초로 상장되는 상품의 경우 상장일,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이 개시되는 날로 특정
  - 시장조성기간이란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
  - 이전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 시장조성기간의 개시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었음
  - 개정안은 유동성관리상품의 시장조성기간을 최초로 상장되는 신상품과 동일하게 최초개시일이 속하는 분기를 포함하여 12개 이내 분기로 정함
- 시장조성계약에 있어 조성상품의 특성,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체결시기와 관련하여 최초 분기에 한하여 분기개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시장조성계약체결을 통하여 시장조성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

- 원칙적으로 시장조성자는 분기개시 이전에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이전에는 시장조성 개시 이후에는 추가적인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장조성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
- 개정안은 회원사의 시스템 준비 등을 고려하여 시장조성의 최초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경우 시장조성개시일부터 그 분기 마지막 거래일까지 추가적인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조성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의 최초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에 있어 시장조성의 최초개시일이 분기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를 포함시킴

□ 시장조성상품에 대한 계약 기간,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 지급액 등 관련 규정 개정

(과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2조 4항, 90조 1항, 2항, 5항 : 2010/9/6 개정, 9/13 시행)

- 기존 분기 단위로 제한하였던 시장조성상품에 대한 계약 기간을 시장조성상품의 특성,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 지급액을 시장조성상품의 거래수수료 및 청산·결제수수료의 80% 이내의 금액으로 시장조성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함
  - 과거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 지급액은 거래수수료의 80%에 해당하는 현금이었음
- 시장조성 실적에 따른 차등지급액이 시장조성에 따른 비용 등 일정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최대 4분기까지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고정비성 경비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중 큰 금액을 시장조성 대가로 지급하도록 시장조성대가 지급방식을 개선한 것임

- 시장조성에 따른 비용 등 일정금액이란 시장조성실적의 평가 기간 동안 국가계약 회계예규 별표5에 따른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중 용역참여율 100%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구원 등급의 월 임금 기준단가로 국가계약 회계예규 별표5에서 정한 연구원 등급의 월 임금 기준단가는 약 400만원임

— 거래조성자에 대한 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장조성에 따른 비용 등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시장조성상품·지급기준·지급대상을 추가

□ 장개시전협의거래의 적용대상 신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2조의9 : 2010/8/25 개정, 8/30 시행)

— 유렉스에 상장된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의 최종결제를 위한 코스피 200옵션거래를 장개시전협의거래의 적용대상으로 정함

□ 장개시전협의거래 신청시간 등 관련 조항 신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2조의10 : 2010/8/25 개정, 8/30 시행)

- 장개시전협의거래 신청시간은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로 정함
  - 단, 유렉스청산기관이 계좌를 개설한 회원이 협의거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시간을 8시 20분부터 8시 30분까지로 함
- 거래소는 협의거래신청시간을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장개시전협의거래신청 예상내역의 통지 신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2조의11 : 2010/8/25 개정, 8/30 시행)

— 거래소와 유렉스는 최초로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수행하기 전에 거래신청 예상내역 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08.12월 거래소와 유렉스의 코스피200옵션 연계거래 계약 체결
- '09.10월 양 거래소간 연계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IT 보충계약 체결

### 코스피200옵션 연계거래

코스피200옵션 연계거래는 국내의 야간시간 동안 코스피200옵션선물을 상장·결제하고, 선물 거래가 종료된 후에는 실물인수도 의무를 부과하여 익일 증권선물거래소의 정규시장 시작 전에 코스피200옵션 미결제 약정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08.12월 증권선물거래소와 유렉스(Eurex)간의 코스피200옵션 연계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09.10월 연계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IT 보충계약을 체결하여 연계거래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테스트를 완료하였음. '10.8월부터 코스피200옵션에 대하여 유렉스와 연계거래를 실시하고 있음.

- 유렉스청산기관은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의 최종결제수량을 확정 한 후 다음의 장개시전협의거래신청 예상내역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통지해야 함
  - 거래일련번호, 종목, 수량, 가격, 매도·매수회원번호, 파생상품계좌식별번호 및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거래소는 장개시전협의거래시간 전에 예상내역을 회원에게 통지함
  - 단, 장개시전협의거래의 상대방 회원번호와 파생상품계좌식별번호는 제외

### □ 장개시전협의거래의 신청내용 및 방법 신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2조의12 : 2010/8/25 개정, 8/30 시행)

-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 주문을 회원에게 위탁하는 경우, 거래편의 및 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종결제의무 이행에 필요한 코스피200옵션의 장개시전협의거래 주문을 동시에 위탁하는 것으로 함
- 회원은 장개시전협의거래에 대해 거래소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신청함

- 거래일련번호, 종목, 수량, 신청수량(61조의 호가한도수량은 적용하지 않음), 거래소 회원번호, 매도·매수 구분, 위탁거래·자기거래 구분, 투자자의 구분, 파생상품계좌식별번호 및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유렉스청산기관계좌개설회원 신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2조의13 : 2010/8/25 개정, 8/30 시행)

- 유렉스청산기관은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최초로 행하기 전에 1개 이상의 회원을 지정하여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유렉스청산기관계좌개설회원), 계좌 개설·회원 변경시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함
- 유렉스청산기관계좌개설회원은 아래의 예상내역을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아 유렉스청산기관을 위탁자로 하는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신청함
  - 각 회원이 수탁을 거부한 경우 장개시전협의거래신청 예상내역
  - 수탁을 거부하지 않고 8시 20분까지 거래 신청을 하지 않은 장개시전협의거래신청 예상내역
  - 그 밖에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의 최종결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개시전협의거래신청 예상내역
- 유렉스청산기관계좌개설회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유렉스청산기관이 장개시전협의거래로 취득한 코스피200옵션거래의 미결제약정을 지체없이 해소하도록 함
- 거래소는 장개시전협의거래신청 예상내역을 유렉스청산기관계좌개설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거래소와 유렉스청산기관은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최초로 시행하기 전에 1항·2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08.12월 거래소와 유렉스의 코스피200옵션 연계거래 계약 체결
  - '09.10월 양 거래소간 연계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IT 보충계약 체결

□ 장개시전협의거래 약정수량의 공표시기 신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9조 1항 3호 : 2010/8/25 개정, 8/30 시행)

- 장개시전협의거래를 통해 체결된 약정수량은 정규시장개시시점부터 공표
  - 일반적인 협의거래는 체결될 때마다 공표
  - 시가 단일가격거래시간이 종료되고 정규거래시간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정규시장의 시세와 구분하여 공표

□ 장개시전협의거래의 수탁 신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8조의2 : 2010/8/25 개정, 8/30 시행)

-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수탁할 경우 확인할 사항 규정
  - 종목, 수량, 가격, 파생상품계좌번호, 매도·매수 구분, 파생상품계좌식별번호, 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를 수탁하는 것은 최종결제를 위한 코스피200옵션의 장개시전협의거래도 수탁하는 것을 의미함
  -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 종료 후 위탁자가 직접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위탁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여 거래의 편의성을 높임

□ 수탁거래의 제한 신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9조 2항 5호, 3항, 4항 : 2010/8/25 개정, 8/30 시행)

-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의 최종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원은 장개시전협의거래에 대한 수탁거부사항을 명시하여 8시20분까지 수탁을 거부하여야 하며, 수탁거부 사실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함
  - 거래소에 통지하는 내용은 거래일련번호, 가격, 파생상품계좌번호, 투자자의 구분(72조의12 1항 1호·4호·6호·9호)관련 정보임

— 수탁거부사항

- 주문가격이 상·하한가를 벗어나는 등 규정에 위반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 옵션매수전용 파생상품계좌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위탁 증거금도 예탁하지 않은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않은 위탁자로부터 글로벌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 파생상품계좌식별번호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 유렉스청산기관의 적격기관투자자 인정 신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32조 4호 : 2010/8/25 개정, 8/30 시행)

— 코스피200옵션거래에 한하여 유렉스청산기관을 적격기관투자자로 인정함

- 유렉스청산기관은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의 결제기관이므로 회원이 수탁을 거부한 경우 유렉스청산기관이 최종결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거래증거금률 조정 및 주가지수선물거래를 품목별로 코스피200선물거래와 스타지수선물거래로, 주가지수옵션거래를 코스피200옵션거래로 변경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19. 1 : 2010/9/13 개정, 10/11 시행)

- 코스피200선물과 코스피200옵션의 거래증거금률이 10%에서 9%로, 위탁증거금률은 15%에서 13.5%로 하향 조정
- 3년국채선물의 거래증거금률은 1%에서 0.8%로, 위탁증거금률은 1.5%에서 1.2%로 하향 조정되고, 5년국채선물 기본증거금률(1.2%→1%)과 위탁증거금률(1.8%→1.5%)도 모두 낮아짐

- 돈육선물도 거래증거금률이 14%에서 12%로, 위탁증거금률이 21%에서 18%로 하향 조정
- 반면 가격변동성이 거래증거금률을 초과하고 있는 엔선물은 기본증거금률이 3.5%에서 4%로 위탁증거금률이 5.25%에서 6%로 상향 조정

**<표 2> 증거금률 조정 현황**

구분	품 목	거래증거금률	위탁증거금률
인하	코스피200선물	10% (9%, ↓1.0)	15% (13.5%, ↓1.5)
	코스피200옵션	10%( 9%, ↓1.0)	15 % (13.5%, ↓1.5)
	3년국채선물	1.0% (0.8%, ↓0.2)	1.5% (1.2%, ↓0.3)
	5년국채선물	1.2% (1%, ↓0.2)	1.8%( 1.5%, ↓0.3)
	돈육선물	14 % (12%, ↓2.0)	21% (18%, ↓3.0)
인상	엔선물	3.5% (4%, ↑0.5)	5.25% (6%, ↑0.75)

주: 유지위탁증거금률은 거래증거금률과 동일

□ 선물거래 기준가격 변경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55조 : 2010/10/1 개정, 10/11 시행)

- 거래개시일부터 최초 거래성립일까지 기준가격은 선물이론가격(돈육선물거래의 경우 제외)으로 하며 단, 주식선물거래에 있어서 배당락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선물조정이론가격으로 함
  - 최초 거래성립일에는 선물스프레드 거래 성립에 따라 선물거래의 결제월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보는 거래일이 포함됨
  - 선물이론가격이란 돈육선물거래를 제외하고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7부터 별표 13까지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이론가격임
  - 돈육선물거래의 경우 거래개시일부터 최초 거래성립일까지 기준가격은 직전 거래일에 공표된 돈육대표가격으로 정함
  - 주식선물조정이론가격이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8의 산식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이론가격을 의미

- 개정 전에는 거래개시일의 익일부터 최초의 거래성립일까지의 기준가격은 조건에 따라 전일의 기세, 전일의 기준가격 혹은 선물이론가격을 적용하였음
- 시장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거래 상황에 이상이 있는 등 필요시 기준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옵션거래 기준가격변경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57조 : 2010/10/1 개정, 10/11 시행)

- 거래개시일부터 최초 거래성립일까지 기준가격은 옵션이론가격으로 하며 단, 주식옵션거래에 있어서 배당락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옵션조정이론가격으로 함
  - 옵션이론가격이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15부터 별표 17까지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이론가격임
  - 주식옵션조정이론가격이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16의 산식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이론가격을 의미
- 개정 전에는 거래개시일의 익일부터 최초의 거래성립일까지의 기준가격은 조건에 따라 전일의 기세, 전일의 기준가격 혹은 옵션이론가격을 적용하였음
- 시장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거래 상황에 이상이 있는 등 필요시 기준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가격제한 기준을 개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0조 : 2010/10/1 개정, 10/11 시행)

- 원월종목의 기준가격 - 최근월종목의 기준가격 + 최근월종목의 기준가격 × 별표 14의 가격제한비율을 선물스프레드거래의 상한가로 정함
- 원월종목의 기준가격 - 최근월종목의 기준가격 - 최근월종목의 기준가격 × 별표 14의 가격제한비율을 선물스프레드거래의 하한가로 정함

-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협의거래를 수탁하는 경우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장개시전협의거래는 제외됨을 명시  
(과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8조 1항 : 2010/10/1 개정, 10/11 시행)
  -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수탁하는 경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118조의2를 통하여 규정
  
- 옵션거래의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및 최유리지정가주문 위탁가격을 정하는데 있어 기존 기준가격적용최대이론가격을 위탁가격적용최대이론가격으로 변경  
(과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21조, 121조의2 : 2010/10/1 개정, 10/11 시행)
  - 옵션거래의 위탁가격적용최대이론가격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별표 19의 위탁가격적용이론가격비율만큼 상승하는 경우의 상승콜옵션이론가격 및 하락하는 경우의 하락풋옵션이론가격으로 함
    - 상승콜옵션이론가격의 산출에 57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는데 별표 15에서 별표 17까지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은 각각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과 그 가격에 위탁가격적용이론가격비율을 곱한 수치를 더한 가격으로 봄
    - 하락풋옵션이론가격의 산출도 마찬가지로 57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는데 별표 15에서 별표 17까지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은 각각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과 그 가격에 위탁가격적용이론가격비율을 곱한 수치를 뺀 가격으로 봄
  - 한국거래소는 거래 상황에 이상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옵션거래의 위탁가격적용최대이론가격을 변경할 수 있음

- 10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가 가능한 종목수를 3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5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와 동일하게 기존 2개에서 1개로 변경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6조 1항 1호 : 2010/10/20 개정, 10/25 시행)
  - 이는 10년국채선물거래의 결제월이 3개에서 2개로, 거래시간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 데에 따른 일련의 국채선물 개선 사항임
  
- 10년국채선물거래에 있어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에 대한 호가 제한 및 최종약정가격결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50조 4호, 63조 : 2010/10/20 개정, 10/25 시행)
  - 10년국채선물거래에 있어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경우 조건부지정가호가를 입력하지 못하도록 제한
    - 이전에는 통화상품거래 및 일반상품선물거래와 더불어 10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조건부지정가호가를 입력하는 것은 허용되었음
  - 10년국채선물거래에 있어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최종약정가격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의 방법인 접속거래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함
    - 이전 10년국채선물거래는 통화상품거래, 금선물거래, 미니금선물거래 및 돈육선물거래와 동일하게 접속거래방식이 아닌 단일가로 최종약정가격을 결정하였음
  
- 거래소의 3년국채선물거래, 5년국채선물거래 및 10년국채선물거래의 호가 관련 공표의무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9조 1항 1호 가목, 79조 1항 2호 : 2010/10/20 개정, 10/25 시행)

- 거래소는 단일가호가시간 외의 호가접수시간의 경우 3년국채선물거래, 5년국채선물거래 및 10년국채선물거래의 호가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매도·매수별 5개의 우선가격의 호가수량 및 당해호가수량의 합계수량을 공표하여야 함
  - 매도·매수별 5개의 우선가격이란 매도·매수별 최우선평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5개의 우선호가의 가격으로 잔량기준에 의해 산정
  - 이전에는 3년국채선물거래, 5년국채선물거래 및 10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호가단위로 그 범위를 정하여 매도·매수별 연속 5개 우선가격의 호가수량을 공표하였음
  - 매도·매수별 연속 5개 우선가격이란 매도의 경우 최우선평가호가의 가격과 그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더한 4개의 가격을, 매수의 경우에는 최우선평가호가의 가격과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4개의 가격을 의미
- 거래소는 3년국채선물거래, 5년국채선물거래 및 10년국채선물거래의 종가단일가호가시간의 경우 단일가호가시간의 호가로 선출된 예상체결가격을 공표하여야 함
  - 이전에는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3년국채선물거래, 5년국채선물거래 및 10년국채선물거래도 종가단일가호가시간의 경우 매도와 매수별 총 호가수량을 공개하였음

□ 10년국채선물거래의 기초자산기준가격

(과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1 : 2010/10/20 개정, 10/25 시행)

- 10년국채선물거래의 최종결제방식이 현금결제로 변경됨에 따라 10년국채선물거래의 기초자산기준가격을 3년국채선물거래, 5년국채선물거래와 동일하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최종결제기준채권의 수익률을 해당 산식의 결제수익률에 대입하여 산출한 수치로 정하도록 함

□ 3년, 5년, 10년국채선물 이론가격산출식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9 : 2010/10/20 개정, 10/25 시행)

- 10년국채선물거래의 최종결제방식 변경 및 3년국채선물거래, 5년국채선물거래의 이자율이 8%에서 5%로 하락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론가격 산출식을 변경

$$\bullet \text{ 3년국채선물 이론가격} = \sum_{i=1}^6 \frac{\frac{5}{2}}{(1 + \frac{r}{2})^i} + \frac{100}{(1 + \frac{r}{2})^6}$$

$$\bullet \text{ 5년국채선물 이론가격} = \sum_{i=1}^{10} \frac{\frac{5}{2}}{(1 + \frac{r}{2})^i} + \frac{100}{(1 + \frac{r}{2})^{10}}$$

$$\bullet \text{ 10년국채선물 이론가격} = \sum_{i=1}^{20} \frac{\frac{5}{2}}{(1 + \frac{r}{2})^i} + \frac{100}{(1 + \frac{r}{2})^{20}}$$

$r$  = 최종결제기준채권의 평균선도수익률

(이론가격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10년국채선물거래의 계약당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 계약당최소증거금액, 계약당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액을 3년, 5년국채선물거래와 동일하게 규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19, 19의2 : 2010/10/20 개정, 10/25 시행)

- 10년국채선물거래의 거래단위가 1억원, 거래승수가 100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약당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의 경우 거래증거금은 15만원에서 30만원, 위탁증거금은 25만원에서 50만원, 계약당최소증거금액의 경우 3만원에서 5만원, 계약당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액의 경우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주식(DR 포함) 대용증권 사정비율을 개선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27조 : 2010/11/12 개정, 11/29 시행)
  - 사정비율 차등화 및 사정비율 산출주기
  - 분기 중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종목 등의 사정비율
  - 신규상장종목 및 재상장종목의 사정비율
  
- ETF 대용증권 사정비율의 개선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27조 3항 : 2010/11/12 개정, 11/29 시행)
  - 주가지수 및 채권지수에 연동하는 ETF 대용증권의 사정비율

**<표 3> 대용증권별 사정비율 현황**

		대상종목	사정비율
주권 (DR포함)	유가증권시장	일평균거래대금 상위 50% & 코스피200종목	80%
		일평균거래대금 하위 5%	60%
	코스닥시장	일평균거래대금 상위 50% & 코스피200종목	80%
		일평균거래대금 하위 5%	60%
	상기 이외 주권		70%
ETF	주가지수	코스피200, 코스피50, KRX100 (1:1로 연동하는 경우)	80%
	채권지수	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CD	95%
		일반사채권·CP (주식관련사채권 및 주가연계증권제외)	85%
		주식관련사채권 및 주가연계증권 포함	80%
상기 이외 ETF		70%	

□ 선물거래에 있어 시장조성가능 종목 확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1조 1항 1호, 부칙 : 2010/12/10 개정, 2011/1/1 시행)

— 시장조성종목으로 선물거래에 있어 최종거래일 전 4거래일부터 최근월종목 및 차근월종목 가운데 1개 이상의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이 가능하도록 개선

- 기존 선물거래에 있어 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 전 4거래일부터는 차근월종목을 시장조성종목으로 함에 따라 4일간 최근월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이 불가능하였음
- 이에 만기가 도래한 최근월종목도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개정

□ 선물거래에 있어 정산기준가격 산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3조, 별표 19의3 : 2010/12/10 개정, 12/20 시행)

— 선물 당일 정산가격은 당일 정규거래시간 중 성립된 최종 약정가격으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가격이 없거나 그 가격이 정산기준가격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괴리되면 정산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함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이 있는 선물거래의 정산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음

- 최근월종목의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당일 선물거래의 기준가격(돈육선물의 경우 실시간 대표가격)
- 차근월종목의 경우에는 선물이론정산가격
- 차근월종목을 제외한 원월종목의 경우에는 해당 원월종목의 선물이론정산가격에서 차근월종목의 선물이론정산가격을 뺀 수치를 차근월종목의 정산가격에 더한 가격(차근월종목의 정산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선물이론정산가격)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이 없는 선물거래의 정산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음

- 최근월종목의 경우에는 선물이론정산가격
- 원월종목의 경우에는 해당 원월종목의 선물이론정산가격에서 최근월종목의 선물이론정산가격을 뺀 수치를 최근월종목의 정산가격에 더한 가격(차근월종목의 정산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선물이론정산가격)

— 정산기준가격 적용 괴리수치를 다음과 같이 설정

거래구분	괴리수치	
	현행	개정
코스피200선물거래	5.0%	2.5%
스타지수선물거래	5.0%	2.5%
주식선물거래	6%	5%
3년국채선물거래	0.5%	0.6%
5년국채선물거래	0.6%	0.6%
10년국채선물거래	0.9%	0.9%
통안증권선물거래	0.1%	0.1%
미국달러선물거래의 최근월종목 (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부터 기산하여 소급한 4거래일간은 차근월종목을 포함)	1.5%	1.5%
미국달러선물거래의 원월종목(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부터 기산하여 소급한 4거래일간은 차근월종목을 제외), 엔선물거래, 유로선물거래	0.3원	0.3원
돈육선물거래	7%	10%
금선물거래, 미니금선물거래	3%	2%

—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기타 시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가 정산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일반 ELW 거래설명서에 조기종료 ELW 정의, 조기종료 발생과 관련된 투자유의사항, 조기종료 여부 확인방법 등을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10/9/2 개정, 9/6 시행)

— 매매거래정지 시점과 실제 조기종료 시점 간 차이로 인한 위험, 시가단일가격이 결정된 직후 조기종료가 발생할 위험, KOSPI 200 주가지수 산출 시점, 조기종료발생 기준가격 부근에서의 가격 급변에 대한 위험성 등을 기재하여 투자자 보호 제고

-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에서 미니금선물의 기초자산, 거래단위, 거래수량단위, 결제월 및 거래기간, 호가가격단위와 가격표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거래시간을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III. D. 일반상품거래 편 : 2010/9/2 개정, 9/6 시행)
  - 순도 99.99%의 금괴로 거래단위는 100g, 거래수량단위는 가격에 거래승수(1백)를 곱한 금액의 1계약, 거래시간은 9:00~15:15, 결제월, 거래기간, 호가가격단위, 가격표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은 금선물과 동일함
  
- 장·단기 국채선물 거래제도가 일치하도록 「장내파생상품거래설명서」의 상품명세, 거래제도 및 결제제도를 변경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1 : 2010/10/21 개정, 10/25 시행)
  - 장내파생상품거래설명서 'III-2. 거래상품 주요 내용'의 'B.금리상품 거래', 'E.선물스프레드거래'와 'III-3.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개요' 부분을 변경함
    - 표면금리: '연 5%'로 통일
    - 거래단위: '액면 1억원'으로 통일
    - 결제월: 결제월수를 '2개'로, 각 결제월의 최장거래기간은 '6개월'로 통일
    - 호가가격단위: '0.01'로 통일
    - 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T+1)'로 통일
    - 최종결제방법: '현금결제'로 통일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주식워런트증권 매매시 별도 신청서 징구 및 사전교육 확인하여야 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5조 5항~6항 : 2010/11/19 개정, 2011/2/1 시행)

- 금융투자회사는 최초로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일반투자자로부터 위탁계좌 거래신청서와 별도로 ELW 서면 거래신청서를 징구하여야 함
  - 별도의 ELW 서면 거래신청서를 대신하여 온라인상의 공인인증 후 전자문서를 통한 거래신청서 작성 가능
- 금융투자회사는 주식워런트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함
  - 사전 교육은 주식워런트증권의 투자설명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며 투자자교육협의회에서 1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실시
  - 해당 투자자가 법인이나 단체 혹은 외국인 경우에는 사전 교육 대상에서 제외
- 본 규정은 시행일 이전 주식워런트증권 매매 유경험자로서 투자자 정보에 근거하여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투자자에 대하여는 2011년 6월 1일부터 적용
  - 본 규정 시행시 주식워런트증권 매매 유경험자로서 투자자 정보에 근거하여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가 적정하다고 판단된 자 혹은 시행 전 이미 보유한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도하려는 투자자에게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사전심의제도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6조의2 1항 6호, 286조 1항 4호, 288조의2, 부칙 2조 : 2010/3/12 개정, 6/13 시행)

- 일정한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협회의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장외파생상품 또는 신용위험이나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규 장외파생상품이 이에 해당함
  - 다만, 해당 장외파생상품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

-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협회에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 구성과 위험회피 구조의 타당성, 상품설명서·판매계획서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심의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해야 함
- 장외파생상품 심의에 관한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짐

□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관한 규정 3조, 7조, 8조 : 2010/6/9 개정, 6/13 시행)

- 위원회는 위원장 및 관련기관 추천위원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관련기관 :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중앙회, 은행연합회, 파생상품학회, 금융투자협회
- 의결사항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 사전심의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전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자본시장법(2010/3/12 개정, 6/13 시행)에 따라 설치된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효력을 지닌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

□ 사전심의 대상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관한 규정 14조 : 2010/6/9 개정, 6/13 시행)

- 전문투자자 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 및 자  
연 등 파생상품
- 일반투자자 대상 파생상품

□ 사전심의 대상 제외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관한 규정 15조 : 2010/6/9  
개정, 6/13 시행)

- 일반투자자 대상 장외파생상품
  -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과 상품구조는 동일하나 기초자  
산(해당 기초자산을 지수화한 것을 포함한다)이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 일정한 어느 하나의 기초자산분류 내에서 변경된 경우
  -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과 기초자산은 동일하나 상품구  
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약기간, 계약금액, 행사가격 등에 해당하  
는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에서 기초자산은 일정한 기초자  
산분류 내에서 변경되고 계약조건은 상품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된 경우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과 준  
거기업, 신용사건의 범위 및 준거채무의 범위는 동일하나 그 외의 계  
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 전문투자자 대상 장외파생상품
  - 기초자산은 동일하고 상품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 신용상품의 경우 준거기업의 신용등급이 AA등급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이 규정 시행 이후 사전심의를 받은 상품
  -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과 기초자산은 동일하나 상품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사전심의 제외 대상  
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투자회사간의 거래

- 제3의 기관이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심의받은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 가격정보 제공자인 금융투자회사가 심의받은 상품을 해당 금융투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거래당사자인 금융투자회사에게 심의의무가 없는 장외파생거래를 투자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 약식심의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관한 규정 17조 : 2010/6/9 개정, 6/13 시행)

- 일정한 장외파생상품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사전 심의하고, 해당 사전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이 규정 시행 이후 사전심의를 받은 상품과 동일한 상품
  -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이 규정 시행 이후 사전심의를 받은 상품 중 심의대상 제외에 해당(15조 1항·2항)하는 변경만 있는 경우

□ 사전심의를 기준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관한 규정 22조 : 2010/6/9 개정, 6/13 시행)

- 전문투자자 대상상품은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성'을 심의사항으로 하고 그 밖에 세부 심의기준을 별도로 마련함
- i)주기적·지속적 제공 가능성, ii)제3의 기관이 가격정보 제공시 다수 시장참여자로부터 받은 호가인지 여부, 제공기관의 독립성 및 객관성, 거래당사자의 접근 용이성, iii)금융투자회사가 직접·산출 제공시 가격산출 방법의 객관성 및 합리성, 가격산출방법의 내부통제절차 여부 등, iv)신용상품의 경우 준거기업 또는 준거채무의 신용등급정보 등의 제공 가능성

- 일반투자자 대상 파생상품은 '위험회피 구조의 타당성, 설명자료의 충실성, 판매계획의 적정성'을 심의사항으로 함

법상 심의사항	세부 심의기준
위험회피 구조의 타당성	i) 위험회피대상과 기초자산의 일치성 ii) 위험회피의 방향 및 크기 iii) 특정 계약조건의 적정성
설명자료의 충실성	i)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변동 내용 설명 ii) 구간별 손익구조 설명 iii) 특정조건에 따른 위험설명 등
판매계획의 적정성	i) 투자권유인력의 자격여부 ii) 판매교육의 적절성 iii) 판매절차의 적정성 등

□ 사전심의기간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관한 규정 23조 : 2010/6/9 개정, 6/13 시행)

-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후 도래하는 위원회의 정기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함
  - 10영업일 이전 안건 부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간 단축 가능
- 약식심의를 5영업일 이내에 심의하되, 전문투자자 대상상품은 3영업일 이내에 심의함

#### 4. 예탁, 결제, 청산

□ 결제시한 전 조기결제제도의 도입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75조의2, 75조의6 : 2010/4/21 개정, 7/5 시행)

-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의 개시시점을 종래 '결제시한(16시) 이후'에서 '결제시한 1시간 이전(15시)'로 앞당겨 납부·결제할 수 있도록 함
  - 회원의 결제 편의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 거래소의 결제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 미수위탁자의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기준 정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89조 2항 : 2010/4/21 개정, 7/5 시행)

- 외국인인 매수대금 결제지연에 대해 적용했던 미수위탁자의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기준(국가간 시차, 결제지시서 오류 등)을 폐지하고,
- 종래에 각각 다르게 정했던 '매수대금' 및 '매도증권' 결제지연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함
  - 천재지변, 긴급사태, 전산장애, 회원의 업무착오 기타 미수위탁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매수대금' 및 '매도증권' 결제지연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의 예외로 인정함
  - 다만, 위탁자의 미납 매수대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위탁증거금 징수의 예외 인정 가능

□ 조기결제제도 도입에 따른 증권의 인도 시기 정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1조의7 1항 : 2010/4/22 개정, 7/5 시행)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75조의6)에서 조기결제제도를 도입하여 증권의 결제시기를 15시로 앞당김에 따라,
  - 종래 '결제일 16시'이던 시점을 '결제일 15시'로 변경하여 15시부터 납부 완료된 종목을 결제회원에 대해 인도하도록 하고,
  - 결제교착 해소를 위한 미완납종목의 수령회원에 대한 인도 개시시점도 종래의 '16시 30분'에서 '15시 30분'으로 앞당김

□ 결제촉진담보금 제도 신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1조의7 2항 3호·3항·5항~8항 : 2010/4/22 개정, 7/5 시행)

- 결제회원이 납부한 결제대금 및 결제증권 이외에 현금이나 증권 등을 담보금으로 거래소에 추가로 납부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증권수령가능한도에 가산함
  - 보통거래간의 차감과 관련된 결제를 원활하게 하고 결제회원의 증권수령을 촉진하기 위함
- 결제촉진담보금은 현금,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음
  - 현금은 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예탁하되 예탁된 현금은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며, 예탁된 현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결제촉진담보금에 산입함
  -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은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말소하는 방법으로 예탁 또는 인출함
- 결제촉진담보금의 예탁 및 인출 시기
  - 결제일 직전 매매거래일 12시까지 예탁하고, 인출하고자 하는 날의 직전 매매거래일 12시까지 인출을 신청해야 함
- 거래소는 결제일 직전 매매거래일까지 결제촉진담보금의 금액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함

□ 예탁결제원의 결제이행 등 결과의 통지 시기 정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1조의6 : 2010/4/22 개정, 7/5 시행)

- 예탁결제원의 거래소에 대한 결제이행·불이행결과의 통지 시기를 종래 '결제시한 30분전부터'에서 '결제일 9시'로 앞당김

- 유동성공급 및 결제지연손해금 부과 기준시점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1조의4, 101조의5, 101조의10 : 2010/4/22 개정, 7/5 시행)
  - 유동성공급 및 결제지연손해금 부과 기준시점을 보통거래간 차감의 경우 16시, 익일결제거래간 차감의 경우 17시 30분으로 규정함
  
- 결제시한 전 조기결제제도의 도입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31조의2, 31조의6 : 2010/4/21 개정, 7/5 시행)
  - 결제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회원 및 위탁자의 결제편의 및 자산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래소의 수령회원에 대한 결제(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개시시점을 종래 '결제시한(16시) 이후'에서 '결제시한 이전'으로 변경함
  
- 미수위탁자의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기준 정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42조 : 2010/4/21 개정, 7/5 시행)
  - 외국인의 매수대금 결제지연에 대해 적용했던 미수위탁자의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기준(국가간 시차, 결제지시서 오류 등)을 폐지하고,
  - 종래에 각각 다르게 정했던 '매수대금' 결제지연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사유와 '매도증권' 결제지연에 대한 위탁증거금 예외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함
    - 천재지변, 긴급사태, 전산장애, 회원의 업무착오 기타 미수위탁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탁증거금 징수의 예외로 인정함
    - 다만, 위탁자의 미납 매수대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위탁증거금 징수의 예외 인정 가능
  
- 조기결제제도 도입에 따른 증권의 인도 시기 정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6조의8 : 2010/4/22 개정, 7/5 시행)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75조의6)에서 조기결제제도를 도입하여 증권의 결제시기를 15시로 앞당김에 따라,
  - '결제일 15시'로부터 납부가 완료된 종목을 결제회원에 대해 인도하도록 하고,
  - 결제교착 해소를 위한 미완납종목의 수령회원에 대한 인도 개시시점도 종래의 '16시 30분'에서 '15시 30분'으로 앞당김

□ 결제촉진담보금 제도 신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6조의8 : 2010/4/22 개정, 7/5 시행)

- 결제회원이 납부한 결제대금 및 결제증권 이외에 현금이나 증권 등을 담보금으로 거래소에 추가로 납부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증권수령가능한도에 가산하도록 함
  - 보통거래간의 차감과 관련된 결제를 원활하게 하고 결제회원의 증권수령을 촉진하기 위함
- 결제촉진담보금은 현금,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음
  - 현금은 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예탁하되 예탁된 현금은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며, 예탁된 현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결제촉진담보금에 산입함
  -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은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말소하는 방법으로 예탁 또는 인출함
- 결제촉진담보금의 예탁 및 인출 시기
  - 결제일 직전 매매거래일 12시까지 예탁하고, 인출하고자 하는 날의 직전 매매거래일 12시까지 인출을 신청해야 함
- 거래소는 결제일 직전 매매거래일까지 결제촉진담보금의 금액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함

□ 예탁결제원의 결제이행 등 결과의 통지시기 정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6조의7 : 2010/4/22 개정, 7/5 시행)

- 예탁결제원의 거래소에 대한 결제이행·불이행결과의 통지 시기를 종래 '결제시한 30분전부터'에서 '결제일 9시'로 앞당김

- 유동성공급 및 결제지연손해금 부과 기준시점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1조의4, 101조의5, 101조의10 : 2010/4/22 개정, 7/5 시행)

- 유동성공급 및 결제지연손해금 부과 기준시점을 보통거래간 차감의 경우 16시, 익일결제거래간 차감의 경우 17시 30분으로 규정함

- 파생상품시장의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현금위탁증거금액의 자율산정 허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48조 1항 : 2010/4/19 개정, 6/28 시행)

**적격기관투자자**

자본시장법이 정한 전문투자자 중에서 회원이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위탁자를 말함. 적격기관투자자 이외의 위탁자에 대해서는 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함(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33조, 동 규정 시행세칙 132조)

-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적격기관투자자가 선물거래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증거금 중 현금의 비율을 최대 0%까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는 증권 및 선물회사가 적격기관투자자의 선물거래시 납부하는 증거금 중 1/3 이상을 현금으로 예탁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금리·통화·일반상품의 현금위탁증거금비율 단계적 인상 시기를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현금증거금 제도 변경 시기와 일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 2010/4/19 개정, 6/28 시행)

— 과거에는 주식상품에만 적용되던 현금위탁증거금제도를 모든 파생상품에 확대 적용하되, 기존투자자의 자금부담 최소화 및 회원사시스템 변경 소요시간 확보 등을 위해 금리·통화·일반상품만 거래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동 시행세칙을 개정한 바 있음(2009/1/20 개정, 2/4 시행)

- 현금위탁증거금액(사전·사후)을 산출하는데 있어 현금위탁증거금비율 및 선물현금비율의 최저율을 2009년 10월 26일 전까지는 1/12로, 2010년 4월 26일 전까지는 1/6로, 2010년 4월 27일부터 1/3로 적용함

— 이와 관련하여 2010년 4월 27일부터 1/3로 적용하도록 한 금리·통화·일반상품의 현금비율의 인상 시기를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현금위탁증거금액의 자율산정 허용시기(148조 1항, 2010/6/28 시행)와 일치시킴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의 10년 국채선물 최종결제방법 변경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별표2의 24 : 2010/10/25 개정·시행)

— 10년 국채선물의 결제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종결제방법을 ‘실물인수도’ 방식에서 ‘현금결제’ 방식으로 변경한 개정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여 실물인수도 결제규정을 삭제하고, 금리선물거래의 현금결제조항을 신설함

- 현행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서는 10년 국채선물거래의 최종결제방법으로 실물인수도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음

## 5. 기업공시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기업공시제도 정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5조 3항, 136조 2호, 174조 2호 : 2010/6/11 개정, 6/13 시행)
  - 증권신고서도 사업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연결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함
  - 종속회사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 금융위의 확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기밀 등에 해당하므로 공시 대상에서 제외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K-IFRS)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2007년 말 제정된 새로운 회계기준. 2009년부터 기업은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이 의무적으로 K-IFRS를 적용하여야 함. K-IFRS의 도입으로 개별재무제표만 공시하던 기존과 달리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되며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금융부채 등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취득원가 기준이 아닌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 방식이 변경됨. 또한 재무제표 구성 항목이 바뀌어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손익계산서는 기존 손익계산서에서 대차대조표의 기타포괄손익을 포함하는 포괄 손익계산서로 변경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삭제됨. 대손충당금은 예상되는 손실이 아닌 실제 발생 손실에 근거해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함. K-IFRS의 시행은 연결 대상 회사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등을 모두 반영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얻기에 용이함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에 대한 용어 정의 및 K-IFRS를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이 증권 발행시 제출해야할 보고서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반기감사보고서 및 분기감사보고서를 포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2조 9항, 10항 : 2010/11/8 개정, 11/10 시행)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이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회사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종속관계에 있는 회사가 있는 법인을 의미

□ 신고서의 통지방법, 일괄신고서 이용범위 등 관련 규정을 정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3조 5항, 2-4조 2항, 2-4조 3항 : 2010/11/8 개정, 11/10 시행)

- 효력발생시기 규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신고서를 수리거부한 경우에도 발행인에게 이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 금융위가 신고서를 수리하는 경우 발행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서면의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을 추가
- “잘 알려진 기업”이 조직 변경시 다음의 경우에 이미 제출한 일괄 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최종 매매거래일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상법」 제527조의3의 소규모합병의 방법으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 시가총액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권의 가격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
  - 일괄신고서란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기재한 신고서를 의미(자본시장법 119조 2항)
- 일괄신고추가서류 기재사항에 있어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함

- 주권 상장 후 5년 경과, 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 등 시행령 제121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이익참가부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 발행을 위한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다면 대표이사 및 이사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 제출시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하여금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할 것을 요구(자본시장법 119조 5항)

□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이 신고서 제출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 비재무사항을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6조 3항 7호, 2-6조 6항 : 2010/11/8개정, 11/10 시행)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제재현황, 결산기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장래 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실적을 명시
-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시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금융위원회 고시 사항은 발행인에 관한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및 우발채무 등, 제재현황, 결산기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임

□ K-IFRS 도입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외국기업인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및 첨부서류를 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11조 1항 1호, 2항 1호 : 2010/11/8개정, 11/10 시행)

-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발행인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사항 보고서 및 거래소 공시사항 등의 진행·변경상황,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우발채무 등, 제재현황, 결산기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실적, 자금의 사용 내역을 추가
- 외국기업이 국제회계기준 등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우발채무 등, 제재현황, 결산기이후 발생한 주요사항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그 외국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하도록 함
  -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와 그 외국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
  - 단, 해당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 및 그 재무제표에 대한 외국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기업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국제회계기준 등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함
  - 단, 해당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 및 그 재무제표에 대한 외국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결 감사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음
-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표보고서에 K-IFRS,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시행령 176조 6항)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결반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반기검토표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함
  - 단, 해당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 및 그 재무제표에 대한 외국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결반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반기검토표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음

-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에 K-IFRS, 국제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시행령 176조 6항)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결분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분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함
  - 단,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 또는 증권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분기감사 또는 분기검토가 의무화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또한 해당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 및 그 재무제표에 대한 외국 회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연결분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분기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음

□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는 증권금융회사를 대량보유보고 특례적용 전문투자자로 추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14조 : 2010/11/8개정, 11/10 시행)

-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보유 상황 및 변동 내용, 대량 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등의 발행인을 기재한 보고서로 주식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 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154조 4항)

□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추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4-5조 1항 5호 : 2010/11/8 개정, 11/10 시행)

- 다른 법인의 지분증권 등을 양수하는 자에 대하여 미리 정한 가액으로 그 지분증권 등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 체결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 의사록 등 해당사실 증빙서류를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로 명시

- K-IFRS 도입과 관련하여 발행인의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 내용과 첨부서류를 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4-11조 : 2010/11/8 개정, 11/10 시행)
  -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에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을 제외
  - 해당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 및 그 재무제표에 대한 외국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가 아닌 각각 연결감사보고서, 연결반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반기검토보고서, 연결분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분기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음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 등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외국법인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으로 봄
  -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외국법인등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K-IFRS를 적용한 것으로 봄
  
-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신고 사항 추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7조 1항 2호 가목 (3)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자본시장법 165조의2)의 자사주 취득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신탁계약의 체결, 해지 외 연장도 공시신고사항을 추가
  
- ‘시설외투자’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근거를 마련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7조 1항 2호 나목 (1)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 2를 통하여 시설외투자를 구체화
- 이는 방송 및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방송인 및 스포츠 선수와의 전속계약은 사실상 기업의 주요 투자활동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시설외투자' 사항으로 공시의무를 부과하기 위함

□ 공시의무 대상으로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한 사항에 있어 퇴직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7조 1항 2호 라목 (3)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공시신고 사항과 관련하여 매출액 계산에 있어 K-IFRS를 적용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7조 1항 2호 마목 (1) (다)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기존 K-GAAP에서 매출액은 사업활동에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만을 의미하였으나 K-IFRS상 매출(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외 기타 수익으로 이자, 배당, 로열티수익을 포함하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통하여 K-IFRS상 매출(수익)에 기타 수익을 제외하여 매출액 50억원 미달에 대한 적용기준을 정비

-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은 매출액 50억원 미달에 대한 확인수단으로 손익구조변동공시 및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의 경우 K-IFRS상 매출(수익)에 기타 수익을 제외한 수익액을 기준으로 기재할 것을 규정

□ 상장 건설사의 담보·채무보증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7조 1항 2호 다목(3) : (2010/4/23 개정, 4/26 시행)

- 상장건설사가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 대해 자기자본의 5% 이상(대규모법인의 경우는 2.5%이상)의 담보 또는 채무보증을 제공한 경우, 일반 주권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 공시하도록 함

□ IFRS 조기도입 기업 등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적용 기준 정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7조 1항 2호 마목(1) : 2010/4/23 개정, 4/26 시행)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서(2010/4/21 개정) i) IFRS 조기도입기업의 경우 자본잠식 관련 퇴출 심사시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하고(동 규정 75조 1항 4호·4항 2호) ii) 지주회사의 매출액 기준(50억원 미만) 관리종목지정 등 퇴출 심사 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동 규정 75조 1항 9호) 규정함에 따라,
- 이러한 상장규정 개정에 맞추어 IFRS 조기도입기업 및 지주회사에 대한 공시의무사항을 변경함
  - 지주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연결재무제표상의 감사의견에 대한 부적정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공시하도록 함
  - IFRS 조기도입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상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 및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때는 이를 공시하도록 함

□ 상장자회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공시의무 경감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8조 3항 : 2010/4/23 개정, 4/26 시행)

-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자회사가 영업 및 생산 활동, 재무구조에 변경,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일정한 사항 등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한 때에는 당해 상장자회사의 지주회사도 공시한 것으로 간주함
  - 단, 지주회사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중복 공시의무를 면제함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담당자 제도 신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26조 1항, 3항~4항 : 2010/6/23 개정, 7/1 시행)

- 상장외국법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 공시책임자(1인), 공시대리인(1인) 이외에 외국법인 본사에 공시담당자(1인 이상)를 별도로 두도록 함
  - 국내 상장법인은 공시책임자 1인, 공시담당자 2인(채권상장법인 및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에는 1인)을 지정하고 있음

□ 채권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에 대한 적용 면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58조 2항 : 2010/4/23 개정, 4/26 시행)

- 채권상장법인이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번복 또는 변경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에 해당하지만,
  -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이러한 공시의 해태 등 위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불성실공시의 적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공시담당자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88조 2항 : 2010/4/23 개정, 4/26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는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그 밖에 별도로 영위하는 사업이 없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2인 이상의 공시업무 등 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있는 일반 상장법인과 달리 공시담당자를 1인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별점부과 등을 위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대상기간 확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34조 2항 : 2010/6/23 개정, 7/1 시행)

- 종래 '불성실공시 지정예고일부터 12일 이내(이의신청기간종료 후 5일 이내)'로 하고 있던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대상기간을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로 연장함

□ 불성실공시 개선계획서 제출시기 조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39조 1항 : 2010/6/23 개정, 7/1 시행)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 중 추가적으로 부과받은 별점누계가 종래 '10점 이상' 이던 것을 '15점 이상'인 경우에 불성실공시 개선계획서 제출하도록 변경함
  - 이미 제출된 개선계획서가 공표되고 있는 경우(1개월)에는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

□ 채권상장법인에 대한 조회공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57조의2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거래소가 채권상장법인에게 주요경영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당 근거 마련
- 해당 채권상장법인은 공시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조회공시를 하여야 함

- 상장 자회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공시의무 경감을 위해서 사전 신청서를 신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4조의3·별지 7호 : 2010/9/1 개정, 9/6 시행)
  - 지주회사가 연계공시를 위한 사전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
    - 지주회사가 연계공시 신청서를 거래소에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상장 자회사가 신고한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지주회사도 별도의 공시제출 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신청서를 제출한 지주회사는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연계방식으로 공시가 이루어짐
  -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주요경영사항 연계공시 신청서
    - 신청서에는 신청일자·사유, 주권상장법인인 자회사의 변동사항 등을 기재
    - 상장자회사가 연계공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자회사 주식의 지주회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함께 기재
  
-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 주요경영사항으로 해당 사유 발생일 당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공시의무대상인 시설외투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4조의2 : 2010/12/3 개정, 2011/1/1 시행)
  - 영화, 음반, 연예, 공연물 등의 제작, 게임, 프로그램 등의 제작, 교육, 지식, 정보, 출판물 등의 제작, 연예·스포츠 매니지먼트 계약 등을 통한 투자임을 명시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자율공시의 대상으로 녹색경영관련 정보를 추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8조 7호 : 2010/12/3 개정, 2011/1/1 시행)

- 자율공시란 주요경영사항 외에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유가증권 시장주권상장법인이 해당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 하는 것(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28조)
- 자율공시대상으로 신설된 녹색경영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녹색기술,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의 확인 및 그에 대한 인증취소 또는 확인취소
  - 관리업체(온실가스 배출업체 혹은 에너지소비업체)의 지정 또는 취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개선명령, 시정이나 보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 녹색기업의 지정 또는 취소
  -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 또는 처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0년 4월 시행된 법률.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의 운영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 불성실공시의 적용 예외 대상 신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1조 1호 : 2010/12/3 개정, 2011/1/1 시행)

- 거래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공동관리를 개시·중단 또는 해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불성실공시의 적용 예외로 명시
- 이는 부도가 발생하거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등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로 인한 공시 번복이 경미하거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고 판단하여 불성실공시를 적용시키지 않도록 한 것임

- 풍문 등 관련 매매거래정지의 대상 및 기간에 대한 근거 조항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2010년 12월 6일 개정)에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6조로 이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2010/12/3 개정, 2011/1/1 시행)

- 풍문 등 관련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해당 정지사유에 대한 조회 결과를 공시되면 당해 공시시점부터 30분 경과 후 거래가 재개되도록 규정
- 다만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간 이전인 경우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한 후,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됨

- 상장건설사의 담보·채무보증 및 금전대여 등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조 1항 2호 다목 4·5 : 2010/4/21 개정, 4/26 시행)

- 상장건설사의 재무위험에 대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공표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공시의무를 부과함
  - 상장건설법인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을 하거나,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대여를 하는 경우

- 코스닥상장법인의 공시신고 사항으로 자기주식 취득 특례(자본시장법 165조의2)상의 자사주 취득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신탁계약의 체결, 해지 외 연장도 경우도 추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조 1항 2호 가목 3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K-IFRS 도입에 따라 공시신고사항 관련 규정 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조 1항, 37조 2항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공시신고 사항의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K-IFRS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하도록 함
- 매출액에 있어 K-IFRS을 적용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제한
  - 기존 K-GAAP에서 매출액은 사업활동에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만을 의미하였으나 K-IFRS상 매출(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외 기타 수익으로 이자, 배당, 로열티수익을 포함하고 있음

□ 조회공시요구시 '특이사항 없음' 답변에 검토의무를 부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조 1항, 10조 6항 : 2010/12/29 개정, 2011/3/1 시행)

- 시황 변동에 따른 조회공시요구에 '중요정보가 없다(특이사항 없음)'고 답변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하여금 공시신고사항 유무 또는 검토 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였음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대표이사 확인서를 공시하도록 신설
  - 2009년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에 '특이사항 없음'이 대부분(75.2%)을 차지하자 이를 축소하기 위하여 '특이사항 없음'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의무를 부과

□ 상장자회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공시의무 경감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7조 3항 : 2010/4/21 개정, 4/26 시행)

-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자회사가 영업 및 생산 활동, 재무구조에 변경,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일정한 사항 등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한 때에는 당해 상장자회사의 지주회사도 공시할 것으로 간주함

- 단, 지주회사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중복 공시의무를 면제함

□ 코스닥상장법인의 미확정공시시 입증자료 첨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11조 3항 : 2010/12/29 개정, 2011/3/1 시행)

- 미확정공시를 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하여금 풍문이나 보도 혹은 시황변동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공시하도록 신설
- 다만, 경영상 비밀 등의 사유로 입증자료 제출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시 가능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책임자, 공시대리인 외 공시담당자 1인 지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22조 1항, 부칙 2조 : 2010/9/17 개정, 9/27 시행)

- 공시담당자와 공시대리인 간 의사소통 창구 단일화를 통해 효율적인 공시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
- 이 규정 시행 이전 기상장된 상장외국법인은 9월 17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의 불성실공시유형 가운데 다음의 내용을 공시번복에 추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28조 2항, 4항 : 2010/12/29 개정, 2011/3/1 시행)

- 이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조회공시답변이 보다 성실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제공되도록 하며, 인위적인 정보가 은폐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조회공시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 시황변동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 공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 공시한 사항 외의 사항을 공시한 경우로서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미확정공시에 따른 재공시기한까지 확정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의사결정 중에 있다는 기 공시내용의 확정이 지연되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미확정공시 및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에 따라 미확정공시 이후 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변경·중단·취소한 경우로서 의사결정의 변경·중단·취소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조회공시 및 상장외국법인의 조회공시에 의하여 품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 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중단·취소 또는 부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내용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에 예측·조정 등이 가능하여 공시번복기한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시황변동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 공시한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 공시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공시한 경우로서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에 예측·조정 등이 가능하여 공시번복기한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시번복의 심사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

□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의 심의 개최 기한을 15일로 연장 조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32조 3항 : 2010/9/17 개정, 9/27 시행)

— 기존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일로부터 해당 법인에게 7일 이내 이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12일 이내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해 실질적인 검토기간이 최대 5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시 일정 수준 이상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도록 함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37조 1항 3호 : 2010/9/17 개정, 9/27 시행)

- 기존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위반의 경중과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음
  - 단순 착오 및 경비한 위반임에도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선의의 투자자에게 피해발생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상장 자회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공시의무 경감을 위해 사전 신청서를 신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7조의2, 공시서식 8호 : 2010/9/1 개정, 9/6 시행)

- 지주회사가 연계공시를 위한 사전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
  - 지주회사가 연계공시 신청서를 거래소에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상장 자회사가 신고한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지주회사도 별도의 공시제출 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신청서를 제출한 지주회사는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연계방식으로 공시가 이루어짐
-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주요경영사항 연계공시 신청서
  - 신청서에는 신청일자·사유, 주권상장법인인 자회사의 변동사항 등을 기재
  - 상장자회사가 연계공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자회사 주식의 지주회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함께 기재

□ 시설외 투자 항목에 연예·스포츠 매니지먼트 계약을 통한 투자 항목을 신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6조 4호 : 2010/9/1 개정, 9/6 시행)

- 연예·스포츠 매니지먼트 계약이 자기자본의 10%이상을 차지할 경우 시설외 투자 항목에 포함되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함
  - 현행 시설외 투자 항목은 영화·음반·연예 공연물, 게임·프로그램 및 교육·지식·정보·출판물 등의 제작을 위한 투자임(6조 1호·2호·3호)

-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된 벌점이 4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 정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8조 3항 : 2010/9/20 개정, 9/27 시행)
  - 위반행위의 동기, 중요성, 투자자 영향 및 해당 법인의 성실공시 관행 등을 고려
  - 본 규정은 9월 27일 시행 이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되는 법인부터 적용

## II. 금융투자업

### 1. 금융투자회사

#### 가. 진입규제

-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 도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조 2항 6의2, 15조, 16조 2항, 18조 2항 5의2, 20조, 21조 2항 : 2010/3/12 개정, 6/13 시행)
  -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을 받으려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이하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추도록 인가·등록 요건을 추가함
    -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에 다른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금융투자업을 신규로 변경 인가·등록하려는 경우에도 당해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추도록 함
  - 다만,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한 사회적 신용요건을 인가·등록요건의 유지의무 대상에서는 제외함
  
- 금융투자업자 변경 인가·등록시 대주주 요건 완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조 2항, 21조 2항 : 2010/3/12 개정, 6/13 시행)
  - 금융투자업자가 변경 인가·등록을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해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 변경인가·변경등록 시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신규로 인가·등록을 받는 경우에 비해 완화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갖추도록 함
    -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과 관련하여 완화된 적격성 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금융투자업의 신규·변경인가 시 금융투자업자 본인 요건 및 대주주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8항, 19조의2, 21조 6항, 23조의2 : 2010/6/11 개정, 6/13 시행)

- 자본시장법이 개정(2010/3/12 개정, 6/13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변경 인가·등록을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해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본인 요건 및 대주주 요건 등의 세부적 내용을 마련함
- 금융투자업자 본인의 업무추가 변경인가 요건
  -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근 3년간 지점·영업소 업무의 정지 처분(일부정지는 2년)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대주주의 경우 현행 대주주 유지요건과 동일한 수준에서 규정하되, 모든 대주주가 아닌 최대주주는 5년간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도록 함

□ 부동산PF ABCP 매입보장약정 심사 및 승인요건 강화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6조 2항 4호 : 2010/5/17 개정·시행)

**부동산PF ABCP(Project Financing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은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대출채권, 매출채권, 리스채권, 회사채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라고도 함. 이 중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대출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발행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부동산PF ABCP라고 함

- 부동산PF ABCP 매입보장약정에 대한 승인을 위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 시공사의 지급보증 여부와 신용평가회사의 ABCP 신용평가 등급 이외에도 금융투자회사의 고유위험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포함하도록 함

- 금융투자회사 고유위험에 관한 자체 사업성 분석은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현금흐름 등을 고려함

□ 해외 부동산PF 관련 심사요건 강화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6조 2항 3호 : 2010/5/17 개정·시행)

- 해외 부동산PF와 관련한 심사 및 승인시 포함되어야 하는 적격성 심사기준을 마련함
  - 시공사의 재무건전성 : 신용등급 BBB+ 이상, 자기자본대비 PF 익스포져 3배 이내 등
  - 시행사의 시행능력 : 사업주체로서의 독립성, 자금조달의 안정성, 부동산 개발 전문성 등

나. 영업·상품규제

□ 신용 파생결합증권 관련 위험고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5조 2항, 별표 6-1 : 2010/2/26 개정, 3/8 시행)

- 종래에는 신용 파생결합증권과 관련된 위험고지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자자가 상품의 구조 및 투자 위험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 금융투자업자가 신용 파생결합증권에 관한 영업을 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는 위험고지의 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금융투자협회에서 마련한 위험고지에 관한 투자설명서(별표 6-1)는 신용 파생결합증권의 상품 구조, 신용사건 및 신용사건 발생의 정의 및 범위, 중도환매에 관한 사항 등을 위험고지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금융투자회사는 이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위험고지 내용을 정할 수 있음

- 중요사항 변경시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6조 2항·8조 3항,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12조 2항·19조 2항,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4조 3항·10조 2항 : 2010/6/25 개정, 7/5 시행)
  - 중요사항 변경시 고객에 대한 사전 통지를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 중요한 변경내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등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명시적으로 통지받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통지 생략이 가능함
  
- 수탁거부사유의 서면고지 의무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5조 4항 : 2010/6/25 개정, 7/5 시행)
  - 회사의 임의적 수탁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신용상태 및 재산상태 등의 수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고지하고 해당 거부사유 발생시에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추가예탁시한 변경시 서면고지 의무 부과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9조 4항 : 2010/6/25 개정, 7/5 시행)
  -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신용상태 등에 비추어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기고자 할 경우, 회사는 계약체결시에 서면으로 고객에게 고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함
  
- 외화증권매매거래자인 고객자산 인출 제한·거부 사유 축소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2조 5항 : 2010/6/25 개정, 7/5 시행)

- 종래 동일하게 정해져 있던 '주문의 수탁 제한·거부 사유' 및 '고객 자산의 인출 제한·거부 사유'를 명확히 구별하여 규정함
  - 회사는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고객의 과거 거래내역, 보유 외화증권의 규모 및 재무상황에 비추어 매매거래결제의 불이행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결제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출의 제한 또는 거부가 가능함
  
- 전자금융거래의 공인인증서·일회용비밀번호 사용 원칙의 예외 사유 추가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12조 : 2010/6/25 개정, 7/5 시행)
  - 원칙적으로는 공인인증서·일회용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으로 그 예외사유를 추가함에 따라, 약관에도 해당 예외사유를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회사 자율적으로 투자자성향을 유형화하도록 함  
(표준투자권유준칙 8조, 참고1 : 2010/8/27 개정 · 시행)
  - 투자자성향 파악을 위한 배점기준 등을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5단계 구분(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외 회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그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예를 들어 7단계(공격투자형, 주식선호형, 주식펀드선호형, 고수익채권형, 혼합투자형, 안정투자선호형, 이자소득형), 4단계(파생상품형, 주식선호형, 성장형, 이자·배당형), 5단계(위험선호형, 적극형, 성장형, 안정성장형, 위험회피형) 등
  
- 투자자 보호에 따른 투자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별도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  
(표준투자권유준칙 8조 : 2010/8/27 개정 · 시행)

- 저위험 상품인 CMA, MMF, RP 또는 국채 등만을 거래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만을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자정보의 파악 및 관리 절차를 합리화

(표준투자권유준칙 8조, 9조 : 2010/8/27 개정 · 시행)

- 대리인이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된 위임장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에 투자자 정보 유효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단하는 방식에 있어 투자성향 점수화(scoring)방식에 국한되었던 것을 다양화하여 추출(factor-out)방식, 혼합방식, 상담방식을 제시

(표준투자권유준칙 10조, 참고 4 : 2010/8/27 개정 · 시행)

- 투자성향 점수화(scoring)방식이란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으로 확정하는 방식
- 추출(factor-out)방식이란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확정하지 않고,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통해 적합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별하는 방법
- 혼합방식이란 점수화 방식과 추출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식
- 상담방식이란 투자자와의 상담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여, 적합한 투자권유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

□ 투자자의 투자 경험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표준투자권유준칙 14조 : 2010/8/27 개정 · 시행)

- 임직원 등이 충분하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중지하여야 함

□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방식을 개선

(표준투자권유준칙 16조, 참고3 : 2010/8/27 개정 · 시행)

- 기존 5단계(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방식을 개선하여 위험도 측정 및 조정 시 참고할 만한 정성적·정량적 요소 등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증권, 은행, 보험 업종별 고객성향 및 취급상품 차이 등을 반영하여 위험도를 합리적으로 평가 및 분류하도록 함

다. 재무건전성규제

□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  
(금융투자업규정 3-8조 2항, 8-44조 1항 2호, 8-45조 4항, 부칙 3조 : 2010/9/1 개정 · 시행)

- 증권사 및 종금사의 부동산 PF 관리에 있어 건전성을 저축은행 수준으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높임
- 정상 분류자산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BBB-, A3- 이상 기업이 지급 보증한 자산은 0.5%, 매입 대출채권으로 최초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산은 3%, 그밖의 자산은 2%
- 요주의 분류자산의 경우 아파트 자산은 7%, 아파트 외 자산은 10%
- 고정 분류자산은 30%
- 회수의문 분류자산은 75%
- 추정손실 분류자산은 100%
- 종합금융회사는 총대출채권의 30% 이내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을 유지하도록 규정 신설

- 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적립 이전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본 규정 시행시 30% 한도를 초과하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는 신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30% 이내로 대출 규모를 조정하여야 하는 경과 조치를 둠

### 대손충당금 (allowance for bad debts)

외상매출이나 어음 등의 매출채권 중 기말까지 회수하지 못하여 미회수액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임. 보유채권이나 기간손익계산의 적절한 평가,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손에 대비하여 기업의 재정을 안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금융투자업자와 관련하여 영업용순자본비율산정기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회계처리기준을 개선  
(금융투자업규정 3-1조, 3-3조, 3-4조, 3-7조, 3-8조, 3-10조, 3-11조, 3-12조, 3-14조, 3-16조, 3-21조 : 2010/12/31 개정, 2011/4/1 시행. 단, 부동산신탁업자에 대해서는 2011/1/1 시행)

#### —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 기준 개정

- 기존에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을 재무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였던 것을 법 제3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개별재무제표로 변경하고, 영업용순자본 산정 시 기존의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가산항목에 해당하는 대상 금액에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설정된 대손충당금 등과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발행잔액을 추가함 (단, 상환우선주 발행잔액의 경우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상환으로 인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계약상의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상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2)상환을 보증하는 담보의 제공, 상계 및 만기 전 상환을 금지하는 약정이 있고, 그 밖에 후순위 변제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는 경우, (3)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대상에 3-8조에 따라 적립한 대손준비금 잔액,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이익 잉여금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발생한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을 신설하여 추가하고 그 외 각 호의 대상항목 기준 정비
- 주식위험액 및 옵션위험액 산정 기준을 K-IFRS에 맞게 정비 및 구체화함

—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정비

-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건전성 분류 대상에서 증권 항목을 삭제하고, 충당금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부동산신탁업자를 금융투자업자로 변경
- 기존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대손충당금등의 적립기준으로 명시하고 적립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도록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 회계처리기준관련조항 정비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및 세부규정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재무제표 관련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함. 기존의 신탁업자를 부동산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고유계정 회계를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로 하도록 정비함.
- 준비금의 종류에 있어 기존의 특별유보금을 신착위험충당금으로, 신탁위험충당금을 신탁사업적립금으로 변경함.

□ 종합금융회사와 관련하여 크게 자산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을 개선  
(금융투자업규정 8-42조, 8-43조, 8-44조, 별표 2-2 : 2010/12/31개정, 2011/4/1 시행. 단, 부동산신탁업자에 대해서는 2011/1/1 시행)

—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정비

- 보유자산을 보유자산등으로, 대손충당금을 대손충당금 등(지급보증 충당금 포함)으로 변경하고 해당 기준에 대한 세부규정 명시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 정비

- 8-32조 2항과 관련 대손준비금을 대손충당금으로 간주하여 기본자본에서 차감하는 등 종합금융회사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를 일부 변경하고 상세히 명시함

□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 기준의 적용대상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기준 1.3조 1항~2항 : 2010/9/1 제정, 2011/1/1 시행)

- 적용대상은 투자자예탁금을 제외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투자중개·매매업자임(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 집합투자업자 등은 적용 제외)
- 콜머니 등 초단기 무담보차입 관리(제2.5.3조)의 경우에는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중개·매매업자가 적용대상이 됨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회사가 수용하기 힘든 손실 없이는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리스크를 의미. 유동성리스크에는 회사가 자금조달을 적시에 할 수 없어 발생하는 '조달유동성리스크(funding liquidity risk)'와 회사가 보유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시장거래량 부족 등으로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손

실이 불가피하거나 보유자산을 현금화하기 곤란하여 발생하는 '시장유동성리스크(market liquidity risk)'가 있음(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기준 1.2조)

□ 이사회등 역할 및 책임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기준 1.5조, 2.2조 : 2010/9/1 제정, 2011/1/1 시행)

-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지휘·통제권과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경영진이 마련한 유동성리스크 관리 전략, 정책 및 한도를 승인하며, 유동성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야 함

□ 유동성리스크 내부통제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기준 2.3조 : 2010/9/1 제정, 2011/1/1 시행)

-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부서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적정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직원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내부통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2.3조 : 2010/9/1 제정, 2011/1/1 시행)

□ 유동성리스크 측정 및 운용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2.4.1조, 2.4.2조 : 2010/9/1 제정, 2011/1/1 시행)

- 지급보증 등 부외항목, 파생상품으로 인한 현금흐름 등 파악가능한 모든 주요 현금흐름을 반영하여 유동성리스크를 측정하고, 단기 유동성비율(1개월, 3개월)을 100% 이상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용하여야 함

□ 유동성리스크 관련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2.4.3조 : 2010/9/1 제정, 2011/1/1 시행)

- 회사는 보유 자산을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 반기 1회 이상 유동성 위기상황 분석(stress test)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 유동성리스크와 관련하여 회사의 자산 보유 및 자금조달구조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2.5.1조, 2.5.2조, 2.5.3조 : 2010/9/1 제정, 2011/1/1 시행)

- 회사는 양질의 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거래상대방, 부채만기, 자금조달수단 등을 다변화하여 적절하게 분산된 자금조달구조를 갖추어야 함
- 자금조달다변화의 일환으로 이사회등의 승인을 얻어 콜머니 등 무담보차입에 대하여 한도를 설정·운영 하도록 하고, 자기자본 100% 내에서 일별 콜머니한도를 설정·운영

- 자기자본이란 최근 분기말 자기자본으로 증자·감자 등 자본금 증감 사유발생시 이를 반영할 수 있음
- 본 규정은 2010. 10. 1부터 최대 허용한도를 준수하여야 하나 2010. 10. 1부터 2011. 3. 31.까지는 부득이한 경우 일별 콜머니가 자기자본 10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기간의 일별 콜머니 평균 잔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함

□ 유동성리스크 관련하여 유동성 관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2.5.4조, 2.5.5.조, 2.5.6조, 2.8조 : 2010/9/1 제정, 2011/1/1 시행)

- 허용한도,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단계별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며, 매일의 지급결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일중(intraday) 유동성을 관리하여야 함

라. 가격규제 및 기업지배구조 등

□ 금융투자업자의 비등기 임원 자격 요건 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조 : 2010/3/12 개정, 6/13 시행)

-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의 비등기 임원으로 재고용될 수 없도록,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적용대상에 비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규정함

**비등기임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말함(상법 401조의2 1항 3호). 금융관련법상으로는 정의 규정이 없으나, 이사와 감사와 같은 상임이사가 아니면서 이들과 유사한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간부로서 일반적으로 부행장, 부행장보, 본부장, 전무 및 상무 등이 이에 해당함

- 협회와 금융투자회사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의무 신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25조의2 : 2010/1/14 개정·시행)

- 협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고충을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조)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

- 부동산 PF 업무 조직을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으로 구분하여 모범규준 구분 적용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1편 3조, 3편 1장 14조 3항 : 2010/9/28 개정)

- 고유재산 부문은 현행과 동일하게 영업조직, 사후관리조직, 리스크관리조직,심사조직,의사결정기구로 분리하고 투자자재산 부문은 운용부서, 준법감시부서, 투자심의위원회로 나누어 담당업무를 구분
  - 운용부서는 투자의 계획, 실행, 마케팅, 자금관리, 사후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준법감시부서는 익스포져 설정 및 운용부서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투자심의위원회는 투자계획 심사 및 승인을 담당(3편 1장 13조)

**<표 4> 부동산 PF 관련 개정 조직 구분 비교**

담당 업무	조직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고유재산	투자자재산
투자의 계획, 실행, 마케팅 및 자금관리 등	영업조직	영업조직	운용부서
사업장별 리스크관리 및 사후관리 업무 등	사후관리조직	사후관리조직	
익스포저 설정 및 통제관리	리스크관리조직	리스크관리조직	준법감시부서
사업성분석, 투자구조 및 리스크분석 등의 심사업무	심사조직	심사조직	투자심의위원회
사업계획, 심사업무, 사후관리에 대한 승인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기구	

□ 투자자재산 부문의 부동산 PF 투자계획 승인절차와 준법감시부서의 사후관리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3편 2장 17조~18조 : 2010/9/28 개정)

- 부동산 PF 투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운용부서가 투자계획서 및 심사보고서를 준법감시부서로부터 확인을 받고 투자심의위원회에 제출
  - 개정 전 부동산 PF 관련 투자한도와 ABCP 투자 신용등급 기준제한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완화가 가능했으나 투자자재산 관련 부동산 PF는 투자심의위원회가 심의기준을 토대로 준법감시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투자계획을 승인하는 것으로 개정
- 사후관리업무 절차 및 기준은 준법감시부서가 마련해야 하며 업무수행자는 반드시 운용부서 외의 임직원이어야 함
  - 단, 운용부서 임직원이 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가 해당 임직원을 감독하고, 해당 임직원은 사후관리현황을 준법감시부서에 정기보고 해야 함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매출채권, 리스채권, 회사채등 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

□ 투자자재산의 부동산 PF 관련 익스포져 설정 및 관리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3편 2장 16조 : 2010/9/28 개정)

- 현재 운용하고 있는 투자자재산 부동산 PF의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준법감시부서가 기준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투자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면 투자심의위원회가 이를 점검하는 형태로 관리

## 2. 집합투자기구

### 가. 진입규제

□ 투자회사증권,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요건을 정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7조 1항 3호, 38조 2호, 3호 가목, 39조 3호, 부칙 9조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투자회사증권,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주권의 주식 분산요건을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이상으로 개정
  - 부동산투자회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0이상으로 완화
- 투자회사주권과 선박투자회사의 주주 분산요건으로 기존 30명에서 50명으로 상향조정

-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요건을 기존 100억원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자본금 50억(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70억원)이상으로 하향조정

□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신규상장 및 상장폐지 관련 규정을 정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16조, 38조 7항, 부칙 1조 : 2010/12/1 개정, 12/6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의 신규상장에 있어 100억원 이상이었던 자본금을 상장신청일 현재 자본금 50억원,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70억원으로 개정
- 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신규상장 시 기존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하는 주식 분산요건을 완화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0(부칙 8조), 그 이후부터 100분의 25 이상으로 개정
- 상장폐지 요건으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는 제외되었던 배당요건미달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적용하도록 개정하면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가 전부 정지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새로운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

## 나. 영업·상품규제

□ 펀드 판매 고객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 마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조 5항 13호 : 2010/6/11 개정, 6/13 시행)

-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외의 업무를 연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은행의 꺾기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증권회사 등에도 확대 적용함

- 펀드의 장외파생거래 상대방 적격요건 완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80조 5항 : 2010/6/11 개정, 6/13 시행)
  - 펀드의 장외파생거래 상대방의 적격요건을 종래의 '종래에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 이외에 추가적으로 규정함
    -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적격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보증인을 두거나, 또는 거래상대방이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 부동산 펀드 등 신규설립 후 투자 의무 기간 연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81조 4항 : 2010/6/11 개정, 6/13 시행)
  - 신규 설립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래에 1개월 이내로 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6개월' 이내로 투자하도록 함

**부동산집합투자기구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함. 대상 부동산에는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등을 포함함 (자본시장법 229조 2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하며, 특별자산은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함 (자본시장법 229조 3호)

- 소규모펀드의 모자형 전환 허용 및 수시공시 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조~94조, 245조 : 2010/6/11 개정, 6/13 시행)

### 소규모 펀드

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함(자본시장법 시행령 93조 3항 등)

- 소규모 펀드 난립으로 펀드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둘 이상의 펀드의 자산을 합하여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할 수 있는 모자형 펀드 전환을 허용함
  -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는 계속 존속하되 소규모 펀드를 합쳐 운용자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펀드의 수익률 등에 대하여 수시공시를 강화함
  - 소규모 펀드의 수익률은 설정원본이 50억원 이상인 펀드와 별도로 비교·공시하도록 함

#### □ 소규모펀드의 운용실적 비교 공시 규정 마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480조 1항 6호 : 2010/6/13 개정·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2010/6/11 개정, 6/13 시행)하여 소규모 펀드의 운용실적을 비교·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펀드의 수익률과 관련하여 50억원을 기준으로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 □ 소규모펀드의 수시공시 서식 마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17조, 별지 8호 : 2010/6/13 개정·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2010/6/11 개정, 6/13 시행)하여 소규모 펀드에 대해 수시공시 하도록 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수시공시 서식을 마련함
  - 소규모펀드(1년)여부 공시,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 처리방안결정 사실(방법)공시

□ 레버리지ETF 호가 가격제한폭의 확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조 : 2010/4/21 개정, 5/10 시행)

— 레버리지ETF와 인버스ETF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일반 ETF와 달리 호가의 가격제한폭을 자산운용 배율만큼 확대함

- 일반ETF의 경우 기준가격에 0.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해 ETF의 가격제한폭으로 하는데 반해,
- 레버리지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 배율을 곱한 금액”을, 인버스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 음의 배율의 절대값을 곱한 금액”을 각각의 호가 가격제한폭으로 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xchange Traded Fund, ETF)**

특정 주가지수 등락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수익률이 결정되도록 주식을 적절히 편입해 만든 '지수연동형 펀드(index fund)'의 일종으로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며, 이 펀드를 기초로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ETF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이라 함(자본시장법 243조, 동법 시행령 246조)

**레버리지ETF(Leverage ETF)**

ETF의 NAV(순자산가치, Net Asset Value)가 주가지수 또는 Commodity 지수 등의 일별수익률의 일정배율(2배, 3배 등)로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ETF를 말함. 일별수익률에 대해서만 일정배율을 적용하며, 누적수익률에 대해서는 Leverage(또는 Inverse) 적용이 불가능함(금융투자업 규정 7-26조 4항 1호)

**인버스ETF(Inverse ETF)**

레버리지ETF와 반대로 음의 배율의 방향(- 2배, - 1배 등)으로 움직이는 ETF를 말하며(금융투자업 규정 7-26조 4항 1호), 리버스ETF(Reverse ETF)가 지수가 하락해야 수익이 나는 지수역행 구조라는 점에서 다름

□ SPAC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연기사유의 근거 규정 마련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0조 3항 : 2010/4/22 개정, 4/26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공시내용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폐지기준(80조의2)에 해당하거나 관리종목지정기준(7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매매거래를 재개하지 않고 연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함

□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 대상 펀드 범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4-112조 : 2010/1/25 개정 · 시행)

- 원칙적으로 판매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모든 펀드를 판매회사 변경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함
  - 다만, 예외적으로 펀드 판매회사의 변경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회장이 시행세칙에 의해 적용 배제 대상 펀드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모펀드는 제외하고 있으며,
  - 그 밖에 단독 판매사 펀드, 역외펀드, MMF, 판매보수이연(CDSC)펀드,伞브렐러 펀드와 조세특례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 고수익고위험펀드 · 장기비과세펀드 등은 제외됨(동 규정 시행세칙 40-1조)

□ 펀드 판매회사의 변경의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4-113조 : 2010/1/25 개정 · 시행)

- 펀드 판매회사는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된 모든 펀드에 대하여 변경 판매회사 또는 변경대상판매회사가 되어야 함
  - 변경판매회사 :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하기 전 펀드를 판매한 판매회사
  - 변경대상판매회사 : 투자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77조 1항 5호)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 판매회사

—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 변경을 요청한 경우 변경판매회사 및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펀드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함

-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펀드가 i)결산일 또는 결산일 이전 1영업일인 경우, ii)압류, 가압류 등 투자자의 권리행사에 제약이 있는 경우, iii) 일부 좌(주)에 대하여만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iv)변경대상판매회사가 해당 펀드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vi) 변경대상판매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불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v)기타 협회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됨

□ 펀드 변경절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4-114조 : 2010/1/25 개정·시행)

—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 변경하고자 할 경우, 최초 판매회사에서 계좌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변경을 원하는 판매회사에서 변경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변경을 신청함

- 변경판매회사 :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의 변경을 위하여 해당 펀드의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계좌정보확인서의 발급의무를 부담
- 변경대상판매회사 : 투자자가 변경판매회사로부터 발급한 계좌정보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해당 펀드를 거래할 수 있는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펀드 판매회사 변경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야 함

□ 집합투자기구의 적립식투자 수익률 표시기준 신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40조 5항 : 2010/1/29 개정·시행)

—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시 집합투자기구의 적립식 투자에 따른 수익률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거치식펀드의 수익률 개념인 “운용실적”과 구별되는 적립식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수익률 표시기준으로 “적립식수익률”을 별도로 마련함

-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그 운용규모가 200억좌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적립식투자상품에 대해 과거 3년 이상의 적립식수익률을 표시하도록 함
  - 매월 첫 영업일에 일정금액의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적립과 기간말 영업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 수익률을 사용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보수·수수료가 차감된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으로 평가한 수익률을 사용

□ 펀드 판매회사 변경에 따른 이익제공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8조 4항, 2-68조 1항 9호 : 2010/1/29 개정·시행)

-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의 시행(2010/1/25 시행)으로 판매회사간 타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과도한 재산상 이익 제공 및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등의 불건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규정을 마련함
- 펀드 판매회사 변경 또는 변경에 따른 이동액을 조건으로 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를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로 규정함
  - 펀드 판매회사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의 제한적 금지
- 집합투자증권 판매시 펀드 판매회사의 변경제도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함
  - 펀드 판매회사는 부당하게 다른 판매회사의 고객을 유인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직원 또는 투자대행권유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됨

□ 펀드, 리츠 등 1인 단독 매수자가 확정된 경우 관리형토지산탁의 선지급기준 예외사유로 추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15 : 2010/6/25 개정, 7/1 시행)

- 오피스, 물류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개발시 펀드, 리츠 등 1인 단독 매수자가 확정된 경우에는 시공(BBB0이상)의 책임 준공 약정이 체결된 경우로서, 위탁자 및 시공사의 요청과 매수자의 동의를 있으면 관리형토지신탁의 신탁 종료 전 선지급 예외 사유로 인정함
  - 다만, 1인 단독매수자의 중도해지 리스크를 고려하여, 신탁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매수자 일방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매수자가 중도금을 납입한 이후에 한함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을 말함. 여기에서 토지비 PF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을 목적으로 신탁수익을 신탁종료 전에 선지급할 경우 안정적 사업관리가 가능한 선지급 범위를 정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펀드 판매 창구의 구분 및 표시 조항 신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8조의2 1항 : 2010/10/15 개정, 10/25 시행)
  - 펀드 판매사 영업점의 펀드 판매 창구를 자금입출 등을 취급하는 통상적 창구와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도록 함(표준준칙 16조 1항에서 이관)
    - 펀드 판매 창구를 통해 적합한 판매자격을 보유한 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입출금 또는 예금 창구 등에서 부적절한 펀드투자권유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
    - 특히, 겸영금융투자업자(특히 은행)의 경우에는 예금 등 원본보장상품을 판매하는 창구와 분리되므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펀드 판매회사 및 임직원의 펀드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금지 행위 사항 신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8조 7호~9호 : 2010/10/15 개정, 10/25 시행)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모로 발행되는 펀드의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 (표준준칙 18조3항에서 이관)
- 펀드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을 회사나 제3자에게 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거래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표준준칙 21조 2호~3호에서 이관)
- 투자자로부터 펀드 취득자금 수취와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표준준칙 20조에서 이관)
  - 임직원 이외의 자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 판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거나, 회사 또는 임직원이 선납하는 행위
  - 자금의 실제 납입 전에 납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하는 행위

□ 펀드를 다른 금융투자상품 등과 연계하여 판매할 경우 준수 사항 신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8조의2 2항 : 2010/10/15 개정, 10/25 시행)

- 펀드 연계 판매가 위법 행위에 해당되거나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펀드투자상담사가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에게 부당한 환매 제약을 가하지 않고, 실적배당원칙이 훼손되지 않아야함(표준준칙 19조에서 이관)

□ 펀드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해피콜 제도 관련 조항 신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8조의2 3항~5항 : 2010/10/15 개정, 10/25 시행)

- 펀드 판매후 7영업일 이내에 해당 판매가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자신이 마련한 투자권유준칙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판매되었는지를 고객으로부터 확인(해피콜)받아야 함(표준준칙 18조 1항에서 이관)
  - 단, 인력현황 및 판매건수를 감안하여 확인 대상 고객 중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할 수 있음

- 해피콜 결과는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함(표준준칙 18조 2항에서 이관)
  - 임직원 등의 펀드판매실적을 평가할 때 관계법규등의 준수 및 민원발생 여부를 반영하도록 함(표준준칙 18조 4항에서 이관)
- 펀드 온라인 판매시 적합성원칙 구현 절차 마련하도록 조항 신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8조의2 6항 : 2010/10/15 개정, 10/25 시행)
- 온라인으로 펀드를 판매할 경우 적합성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투자자가 원할 경우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표준준칙 18조 5항에서 이관)
    - 온라인을 통한 펀드 거래시 일반투자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투자의 적합성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함

### 적합성 원칙

적합성의 원칙은 고객정보를 기초자료로 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하는 것을 의미함. 즉,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은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안 됨.(자본시장법 46조)

### 적정성 원칙

적정성의 원칙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함.(자본시장법 46조의2)

#### 펀드별 투자운용 인력정보 추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8호 : 2010/8/3 개정, 8/9 시행)

— 제1호 서식 운용전문인력정보: 책임매니저 여부(Y/N) 추가

#### 판매사 변경대상 적용펀드 확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41-1조 6호 : 2010/7/30 개정, 8/30 시행)

- 1단계 시행 시 제외되었던 온라인전용펀드(e-class), 온라인 상으로 판매되는 모든 펀드 등 온라인 판매펀드를 변경제도에 포함시킴

□ 판매회사 변경절차 개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40-3조 1호 ~2호 : 2010/7/30 개정, 8/30 시행)

- 판매사 변경을 위한 이수판매사 계좌확인서접수를 지점방문 및 온라인 상 모두 가능토록 판매사변경신청 절차 개선

□ 채권형펀드 분류기준 일부 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 : 2010/7/1 개정 · 시행)

- 집합투자기구 분류 > 집합투자기구 종류 > 채권형(MMF제외): 문구 추가
  -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을 채권 및 채권관련파생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 다만, 증권집합투자기구가 100분의 60이상을 국채, 통안채로 구성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 불공정거래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의 목적

(불공정거래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 1조~2조 : 2010/12/28 제정, 2011/1/1 시행)

-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투자업자 포함)가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함

□ 불공정거래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의 적용 대상

(불공정거래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 5조 : 2010/12/28 제정, 2011/1/1 시행)

- 불공정거래 방지에 관한 업무에는 불공정거래 방지 체계의 구축 및 감독, 이상매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 점검, 이상매매의 사전 승인, 운용과 자산취득·매각 업무의 분리 및 위의 업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 포함

□ 운용과 매매의 분리 원칙

(불공정거래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 7조 : 2010/12/28 제정, 2011/1/1 시행)

-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이나 매각 등 실행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으며 (1항) 매매담당자는 매매업무와 운용지시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2항). 단, 관련법규에서의 예외사항은 제외.

□ 매매담당자의 의무 규정

(불공정거래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 8조 : 2010/12/28 제정, 2011/1/1 시행)

- 매매담당자가 투자중개업자에게 전달 또는 지시하는 매매주문은 관련 법령과 이 규준이 규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달받은 주문이어야 하며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 매매를 거부할 수 있음

□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행위 규정

(불공정거래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 9조 : 2010/12/28 제정, 시행 2011/1/1)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행위
  - 특정시세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의 계속적 또는 순차적 제출, 단일가 매매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호가 제출, 시세를 변동시킨 후 대량거래, 시장수급상황에 반해 과도하게 거래, 동일가격 호가를 일정시간 분할 제출 또는 거래성립가능성이 희박한 호가의 대량제출 행위, 시세변동을 위한 풍문 유포,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수량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호가의 제출

— 시장흐름을 조작하는 행위

- 장종료시의 가격을 당일의 최고가, 최고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만들기 위해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일정기간 동안 높은 가격으로 매수 후 낮은 가격으로 매도 하거나 이와 반대의 거래 또는 같은 가격으로 거래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소유나 매매의사 없이 가장하여 거래하는 행위, 그밖에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및 공신력을 훼손하는 행위

□ 불공정거래방지 체계 수립

(불공정거래방지 업무처리 모범규준 10조~14조 : 2010/12/28 제정, 2011/1/1 시행)

— 불공정거래 방지 모니터링

- 회사는 점검항목을 만들고 (별표 1호부터 8호까지 참고) 이를 감시 및 분석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전산)을 운영해야 하며 그 결과를 1년 이상 전산으로 유지 및 관리 해야 함

— 준법감시인의 감시 의무 규정

- 준법감시담당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매일 점검하고 위반 발견 시 운용총괄책임자,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거래에 대해 소명요구 또는 매매중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통보 후 운용총괄책임자,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는지 수시로 관리 및 감독해야 함

## 다. 가격규제 및 기업지배구조 등

□ 펀드 판매 수수료 및 보수의 상한 설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6조 5항, 249조의2 1항 : 2010/3/12 개정, 6/13 시행)

- 종래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었으나,

-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수수료 한도를 3%로, 판매 보수 한도를 1.5%로 법에 직접 규정하고, 구체적인 적용요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09/12/21 개정·시행)을 통해 이미 펀드 판매 수수료와 보수 상한선이 각각 납입금액(또는 환매금액)의 2%, 펀드 재산의 1% 내로 인하된 바 있음(동시행령 77조 4항)

#### 펀드 판매수수료 & 판매보수

판매수수료는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일회성) " 을 말하며, 판매보수는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계속적) " 을 의미함(자본시장법 76조 4항)

-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 □ 펀드 판매회사의 변경 수수료 징수 금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4-115조 : 2010/1/25 개정·시행)

- 펀드 판매회사는 판매회사 변경의 절차를 이행하는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징구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 펀드 판매회사의 환매수수료의 징수 금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4-116조 : 2010/1/25 개정·시행)

- 펀드 판매회사의 변경이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환매수수료를 징구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판매회사를 변경한 펀드의 환매수수료 면제를 위한 기산일은 해당 펀드의 최초 가입일로부터 계산

- 변경대상 펀드의 수수료 등에 관한 자료 보고 의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4-117조 : 2010/1/25 개정·시행)
  - 신규 판매 또는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판매회사 변경대상 펀드의 수수료를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매회사에 대한 관련 자료 협회 제출을 의무화함
    - 투자자가 판매회사별 수수료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펀드 판매 회사 변경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 3.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도입을 위한 특례 마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4조의2, 부칙 3조 : 2010/3/12 개정, 6/13 시행)
  - 기업의 재무안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민간자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공모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는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민간자금이 활용됨으로써 정부부담이 완화되는 효과와 더불어 자본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Fund, CRF)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는 과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라는 명칭으로 유사한 형태로 규정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4개(서울, 아리랑, 무궁화, 한강)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F)가 운용된 바 있음

- 기업의 재무안정과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집합투자업에 대한 분산투자 규정(자본시장법 81조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그 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함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는 존속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투자하도록 함
- 구체적인 존속 기간 및 투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는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됨
- 다만, 동 규정 폐지일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기업재무안정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는 회사의 존속기간까지 이 법을 적용함

□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회사(기업재무안정PEF) 도입을 위한 특례 마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78조의2, 부칙 3조 : 2010/3/12 개정, 6/13 시행)

- 재무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해 재산을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회사’를 도입함
-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사모의 형식으로 자금을 모집함으로써 기관투자자 등 참여가 용이하도록 함
- 부실징후기업, 구조개선기업 등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해 투자하도록 함
-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는 i)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ii)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을 신청한 기업, iii)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기업, iv)합병 등으로 구조조정 등을 하려는 기업 등이 있음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일반 사모투자전문회사(PEF)보다 완화된 자산운용 방법을 마련함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규정(자본시장법 270조)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i)투자의 목적이 경영권 참여가 아닌 단기간의 차익 실현을 위한 투자가 가능하며, ii)채무구조개선기업의 주식, BW, NPL, 부동산영업권 등 다양한 대상에 투자가 가능하고, iii)회사재산의 200% 내에서 자금차입 및 채무보증을 허용함
- 다만, 일반PEF와 같이 6개월 이내의 주식처분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자산운용 제한

PEF는 경영권 참여 목적의 경우에 한해서, 사원이 출자한 금액의 50% 이상을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하는 방식 등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함.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자금의 차입 및 대출, 담보제공이 금지됨(자본시장법 270조, 83조)

- 연기금의 기업재무안정PEF에 대한 출자범위를 해당 기금 여유자금 운용액의 10% 이내로 제한함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의 4개가 이에 해당함(국가재정법 13조 1항 2호~5호)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는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됨
    - 다만, 동 규정 폐지일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는 회사의 존속기간까지 이 법을 적용함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PEF의 특례 사항 구체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2조의2, 300조의2 : 2010/6/11 개정, 6/13 시행)
-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등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PEF를 도입함에 따라(2010/3/12 개정, 6/13 시행),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함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PEF의 의무출자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함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의 투자대상
    -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정함

## 상호출자제한기업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최소 2개사로 구성된 기업집단 중 국내 계열회사 자산 합계가 5조원 이상이어서 상호출자금지 적용을 받는 기업집단을 말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조)

- 기업재무안정PEF의 투자대상인 재무구조개선기업
  -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
- 기업재무안정PEF의 투자 이외의 재산 운용 방법 구체화
  - 증권에 대한 투자,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로서 그 증권이나 그 증권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인수·합병에 드는 자금의 대여 또는 지급의 보증, 단기대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과 같은 일정한 은행에 예치

### III. 감독행정

#### 1. 법적규제기관

□ 거래소의 호가 공표 및 업무처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26조 1항, 127조 : 2010/7/29 개정, 11/29 시행)

- 거래소는 장중경쟁대량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는 호가잔량이 있는 방향을 공표하고, 거래시간 종료 후 투자참고사항으로 경쟁대량매매 종목명 및 거래량을 공표

□ 거래소의 업무처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23조 4항 : 2010/10/21 개정, 11/29 시행)

- 회원은 접수한 주문을 한국거래소에 호가로 제출함에 있어 위탁자의 주문 사이 및 위탁자의 주문과 회원의 호가 사이에 형평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문서에 의한 방법, 전화등방법(전화·전보·모사전송·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혹은 전자통신방법(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에 따라 주문을 접수 받음
- 회원은 형평성 판단에 있어 주문입력매체의 특징과 주문건수 등을 감안하여야 함

□ 국내법인에 대한 상장 사전협의제도 도입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9조 3항 : 2010/4/21 개정, 4/26 시행)

- 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청구 전에 거래소와 상장절차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종래에 외국법인의 신규상장의 경우에만 인정되던 사전협의제도를 국내법인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하고,
- 신규상장 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후 재상장 및 물적분할 재상장의 경우도 적용함

□ 증권의 상장신청에 대한 거래소의 접수 거부 요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조 2항, 부칙 1조 : 2010/12/1 개정, 12/6 시행)

- 증권의 상장신청서 등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증권의 상장신청서 등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 증권의 상장신청이 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국법인등의 감사인 자격기준의 범위를 확장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조의6 1항 : 2010/12/30 개정, 2011/1/1 시행)

- 손해배상책임보험(외감법시행령 17조의2 1항, 30억원 이상)에 가입한 경우 손해배상기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아 감사인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 주권의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실질심사기준으로 정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80조, 80조의3, 80조의4, 81조, 90조 2항, 95조, 부칙 1조 : 2010/12/1 개정, 2011/4/1 시행)

- 거래소는 다음의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상장폐지를 결정
  - 회생절차개시

- 공시의무 위반
  -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 가운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
  - 주된 영업이 정지되는 등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기존 상장폐지기준으로 영업활동정지를 삭제하고 이를 종합적인 심사요건 즉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된 영업이 정지되는 경우로 변경
- 공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실질심사기준을 규정
- 불성실공시 누계별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혹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 상장폐지 요건 중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요건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동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추가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개선기간이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된 영업이 중단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동산투자회사의 상장폐지기준으로 업무가 전부 정지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추가
- 이는 선박투자회사의 상장폐지기준과 균형을 도모하기 위함
-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 채무증권에 대하여 거래소가 해당 사실을 예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 채무증권을 상장한 법인이 주권의 관리종목지정기준 또는 상장폐지기준 해당하는 경우 해당 채무증권에 대하여 매매거래 정지하도록 규정 신설

- 매매거래 정지기간(1일간)과 관련하여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정지적용을 배제

□ 상장폐지법인등의 추가상장수수료 면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9조 4항, 38조 3항·7항 : 2010/4/21 개정, 4/26 시행)

- 상장폐지 또는 상장폐지를 신청한 기업이 추가상장을 신청한 경우, 이에 대한 변경상장수수료를 면제함

□ 보고대상 보험 자회사등의 대주주와의 거래규모를 개정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24조의7 6항~9항 : 2010/1/19 개정·시행)

-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총자산의 100분의 2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 증권거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므로(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16조의5 8항),
- 당해 자회사등인 보험회사의 보고 대상 해당 금액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자회사등인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100분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거 12개월간의 거래금액을 합산함

□ 해외금융기관의 신용공여시 적정담보 확보의무 배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22조 2항 9호 : 2010/1/19 개정·시행)

-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나(금융지주회사법 48조 2항), 외국금융기관인 자회사등과 국내 자회사등간 원활한 연계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인 경우 담보 확보의무를 면제함

- 자회사등이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시의 적정 담보 확보의무 적용을 배제

□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겸직 허용 기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13조의15, 별표 1-4 : 2010/3/8 개정 · 시행)

-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개별 금융업법과 달리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 사이에 임직원 겸직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위한 사전승인·사전보고 등의 일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후보고 대상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39조, 시행령 18조)
-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겸직을 위해 금융지주회사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함
  - 겸직 승인기준에 포함되는 사항 및 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첨부 서류 등을 규정
  - 자회사 등의 임직원 겸직이 금지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 겸직 변경 내용이 경미하거나 이미 승인 또는 보고된 겸직과 동일한 내용으로써 겸직하는 임직원 개인만 변경되는 경우 등은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간 업무위탁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19조의2 : 2010/3/8 개정 · 시행)

-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업 등의 일부를 다른 자회사등에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예외적인 위탁금지 사항과 위탁 업무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사전승인, 사전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사후보고 대상업무를 금융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47조, 시행령 26조)

- 이에 따라 위탁이 허용되는 업무 및 사전승인, 사전보고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사항, 사후보고 대상 등을 규정함
  - 준법감시인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위탁이 금지되나(시행령 26조 1항 1호),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된 교육은 위탁을 허용
  - 위탁승인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내부통제기준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구비 서류 등을 규정
  - 이미 업무위탁에 관해 사전승인 또는 사전보고를 한 후, 그 업무위탁의 내용이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주된 업종이 동일한 자회사 등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후보고 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13조의16, 별표1-5 : 2010/3/8 개정 · 시행)

- 금융지주회사법(41조의5 1항 3호)에서는 임직원의 겸직이나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법령의 준수, 위험 관리 및 이해상충의 방지 등을 위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정해야 하는 경우 및 그 설정 운용 ·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완전자회사 등이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등 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 위원장의 신용정보업감독 관련 위임사항 추가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4호 : 2010/1/18 개정 · 시행)

-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에 따라 제공하는 신용정보 범위 등 승인”을 위원장의 위임사항으로 규정함

□ 금융회사 구조조정 관련 위원장 위임사항 추가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12호 차목 : 2010/1/18 개정·시행)

—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는 위원장의 위임사항으로 규정함

-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신용정보업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등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아닌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 6항 1호 가목·다목)의 주식소유에 대한 승인

□ 위원장 위임사항 신설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17-1호 어목·저목·처목 : 2010/1/18 개정·시행)

— 정책금융공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의 위임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함

- 금융자회사 출자 보고의 접수
- 금융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 보고 및 금융자회사등의 사업계획 평가 보고의 접수
-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별지서식의 개정

□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 관련 규정 개정

(은행업감독규정 : 2010/7/27 개정, 8/1 시행)

— 국내은행의 외화자금조달 장기화 유도를 목적으로 중장기 외화대출채원비율을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로 명칭 변경

— 산정방식의 강화, 규제비율 상향 조정(90% → 100%)

- 단, 수출입은행은 규제비율을 기존 비율인 90%이상으로 유지

□ 외화유동성리스크관리기준 적용범위 확대

(은행업감독규정 : 2010/7/27 개정, 8/1 시행)

- 외화유동성리스크 내부통제를 위해 국내은행에만 적용되어온 외화유동성리스크관리기준 운영을 외은지점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외은지점의 외환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

□ 외화유동성 비율 보고 강화

(은행업감독규정 : 2010/7/27 개정, 8/1 시행)

-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비율을 매월말일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규제비율 위반 시 제재
- 이와 별도로 은행은 자율적으로 일별관리하고 동실적을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전자금융거래시의 인증방법

(전자금융감독규정 7조 : 2010/6/30 개정, 6/30 시행)

- 모든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외에도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의 사용 가능
-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등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함

□ 외국법인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산정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50조 2항 1호, 3항 2호, 5항 5호가목· 6호· 6호의2, 별표2 1호(1)· 2호(1)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액면가액이 기재된 외국주권의 상장수수료 산정 기준 및 연부과금 부과 기준을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규정함
  - “자본금 기준”으로 상장수수료를 부과하며 신규상장심사수수료(500만원)을 부과함

- 무액면 외국주권과 외국주식예탁증권은 종래의 부과기준인 “주식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함(별표2 1호(2)·2호(2))

□ 상장심사수수료와 상장수수료의 분리 부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50조 2항 1호~4호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상장심사수수료와 상장수수료를 상계처리하지 않고 별도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부과 규정을 마련함
  - 주권의 신규상장, 재상장시 상장예비심사청구시에 상장심사수수료 부과
  - 주권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권의 재상장신청시 재상장심사수수료 부과
  - 국채증권 등의 일괄상장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시 또는 신주일괄상장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시 상장수수료를 부과

□ 상장심사수수료의 반환 불가 사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50조 8항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상장심사수수료는 상장심사가 개시된 후에는 반환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신규상장수수료 최저한도 상향조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2 1호(1)(나)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주권의 신규상장수수료 최저한도액을 “1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주권의 연부과금 부과방법 및 부과시기 구체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50조 3항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주권의 연부과금을 정기납부와 수시납부로 구분하여 납부하도록 함
  - 정기납부 : 전년도 연부과금을 매년 1월 중 납부
  - 수시납부 : 상장폐지시 당해연도 연부과금은 상장폐지 전에 납부

□ 주권의 연부과금 면제사유 정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50조 5항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부과일 현재 부도, 자본잠식, 회생절차기각 등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연부과금을 면제하도록 함
  - 부과일 현재 부도, 자본잠식, 회생절차기각 등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는 법인 등 : 회생절차 진행법인, 정기납부후 단기간내(3월 이내) 상장폐지법인 등
- 연부과금 면제혜택의 취소
  - 증권의 자진상장폐지를 신청한 법인, 존립기간 만료로 인한 상장폐지 법인에 대해서는 연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함

□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에 관하여 규정을 정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50조 : 2010/12/30 개정, 2011/1/1 시행)

- 우회상장심사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
- 한국IR서비스가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IR 모범기업으로 선정된 상장법인 중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법인에 대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의 면제근거를 마련
  - 이는 선정 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권에 대한 신주상장수수료, 변경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에 제한
  - 본 개정규정은 2010년 IR 모범기업으로 선정된 상장법인의 2010년에 대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부터 적용(부칙 2조)

□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위반제재금 벌점대체부과제도 신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3조의3 : 2010/6/23 개정, 7/1 시행)

-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 내용이 경미하여 예고벌점이 5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벌점을 벌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부과금액은 '대체벌점×100만원'으로 산정함
- 상장법인의 신청 및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침
  - 다만, 공시의무 위반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이거나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 등을 감안하여 대체부과가 위반의 억제효과가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점대체부과를 허용하지 않음

□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벌점유예제도 등 신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3조 4항, 14조 2항 : 2010/6/23 개정, 7/1 시행)

**공시우수법인**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표창 및 포상을 받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하며, 임·직원이 표창 및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속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함

-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1회 1건을 기준으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벌점부과를 6월 이후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단, 유예기간동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벌점부과시에 유예받은 벌점을 합산 부과
- 벌점유예를 받은 공시우수법인에 대하여 '不'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표시를 면제함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벌점부과 가중·경감기준의 구체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3조 4항 : 2010/6/23 개정,  
7/1 시행)

— 가중사유

- 은폐, 축소를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 공시의무 위반 내용이 공시의무 해당 기준의 3배 이상인 경우
- 공시의무 위반 행위 등을 감안하여 해당법인의 내부통제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개선계획서의 재요구대상(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벌점 포함)이 되는 경우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경사유

- 위반사실을 거래소가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경우
-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공시업무 또는 기업설명회와 관련하여 수상경력이 있는 법인
- 공시의무사항이 특정 사안의 진행과정의 일부로서 순차적으로 발생하고 관련된 최초의 공시가 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
- 최근 3년간 공시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
- 최근 1년간 자율공시의 비율이 10%이상이고 5건이상인 경우
- 최근 1년간 기업설명회 개최사실 신고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
- 귀책사유가 크지 않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장주선인의 기업분석보고서 제출의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3조 2항~3항 : 2010/12/3 개정,  
12/6 시행)

- 상장주선인은 2년간 반기별 1회 이상, 총4회 이상 거래소에 기업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분석보고서란 상장을 주선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재무 상황 등을 분석한 자료를 의미(코스닥시장상장규정 26조 5항)
- 다만 상장일로부터 상장일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혹은 반기별 잔여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다음 반기부터 적용
  - 자본시장법은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면서 증권이 상장된 후 40일 이내에 해당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1조 4호, 동법 시행령 68조 3항)
- 상장주선인의 기업분석보고서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심사수수료를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8조 1항 : 2010/12/3 개정, 12/6 시행)

- 외국기업 상장심사에 있어 해외실사 등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

□ 외국기업의 감사인 자격으로 「외감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상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건으로 추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조의2 1항 : 2010/12/31 개정, 9/6 시행)

- 기존에는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합산한 금액이 20억원 이상에 해당할 것을 요구
- 외국기업의 감사인은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상장예정 법인이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함

□ 시장경보제도 중 투자경고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 요건 개선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조의3 : 2010/5/31 개정, 6/1 시행)

- 투자경고종목을 지정하는데 있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여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종목 등의 매매거래가 재개된 후 매매거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매거래 재개 후의 기간'만 대상으로 함
- 투자경고종목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데 있어, 신규상장 후 20일 미만인 종목 또는 매매거래 재개 후의 매매거래 일수가 20일 미만인 종목을 경우에는 20일 미만의 매매거래 일수를 기준으로 함

□ 자기주식매매의 신고관련규정 위반시 약식제재금 면제범위 확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별표2 1호 가·다 : 2010/5/31 개정, 6/1 시행)

- 자기주식매매 신고관련 규정 위반시 위반수량이 신청수량 대비 10% 이하이고, 거래량 대비 5% 이하인 경우 약식제재금을 면제함

## 2. 자율규제기관

□ CMA 투자권유대행인 자격 단일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17조 2호, 2-18조 1호~2호 : 2010/1/29 개정, 2/4 시행)

-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 제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의 CMA 투자권유자격을 “증권투자권유대행인”으로 단일화함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 개정(2009/12/1 개정, 2010/2/4 시행)되어 CMA 투자권유시 그 투자형태에 따라 증권투자상담사(RP형)와 증권펀드투자상담사(MMF형)로 구분되던 자격이 증권투자상담사로 일원화됨(동 규정 1-4조 2호)

**투자권유대행인**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투자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자본시장법(51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함.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은 개인에게만 주어지며 여러 금융투자회사를 대행할 수 없음. 협회규정(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17조)에 따라 펀드·증권·금융투자권유대행인 3가지로 분류됨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등 제외)의 매매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자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등 제외)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거래를 권유하는 자
- 금융투자권유대행인 : 증권의 거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 금융투자권유대행인 자격 및 시험 요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18조 3호 : 2010/1/29 개정, 2/4 시행)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 개정(2009/12/1 개정, 2010/2/4 시행)되어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 및 시험이 투자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로 통합(동 규정 1-4조 5호)됨에 따라,
- 금융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및 시험 요건도 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로 일원화 함

□ 금융투자분석사 정의 명확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25조 2호 : 2010/1/29 개정, 2/4 시행)

- 금융투자분석사의 정의를 “조사분석 자료를 작성·심사·승인하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함

□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의 문항구성을 변경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별표 3-1 : 2010/10/15 개정, 2011/1/1 시행)

- 제3과목 부동산펀드 문항 수를 10문항 축소하여 ‘15문항’으로, 제1과목 펀드일반의 문항 수는 10문항 확대하여 ‘60문항’으로 변경함
  - 현행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은 총 100문항으로, 제1과목 펀드일반 50문항, 제2과목 파생상품펀드 25문항, 제3과목 부동산펀드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10. 9월 현재 펀드별 설정 규모를 살펴보면 총 펀드수 대비 증권펀드 61.2%, 파생상품펀드 27.4%, 부동산펀드 3.4%로 증권펀드의 비율이 가장 높고, 부동산펀드의 비율이 가장 낮음
  - 부동산펀드는 설정된 총 펀드 수 대비 3.4%, 총 설정원본 대비 3.7%에 불과하나 시험문항 비중이 25%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펀드 규모를 고려하여 부동산펀드 문항 수를 축소하고 펀드일반 문항수를 확대함
  - 개정 후 부동산펀드 과목은 부동산펀드 법규 2문항, 부동산펀드 영업 6문항, 부동산펀드 투자·리스크관리 7문항으로 구성됨
  - 개정 후 펀드일반 과목은 법규 12문항, 직문 윤리 및 투자자분쟁예방 10문항, 펀드영업실무 10문항, 펀드 구성·이행 18문항, 펀드 운용·평가 10문항으로 구성됨

□ 금융투자회사 투자광고시 명예훼손성 표시행위 금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38조 : 2010/3/26 개정·시행)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를 할 경우 사진·문자·그림 등을 이용하여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광고 금지행위로 추가함
  - 법적 분쟁의 사전예방 및 투자광고의 신뢰도 제고

- 주요 매체별 투자광고 위험고지 표시기준 구체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37조 5항 : 2010/1/29 개정, 2/4 시행)
  - TV·신문·잡지 등 주요 매체별로 이루어지는 투자광고에 대해 위험고지문구의 가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매체별 특성에 따른 표시기준을 구체화함
  - TV의 위험고지 표시기준
    - 방영시간 : 1/3이상, 화면면적 : 1/5이상
  - 신문의 위험고지 표시기준 세분화
    - 4단 이하 : 8point
    - 4단 초과 : 9point
    - 전면 : 10point
  - 잡지의 위험고지 표시기준
    - 종래 A4기준 "7point"를 "8point"로 강화
  
-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범위 확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85조 : 2010/4/30 개정·시행)
  - 배타적 사용권 부여 대상인 신상품의 범위를 금융투자상품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확대함
    -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CMA, Wrap Account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속하지 않은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부여 가능
  
- 신상품심의위원 의결정족수의 명확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89조 1항 : 2010/4/30 개정·시행)

—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신상품 여부 등을 심의하는데 있어,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에 의결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범위를 금융상품 이외에 서비스로 확대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심의기준 2조 1항 3호~4호, 별지 1호 가~나, 별지 2호~4호 : 2010/5/13 개정·시행)

— 배타적 사용권 부여 대상인 신상품의 범위를 금융투자상품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확대함

-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CMA, Wrap Account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속하지 않은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부여 가능

□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위한 서식 개선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심의기준 별지 1호~4호 : 2010/5/13 개정·시행)

—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위해 회사가 제출하는 서류 중 '신상품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식을 마련함

□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양도담보 금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15 : 2010/6/25 개정, 7/1 시행)

—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신탁사업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신탁재산을 구성하는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 양도담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관리형 및 차입형 토지신탁 모두 적용

□ 애널리스트 및 리포트 관련 정보 공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10/7/23 개정, 8/9 시행)

— 애널리스트 관련 공시시스템 구축

- 금융투자협회가 보유중인 전문인력 DB를 활용, 애널리스트 관련 공시 시스템 구축
- 공시항목: 성명, 협회등록번호, 현소속증권사명, 근무경력(총경력, 회사별근무기간), 증권사별 애널리스트 현황(총인원수) 등

— 리포트 관련 공시시스템 구축

- 개별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리포트 관련 공시시스템 구축
- 공시항목: 제목, 분석대상회사명, 작성애널리스트성명, 리포트공표일자, 주요 내용(투자의견, 목표주가 등), 원문 사본

— 애널리스트 및 리포트 공시시스템 간 상호 연결

- 금융투자협회 애널리스트 공시시스템과 개별 증권회사 리포트 공시시스템의 연계로 투자자 편의성 제고

□ 전문투자자 신청시 적용되는 요건 중 잔고증명 및 개인투자자의 계좌개설요건을 수정하고 실명확인증표 범위 확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12조 : 2010/9/17 개정, 9/20 시행)

—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의 잔고요건을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증명서로 개정

- 전문투자자 지정 시 적용되는 잔고증명은 자본시장법 시행령(10조 3항)과 금융투자업규정(1-8조 2항)에 의하면 국내외 금융기관의 예치 잔고를 의미하나 개정 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는 해외 기관 예치분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규정 간 불일치 야기

— 외국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금융투자회사에 1년 이상의 계좌개설의무를 부여하도록 개정

— 신분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로 주민등록증, 여권 사본 이외에도 성명, 주민번호, 사진에 의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표로 신분증 범위를 확대

□ 일중매매거래 및 시스템매매 위험고지서 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7·별표8 : 2010/10/15 개정, 10/25 시행)

— 판매를 간소화하고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위험고지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수정함

- 현행 일중매매거래위험고지서(별표7) 및 시스템매매위험고지서(별표8)는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 투자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문제가 있음

**일중매매거래 및 시스템매매**

일중매매거래: 동일종목의 주식을 매수한 후 동 일자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동 일자에 매수함으로써 해당 주식의 일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는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

시스템매매: 컴퓨터 시스템에 일정한 조건을 정해놓고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매매를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 컴퓨터에 상장기업의 각종 재무정보, 가격정보등을 입력시켜 놓으면 투자방침대로 일정 시점 또는 일정 가격에 자동적으로 거래 수행

□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삭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1호 : 2010/10/15 개정, 10/25 시행)

—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삭제하여 투자자가 획일적인 정보가 아닌 회사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투자자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할 것을 유도

- 현행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별지 1호)는 (구)표준준칙의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와 중복된 서식임
- 표준준칙 개정('01.8.27)으로 표준준칙에서는 투자자정보 확인 항목들의 예시를 제공하고, 회사가 예시를 참고하여 회사 특성에 맞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되었음

-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와 관련한 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관련 조항 변경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5조 2항 : 2010/10/15 개정, 10/25 시행)
  -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 방법에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포함하도록 확대함
    - 현행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는 서명 및 기명날인으로만 가능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설명서의 수령 거부 방법이 확대되어 관련 내용(시행령 132조 2항)을 반영함
  
- 시스템 이용자의 신고 방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46조 1항, 별지 30호 : 2010/2/26 개정, 4/1 시행)
  -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시스템 이용자를 협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7-34조 1항),
  - 시스템 이용자 신고를 위한 신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 최종호가수익률 보고회사 선정시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의 이용실적 반영 근거 마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51조 : 2010/2/26 개정, 4/1 시행)
  - 최종호가수익률 공시와 관련하여 협회가 수익률을 보고해야 하는 금융투자회사를 지정하는데 있어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의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실적도 감안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협회는 최종호가수익률을 전산매매 등을 통해 공시하며 이와 관련하여 매 6월마다 수익률 보고의무를 지는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를 지정함

□ 증권사 신용공여 이자율 현황 입수에 필요한 서식 마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56조 3항 9호, 별지52호 : 2010/6/21 개정·시행)

- 증권사별 신용공여 이자율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공시를 위해 해당 이자율 입수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 서식 규정을 마련함
  - 금융회사는 신용공여 중 신용거래용자와 예탁증권담보용자의 이자율 현황을 제출하고, 이자율은 기간별, 고객등급별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절차를 개선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17조2 2항~4항 : 2010/8/20 개정·시행)

- 대표주관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명칭, 해당 사유 등 관련 사항을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를 지정
  - 자율규제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됨에 따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근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는 사실 확인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게 됨
- 자율규제위원회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에 따른 결과 및 해당 위규사유 등을 고려하여 지정 결정 대신 협회 정관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고 공모주식 배정을 금지하는 기산점을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이 아닌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일로 변경

□ 의무보유기간 확약 준수에 대한 판단에 있어 해당기간 중의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규정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17조의2 1항 2호 : 2010/8/20 개정·시행)

- 대표주관회사가 확약기간(통상 15일~30일) 종료일의 잔고증명서를 통해 의무보유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현 규정은 상당수 기관들이 확약기간 내에 공모주를 처분한 뒤 종료일에 잔고를 채우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해당 의무보유기간 내의 보유주식 처분 여부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기관들에 대한 의무보유확약 실질적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 발생

**불성실 수요 예측**

기관이 발행사의 공모가 결정을 위한 수요 예측에 참가하여 공모주를 배정받은 뒤 실제 청약을 하지 않거나 상장 후 일정기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의무보유확약)을 해 놓고도 이를 어기고 처분하는 것을 의미

□ 금융투자협회가 인정하는 신분증을 다음과 같이 추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2010/7/23 개정, 7/23 시행)

-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및 신분확인증명서, 군인의 경우 장교·부사관신분증, 군복무확인서 및 신분확인서,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등을 금융투자협회가 인정하는 신분증으로 추가
- 주민등록증 분실 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
  - 이 경우, 신분증, 증명서에는 사진이 부착되고 발급기관장의 직인이 있는 것에 한함

□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회원사의 위법·부당행위의 제재를 구체화하기 위한 가중·감면 사유 추가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2조 2항 : 2010/9/17 개정, 9/20 시행)

- 최근 3년 이내 유사한 행위로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사실이나 유사행위의 반복성 및 고의·중과실 여부를 가중징계 요건에 추가
- 한편, 동일한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상당한 제재를 받았거나 행위 정도의 경미성 및 시정·변상 등을 고려해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감면 사유로 추가됨

□ 회원사 및 회원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의 제재금 부과기준 수정 및 주의 조치 요건 개선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1 : 2010/9/17 개정, 9/20 시행)

-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회원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제재금 부과로 대체해야 하거나 위법행위로 금전적 손실을 회피, 부당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제재금 부과 가능
- 위반행위가 경고사유와 관련이 없더라도 경미하게 규정을 위반했을 시에는 주의 조치 가능

## IV. 상장법인

### 1. 우회상장제도

□ 우회상장 정의 규정을 신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조 4항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양수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간 자산양수, 현물출자 및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고 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 우회상장이라고 정의
- 이는 거래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우회상장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우회상장으로 보고 이에 대한 실질적 규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우회상장신청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상장주선인을 선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7조 3항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일반적으로 상장신청시 상장주선인을 선임하는 것은 임의적임

□ 우회상장신청인의 상장예비심사청구 관련 규정을 신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9조 3항~5항, 10조의4, 15조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상장법인은 우회상장에 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합병 결의 등의 또는 결정하는 경우 상장법인은 거래소에 지체없이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우회상장신청인은 우회상장 해당여부, 우회상장 절차, 상장에 비심사청구서 작성 및 상장예비심사청구시기 등과 관련하여 반드시 거래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상장예비심사청구 이전 신규상장신청인과 거래소와 사전협의는 임의 사항임
- 우회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시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
-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당해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
  - 비상장법인에 종속회사가 있고 최근 3사업연도중 K-IFRS를 적용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및 당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반기재무제표와 연결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계속보유확약서
  -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보호예수증명서
  - 인출 또는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보호예수계약서 및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당해 주식등의 보호예수증명서
  -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 우회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절차를 정비
- 거래소는 심사접수시부터 2개월 이내에 상장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상장법인과 금융위원회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 상장부적격인 경우 상장법인의 주권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등 진행
  -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심사결과를 확정

#### □ 우회상장 심사요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2조의4 1항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하여야 함
-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이익액이 최근 사업연도 25억원 이상,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 50억원 이상(이익액 요건)

- 최근 사업연도의 이익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 최근 3사업연도 각 이익액의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10 이상(자기자본이익율 요건)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이익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 영업현금흐름이 양(+)(대형법인이익 요건)

— 감사인의 감사의견

— 당해 합병등의 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되었을 것

—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1년 전의 날 현재 최대주주가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 이내에 변경이 없을 것

- 합병, 주식교환의 경우에만 적용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영업양수의 경우에만 적용

□ 우회상장심사에 있어 질적심사 도입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5조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우회상장심사에 있어 거래소는 형식적인 요건 뿐 만 아니라 법인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다음 내용의 질적심사를 수행하여야 함

- 영업, 재무상황 및 경영환경 등에 비추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비추어 경영투명성이 인정될 것
- 법적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
- 기타 투자자보호 및 유가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 공공적법인등에 대하여 거래소가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상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병상장 심사요건, 우회상장 심사요건 및 질적심사요건의 적용을 배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2조의3 2항, 32조의4 3항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해당 심사요건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인은 공공적법인,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임

□ 우회상장에 있어 상장법인의 경영권 변동 기준을 마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조의2 : 2010/12/30 개정, 2011/1/1 시행)

—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등 기준으로 우회상장 대상법인의 최대주주등 또는 5%이상 주주(출자자를 포함)가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주식수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수 이상인 경우를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로 규정

— 경영권 변동 여부는 다음의 주식을 포함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

- 합병등거래에 따라 교부받을 주식
- 주요사항보고서 등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아니한 주식관련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가될 주식(주요사항보고서 등 제출일 현재의 전환가액을 기준)
- 주요사항보고서 등 제출일 현재 법률의 규정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인도청구권을 갖는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권(권리행사에 따라 증가할 주식을 기준)

— 단 주요사항보고서 등 제출일로부터 1년 이전에 우회상장 대상법인의 최대주주등 또는 5%이상 주주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경영권이 변동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우회상장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를 기업결합 유형별로 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조의3 1항, 2조의3 3항 : 2010/12/30 개정, 2011/1/1 시행)
  - 상장법인을 존속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자산액 또는 매출액이 우회상장 대상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 상장법인이 우회상장 대상법인의 최대주주등 또는 5%이상 주주로부터 당해 우회상장 대상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고, 당해 취득의 결과 상장법인이 우회상장 대상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
  - 현물출자 가액이 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당해 현물출자의 결과 상장법인이 우회상장 대상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
  - 그 밖에 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상장규정에서 위임한 합병 등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다음과 같이 명시
    - 주권비상장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우회상장에 해당된다고 거래소가 판단하는 거래
  
- 상장법인이 지체없이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우회상장의 거래유형을 구체화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4조 2항 : 2010/12/30 개정, 2011/1/1 시행)

-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양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결의 또는 결정을 한 경우
- 상장법인이 자산양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결의 또는 결정을 한 경우
- 상장법인이 영업 또는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월 이내에 제3자배정 신주 또는 주식관련사채권 발행을 위한 결의·결정을 하거나 최대주주 변경을 신고한 경우
-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또는 5%이상 주주에 대하여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에 대한 납입이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당해 신주발행에 대한 결의·결정을 한 경우
- 그 밖에 거래소가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을 결의하는 등 제출 첨부서류 명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4조 3항 : 2010/12/30 개정, 2011/1/1 시행)

-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5%이상 주주의 당해 상장법인 발행주식 소유현황 명세서
- 비상장법인의 주주명부 요약표
- 상장법인 최대주주등의 주식소유현황 명세서
- 그 밖에 경영권 변동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거래소는 우회상장임을 확인한 경우 상장법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상장법인은 지체없이 우회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관련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4조 4항~5항 : 2010/12/30 개정, 2011/1/1 시행)

- 우회상장예비심사청구시 제출서류를 명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4조의3 3항 : 2010/12/30 개정, 2011/1/1 시행)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최근 사업년도 말 현재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 합병가액, 영업양수가액, 자산양수가액, 포괄적 주식교환 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의견서
  - 현물출자에 대한 감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
    -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 부도발생사실 등에 대한 주권비상장법인의 주거래은행 확인서
  - 회계감사인이 확인한 거래가 완료된 직후의 추정 재무상태표 등
  - 경영권 변동시점까지 취득할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당해 취득시점에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류 및 해당 보호예수대상 주식등에 대하여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보호예수증명서
    - 위 보호예수 약속서류와 보호예수증명서는 영업 또는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경영권변경이 예정된 경우에 한함
  -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예정인 사업부문에 대한 최근 3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당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확인서
  -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우회상장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등에 대한 보호예수 기산일을 신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4조의4 : 2010/12/30 개정, 2011/1/1 시행)
  - 합병 또는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권의 상장일
  - 영업 또는 자산양수 종료일

- 다만, 예비심사종료일이 영업 또는 자산양수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예비심사종료일 익일
- 영업 또는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월 이내에 제3자배정방식의 신주 또는 주식관련사채권을 발행하여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 제3자배정방식의 신주상장일 또는 주식관련사채권 발행일
  - 다만, 예비심사종료일이 당해 신주 상장일 또는 주식관련사채권 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예비심사종료일 익일
- 영업 또는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월 이내에 최대주주변경 신고가 있는 경우 최대주주 변경 신고일 혹은 예비심사 종료일 익일
-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상장일
  - 다만, 예비심사종료일이 당해 신주상장일 이후인 경우에는 예비심사종료일 익일
- 기타 우회상장에 준하는 거래의 경우 성격·절차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

□ 우회상장의 정의 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조 7항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우회상장의 형식적 요건으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합병, 주식교환, 영업·자산양수, 현물출자 등의 기업결합과 실질적 요건으로 경영권의 변동이 있고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을 명시
- 심사대상인 비상장법인에 주권이 아닌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법인 (외국기업도 포함)의 경우도 포함

□ 신규상장과 동일하게 우회상장 심사절차를 정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18조의4, 19조, 19조의2, 19조의3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합병, 주식교환, 영업양수, 자산양, 현물출자 등의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우회상장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우회상장 심사서류 제출서류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세척에서 정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함
- 제출된 심사서류는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에비 심사결과를 확정
- 심사결과는 심사청구일부터 2월(외국기업의 경우 3월 이내에 세척으로 정하는 날까지 금융위원회, 당해 법인 및 상장주선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 신규상장과 유사한 수준의 질적 심사를 도입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19조, 19조의2, 19조의3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이는 우회상장을 통하여 부실한 상장부적격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거래소는 우회상장대상인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회상장이 공익과 투자자 보호상 부적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함
  - 영업, 재무상황 및 그 밖에 경영환경 등에 비추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비추어 경영투명성이 인정될 것
  - 상장전 증자나 주식거래, 상장업무 관련 이해관계자의 주식투자 등으로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이 침해되지 않을 것
  - 그 밖에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 영업양수, 자산양수 형태의 우회상장에 주식이전 방법을 신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19조의3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최대주주의 변경등이 있는 영업양수, 자산양수 형태의 우회상장에 상장법인이 당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것 외 주식이전 방식도 허용
- 주식이전이란 상장법인 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간의 매매 예약·계약 등을 통한 주식이전에 의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들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 변경공시 되는 것을 의미

□ 우회상장시 보호예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2조 22조의2, 22조의3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합병, 주식교환, 영업양수, 자산양수 및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시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은 비상장법인 주식등과 우회상장대상 상장법인 주식등에 대해 1년간 매각을 제한됨
- 기존 2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을 신규상장수준인 1년으로 일원화하면서 시장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
- 본 조를 적용하는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영업양수, 자산양수 및 현물출자의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은 제3자배정 또는 주식이전에 참여한 자에 한함

□ 우회상장기간 중 상장법인의 주식등에 대하여 매각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2조의4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우회상장 중인 상장법인 최대주주등과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은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우회상장 심사일로부터 상장규정에서 정한 추가상장일, 주식교환일 및 세척에서 정하는 날까지 계속 보유하여야 함

- 이는 우회상장심사에 있어 질적심사의 도입으로 인하여 심사기간이 장기화될 것을 예상, 기간 중 경영권이 변동되거나 주가 변동요인을 줄여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투자자의 환금성이 지나치게 제약되지 않도록 최대주주등에 제한하여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보호예수하는 것
  - 거래소가 우회상장요건 충족에 따른 상장완료,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우회상장 취소 결정 등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회상장 중 상장법인의 주식등에 대하여 매각이 가능하도록 예외 근거를 마련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신규상장과 동일하게 우회상장 심사절차를 정비함에 따라 시행세칙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18조의3, 18조의4 : 2010/12/31 개정, 9/6 시행)
- 우회상장심사를 받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우회상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방법, 요건 및 절차는 우회상장 유형별로 코스닥 상장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우회상장보고서는 [상장서식 30-5]에 따라 우회상장의 목적, 일정, 회사의 개황 및 경영조직, 사업내용, 재무사항 등을 작성
  - 우회상장의 유형으로 합병, 주식교환, 영업양수, 자산양수, 현물출자에 준하는 거래(코스닥시장상장규정 18조의4 1항 6호)로 분할합병과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
    - 비상장법인의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분할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최대주주 변경등이 있는 경우 우회상장으로 보아 그 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합병 유형의 우회상장규정을 준용하고 요건은 영업양수 유형의 우회상장규정을 준용
    -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우회상장 심사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 심사의 방법, 요건 및 절차등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함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위임한 우회상장 심사서류 제출시 추가서류로 거래소가 질적심사를 위하여 요청한 경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합병등 이후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그 밖에 기업결합에 관한 재무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증권신고서의 제출대상이 아닌 우회상장심사대상법인은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 상장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함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경영조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지배구조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주식을 분석한 경우 그 분석에 관한 사항, 이외에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 우량한 상장법인의 우회상장 질적심사 완화를 위하여 기업계속성 요건(코스닥시장상장규정 6조 1항 19호 가목)을 적용 배제 요건 신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19조 3항, 19조의2 3항, 19조의3 9항 : 2010/12/31 개정, 9/6 시행)

- 상장법인이 상장(재상장, 우회상장 완료)를 포함한 이후 3년이 경과 되었을 것
- 상장법인이 최근 2년 이내에 관리종목 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것
-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이 없을 것
-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영업이익이 있을 것
- 상장법인이 최근 2년 이내에 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여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대상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
- 우회상장 대상 비상장법인이 국민경제의 발전 및 자본시장의 효율적 자금조달을 저해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개정된 상장규정에 맞춰 영업양수, 자산양수 형태의 우회상장에 제3자배정 주식발행 외에 주식이전 방식을 신설하고 상장규정에서 위임한 영업양수를 구체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19조의3 : 2010/12/31 개정, 9/6 시행)

- 영업양수의 영업에 대하여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자산액 또는 매출액이 우회상장 대상 주권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을 규정

- 개정된 상장규정상의 우회상장 심사절차에 맞추어 시행세칙 정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19조, 19조의2, 19조의3 : 2010/12/31 개정, 9/6 시행)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합병, 주식교환, 영업양수, 자산양수, 현물출자 관련하여 각종 상장서식과 확인서 및 첨부서류 제출시기를 명시하고(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기준), 관련서류 제출 이후 거래소는 우회상장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상장법인에 통지하도록 신설
- 우회상장에 해당된다는 통지를 받은 즉시 해당 상장법인은 우회상장에 대한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합병, 주식교환, 영업양수 등이 완료되기 전까지 제출한 확인서 및 첨부서류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상장법인은 해당사항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함

## 2. IFRS 관련 규정

- K-IFRS를 적용하는 지배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방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2010/12/7 개정 · 시행)

- 해당회사의 재무제표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K-IFRS 기준서 제102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 재무제표 작성 방법을 따름
  - 위 개정규정은 2011/1/1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부칙 2조)
-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하게 하여 기업의 부담 완화
-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을 그 법인의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제20947호) 제23조에 의해 지분법 적용 재무정보를 주석으로 공시

□ IFRS 조기도입 기업에 관한 상장규정 적용 기준 명확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조 1항 : 2010/4/21 개정, 4/26 시행)

- 국제회계기준(IFRS)을 조기 도입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진입 및 퇴출 등 상장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현행 K-GAAP(한국식 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과 마찬가지로 개별 실체 중심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따라서,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IFRS 별도재무제표상 재무내용을 기준으로 진입 및 퇴출 등을 심사함

**별도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지배기업과 그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와 달리, 지배기업이 투자자산을 종속기업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를 말함. 기업의 법적실체(legal entity)에 대한 재무정보 제공, 배당, 세금계산 등의 목적으로 작성·공시되며, 별도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추가정보로 공시할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님

## □ IFRS 조기도입 기업에 관한 퇴출심사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75조 1항 4호·4항 2호 : 2010/4/21 개정, 4/26 시행)

- 국제회계기준(IFRS)을 조기 도입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IFRS 별도재무제표상 재무내용을 기준으로 진입 및 퇴출 등을 심사하지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조 1항),
- 관리종목지정 및 해제에 관한 퇴출심사시에는 자본잠식 산정에 있어 지분법 손익이 반영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도록 함
  - IFRS 별도재무제표에는 자회사 실적이 반영되지 않음 점을 고려한 것으로, 자본잠식 산정시 자기자본액 중 외부주주지분(비지배지분)은 제외함

## □ K-IFRS 도입에 따라 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정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0조, 10조의3, 10조의4, 11조, 18조, 32조, 36조, 75조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주권(지주회사 주권) 상장예비심사청구시 2012년부터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 K-IFRS를 적용하는 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 및 재상장신청인이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 신규상장심사요건 중 기업규모에 대하여 종속회사가 있는 신규상장신청인이 K-IFRS를 적용하여 최근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당해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를 자기자본으로 하고 비지배지분은 제외하도록 규정
    - 이는 종속회사 외부주주의 지분을 제외함으로써 개별 실체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기 위함
  - 신규상장심사요건 중 경영성과인 매출액과 관련하여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수익액을 적용하도록 규정
    - K-IFRS의 경우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외의 이자, 배당, 로열티수익까지 수익으로 포함시켜 산정하기 때문
  - 신규상장심사요건 및 재상장심사요건 중 경영성과인 이익과 관련하여 종속회사가 있는 신규상장신청인 및 재상장신청인이 K-IFRS를 적용한 사업연도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이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 영업이익 및 세전이익은 지배·비지배지분의 구분이 없어 이를 적용하기 어려움
    - 연결중심의 심사 실시가 예정된 2013년부터는 비지배지분을 제외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상 이익액을 적용
  - 신규상장심사요건 중 감사인의 감사의견대상에 종속회사가 있는 신규상장신청인이 K-IFRS를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하도록 규정
  - 관리종목지정기준인 감사의견 또는 반기검토의견으로 종속회사가 있는 상장법인이 최근사업연도에 K-IFRS를 적용한 경우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모두를 고려하도록 규정
- K-IFRS를 적용하는 기업의 퇴출과 관련하여 신고하여야 할 감사의견에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할 것을 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7조 1항 2호 마목 (1) (가)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통하여 감사의견 부적정등 적용 기준을 확대하여 별도의 재무제표 뿐 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인 경우에도 상장폐지하도록 함
-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은 감사의견 부적정등 확인 수단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시하도록 하는데 별도 재무제표 뿐 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도 동일하게 기재하도록 함

□ IFRS 조기 도입기업에 관한 퇴출심사기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조 1항 3호·4호, 38조 1항 4호의2·10호 : 2010/4/21 개정, 4/26 시행)

- 국제회계기준(IFRS)을 조기 도입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IFRS 별도재무제표상 재무내용을 기준으로 진입 및 퇴출 등을 심사하되(동 규정 3조 1항),
- 관리종목지정 및 해제 등 퇴출심사시에는 자본잠식 산정에 있어 자회사의 손익이 반영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도록 함

□ IFRS 조기 도입기업에 관한 퇴출심사기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8조 1항 3호·4호, 38조 1항 4호의2·10호 : 2010/4/21 개정, 4/26 시행)

-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식분산 요건을 심사하는데 있어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보통주 이외의 주식'은 소액주주의 지분합산에서 배제하도록 함

□ IFRS 조기 도입기업의 관리종목 지정·해제기준 명확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6조 1항 3호 : 2010/4/21 개정, 4/26 시행)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및 자본잠식 등에 따라 관리종목을 지정 및 해제하는 경우 IFRS 조기도입기업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함

□ K-IFRS 시행에 따라 감사보고서, 상장예비심사청구시와 신규상장시 심사요건,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요건 등 K-IFRS 적용과 관련하여 규정 정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조, 4조, 6조 1항, 28조, 38조 1항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적용되는 감사보고서는 K-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한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를 의미
  - 이때 담당회계사를 포함한 해당 감사인이 당해기업의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보유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득하는 등 상장예정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는 제외됨
- 상장예비심사청구시 당해 사업연도 중 감사인 지정을 받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최근 분기 또는 반기재무제표 및 지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있어 K-IFRS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K-IFRS로 다시 작성하여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
- 신규상장 심사요건에 있어 별도재무제표 중심으로 해당 기준을 마련하되 자기자본,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ROE(자기자본이익률), 감사의견등 일부항목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함
  - 이는 K-IFRS 별도재무제표에 지분법 손익이 미반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 자기자본과 ROE(자기자본이익률)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은 제외하도록 하고, 매출액에 대해서는 별도재무제표상의 수익액에서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한하고 기타 수익을 제외
  - 비지배지분이란 모회사가 소유하는 종속회사 지분 이외의 외부주주 지분으로서 소수주주지분을 의미
-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에 있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 감사의견 등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 IFRS 조기 도입기업에 대한 재무사항 적용기준 명확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3조 6항 : 2010/4/21 개정, 4/26 시행)

- 국제회계기준(IFRS)을 조기 도입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의 재무사항과 관련해서는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IFRS 별도재무제표상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되,
- 국제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과의 회계처리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잠식률,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등(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조 1항 2호 마목, 37조 2항 4호 (가)·(나) 등)이 이에 해당함
  - 다만, 감사보고서상 매출액과 관련된 공시사항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에 따름

## V. 기업지배구조와 구조조정

### 1. 일반기업

#### □ 합병가액의 산정기준을 명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3조 2항 : 2010/11/8 개정, 11/10 시행)

- 상장법인이 가장 최근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채택한 회계기준을 근거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 따라서 2011년 이후 K-IFRS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에 있어 합병비율은 K-IFRS를 기준으로 산정됨

####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도록 규정 신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2조, 5-23조의2, 5-24조 : 2010/11/8 개정, 11/10 시행)

- 단,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 전환가액·신주인수권부사채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신주인수권부사채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상향조정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혹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이를 산정가액이라 함
- 예외적으로 정관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도록 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상장법인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최저조정가액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음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 등에 따라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위 상향조정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자산가치 산정과 관련하여 규정을 정비하면서, 순자산을 산정하는데 있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가감되는 일반적인 요건을 추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5조 2항, 부칙(2010.11.30)  
2조 : 2010/11/30 개정, 12/6 시행)

- K-IFRS의 재무제표에 의해서도 합병가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개정하는 등 해당사항을 보완
  - 개정 이전 시행세칙은 KGAAP(Korea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에 따라 평가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 상장법인의 합병에 있어 합병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됨(시행령 176조의5 1항)
  - 상장법인 간 합병은 이사회 결의일과 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최근 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함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상장법인은 상장법인 합병 방법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함
- 순자산액 산정시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 최근사업연도말부터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감액을 가감하도록 신설
  - 합병 가액의 자산가치는 발행주식의 총수를 순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때 순자산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접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5조 2항 각목에 규정된 가액을 차감 혹은 가감하여 산정함

- 순자산 산정에 있어 자본총계에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감자에 의해 감소한 자본금 등을 차감하도록 신설
-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6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부터 적용

□ 수익가치 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자본환원율을 변경하고 주당추정이익 산식에 유상증자추정이익을 삭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6조, 부칙(2010.11.30) 2조, 3조 : 2010/11/30 개정, 12/6 시행)

- 자본환원율은 분석기준일 현재 평가대상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모든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의 1.5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조 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 중 큰 이율을 적용하도록 개정
  - 이는 수익가치 산정시 해당 비상장법인의 실제 자금조달 비용 등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
  - 개정 이전 자본환원율은 분석기준일 현재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의 1년만기정기예금 최저이율의 단순평균치의 1.5배로 산정하였음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조 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은 10%임
  - 본 개정 조항은 2010년 12월 6일부터 2012년 12월 6일까지 한시적인 효력을 가지며 위 기간 내에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가 제출된 합병에 대해서는 개정 조항이 적용됨
- 주당추정이익 산식에 유상증자추정이익을 삭제하고 법인세 산정에 유상증자추정이익을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중복 내용을 정리
  - 주당추정이익 = (추정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우선주배당조정액 - 법인세등) ÷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수
-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6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부터 적용

□ 상대가치 산정 금액을 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7조 1항, 부칙(2010.11.30)

2조 : 2010/11/30 개정, 12/6 시행)

— 상대가치 산정에 있어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 할인한 가액”과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유상증자 발행가액 혹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 중 최근가액을 100분의 10 이내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개정

- 유사회사가 3사 미만인 경우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않도록 함
- 유사회사 요건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구분 없이 평가대상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하면서(7조 1항 1호), 발행회사와 자본금, 매출액규모, 주요재무비율, 주당수익력 및 제품구성비 등의 발행회사와의 유사성 조건을 삭제(7조 6항)

—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6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부터 적용

□ 상장기업의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사유 추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1조 : 2010/6/11 개정, 6/13 시행)

— 상장기업의 자산양수·양도를 권리행사의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 등의 계약 체결 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

-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양도인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 기준이 되는 자산액을 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

## 2. 금융기관

### □ 금융지주회사 업무범위 확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11조, 별표3 : 2010/1/18 개정, 2/1 시행)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에 대한 통제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영위할 수 있는 경영관리업무 및 그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함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음 (금융지주회사법 15조)

— 경영관리업무 추가사항

-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위험관리 업무

— 경영관리부수업무 추가사항

- 자회사등과 공동상품 개발·판매를 위한 경우 또는 자회사등과의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업무용부동산의 소유 및 자회사등에 대한 임대, 자회사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제공, 자회사등에 대한 상표권 및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제공 등 업무자원의 제공
-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 비은행지주회사 전환 특례 요건의 구체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16조의2 : 2010/1/18 개정·시행)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22조 1항)에서는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때부터 전환계획 이행시까지 금융지주회사등으로 간주

- 전환계획의 이행 완료 후에도 별도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가 필요함을 감안

- 시행령은 이러한 금융지주회사법의 전환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전환계획의 세부적인 승인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시장상황에 대한 전망 등 전환계획의 전제가 된 가정 등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전환계획이 해당 기업집단 내 출자관계 등에 비추어 전환계획에 제시된 이행기간 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
  - 전환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에 대한 재원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 전환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 전환계획을 추진·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 운영체제를 갖출 것
  - 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전환계획 이행 시까지 대주주 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을 것
- 그 밖에 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의 서식, 전환계획의 세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비은행지주회사의 인가요건 완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16조의3 1항, 16조의4 1항, 별표4 : 2010/1/18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법(23조, 29조)에서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다르게 설립 인가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들 비은행지주회사의 설립 인가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
  - 보험회사와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으로 자회사로 편입되는 보험회사 등의 경우 사실상 기존 회사의 대주주 변경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대주주의 요건(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1)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승인 대상 대주주의 요건(동법 시행령 별표1의 2)을 적용함
- 은행등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 요건 중 출자능력 관한 규정(법 4조 1항 3호, 시행령 5조 3항, 별표1)을 적용하지 않음
  - 자기자본은 출자금의 3배 이상일 것을 요하는 규정의 적용 배제

- 출자금을 차입으로 조달할 수 없는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적용을 배제하고, 대주주가 일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금의 2/3까지는 차입을 허용

□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의 대주주와의 거래 및 신용공여 한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16조의5~6, 별표5 : 2010/1/18 개정·시행)

- 비은행지주회사 그룹내 회사 전체가 비은행지주회사 대주주등(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총 신용공여의 합계를 일정 한도범위내로 제한하여 규정함
  - 금융지주회사법(34조, 36조 1항)에서 비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해서는 은행지주회사등과는 달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한도, 동일차주 및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 “비은행지주회사 그룹의 자기자본 순합계 ×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 비은행지주회사 그룹의 자기자본 순합계 : 그룹내 회사의 자기자본을 합산하되 그룹내 회사간 출자분을 제외
  -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등 각 회사별 자기자본 대비 비율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 금융지주회사등간 임직원 겸직 허용 절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18조 2항~9항 : 2010/1/18 개정 , 2/1 시행)

- 금융지주회사법(39조 2항~7항)에서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 자회사등 간에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되 별도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거나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 겸직의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임직원 겸직시 i)승인, ii)사전보고(겸직개시 7일전), iii)사후보고(매반기) 절차를 거치도록 함

**금융지주회사법상 임직원 겸직 확대**

개별 금융업법과 달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2009/7/31 개정, 12/1 시행)하여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 사이의 임직원 겸직 허용범위를 확대함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자회사등 “임원” 겸직 가능 → “임직원” 겸직 가능
- 자회사등 상호간 : “동일한 업종” 자회사등간에 한해서 임원 겸직 가능 → 서로 다른 업종의 자회사등간 임직원 겸직 가능(다만, 집합투자업, 변액보험,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겸직은 불가)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의 임직원 겸직

- 자회사등 직원이 금융지주회사 업무중 경영관리업무·자금조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자회사등에서 위탁이 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함
- 그 이외의 겸직은 사전 또는 사후보고를 받도록 함

— 자회사등간 임직원 겸직은 업무위탁 허용여부 등(시행령 별표6)에 따라 차등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함

- 위탁불능업무간의 임원간 겸직은 승인을 통해 가능
- 위탁가능본질업무간 임원 겸직은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고, 임원이나 직원간의 겸직은 승인을 받도록 함
- 위탁가능한 비본질업무간의 임원 및 직원사이의 겸직은 사후보고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간 업무위탁 허용범위 및 절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26조, 별표6 : 2010/1/18 개정, 2/1 시행)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업 등의 일부를 다른 자회사등에 위탁할 경우(금융지주회사법 47조) 이에 필요한 금융위 승인 또는 보고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

- 자회사등 사이의 위협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준법감시인·내부감사·위험관리 등에 대해서는 위탁을 금지

— 위탁의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업무위탁시 i)승인, ii)사전 보고(업무수행일 7일전), iii)사후보고(매반기) 절차를 거치도록 함

- 본질적 업무로서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승인(다른 법령에서 위탁시 별도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사전보고)
- 후선업무 위탁은 사전보고
- 이미 승인·사전보고를 한 경우와 동일한 내용(주된 업종이 동일한 자회사등간 위탁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 사후보고]

□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예수의무 부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0조 3호, 11조 3호, 12조 1항 3호, 46조 7항 : 2010/4/21 개정, 4/26 시행)

—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종합금융사, 보험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등에 대하여 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함

□ 지주회사 관리종목지정·해제시기 명확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42조 : 2010/4/23 개정, 4/26 시행)

— 감사의견, 매출액 및 자본잠식 관련 지주회사 관리종목지정·지정해제시기를 '사업보고서 또는 연결재무제표 제출일 익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

- 종래에는 지주회사의 관리종목지정·해제시기를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로만 규정하고 있어 사업보고서 제출후 3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 제출이 가능한 자산 2조원 미만의 지주회사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제출시점에서의 시장조치 근거가 불명확하였음

## **<부록> 규정별 변경내용**



# I. 법령 등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전자어음 발행의무 면제

(10조 3항 : 2010/3/12 개정·시행)

- 전자어음법(2009/5/8 개정, 11/9 시행)에서는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발행 및 유통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 기업어음증권(CP)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법에 따른 전자어음 발행 의무를 면제함
  - 전자어음법상 전자어음은 실물이 아닌 전자문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동법 6조의2, 23조),
  - 자본시장법상 기업어음증권은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용지에 종이어음으로 발행되어야 하므로 전자문서로 발행될 수 없음

### □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 도입 (12조 2항 6의2, 15조, 16조 2항, 18조 2항 5의2, 20조, 21조 2항 : 2010/3/12 개정, 6/13 시행)

-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을 받으려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이하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추도록 인가·등록 요건을 추가함
  -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에 다른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금융투자업을 신규로 변경 인가·등록하려는 경우에도 당해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추도록 함
- 다만,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한 사회적 신용요건을 인가·등록요건의 유지의무 대상에서는 제외함

□ 금융투자업자 변경 인가·등록시 대주주 요건 완화

(16조 2항, 21조 2항 : 2010/3/12 개정, 6/13 시행)

- 금융투자업자가 변경 인가·등록을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해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 변경인가·변경등록 시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신규로 인가·등록을 받는 경우에 비해 완화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갖추도록 함
  -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과 관련하여 완화된 적격성 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금융투자업자의 비등기 임원 자격 요건 강화

(24조 : 2010/3/12 개정, 6/13 시행)

-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의 비등기 임원으로 재고용될 수 없도록,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적용대상에 비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규정함

□ 펀드 판매 수수료 및 보수의 상한 설정

(76조 5항, 249조의2 1항 : 2010/3/12 개정, 6/13 시행)

- 종래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었으나,
-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수수료 한도를 3%로, 판매 보수 한도를 1.5%로 법에 직접 규정하고, 구체적인 적용요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09/12/21 개정·시행)을 통해 이미 펀드 판매 수수료와 보수 상한선이 각각 납입금액(또는 환매금액)의 2%, 펀드 재산의 1% 내로 인하된 바 있음(동시행령 77조 4항)
-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사전심의제도 신설

(166조의2 1항 6호, 286조 1항 4호, 288조의2, 부칙 2조 : 2010/3/12 개정, 6/13 시행)

- 일정한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협회의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장외파생상품 또는 신용위험이나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규 장외파생상품이 이에 해당함
  - 다만, 해당 장외파생상품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
-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협회에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 구성과 위험회피 구조의 타당성, 상품설명서·판매계획서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심의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해야 함
- 장외파생상품 심의에 관한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짐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도입을 위한 특례 마련

(234조의2, 부칙 3조 : 2010/3/12 개정, 6/13 시행)

- 기업의 재무안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민간자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공모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는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민간자금이 활용됨으로써 정부부담이 완화되는 효과와 더불어 자본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기업의 재무안정과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집합투자업에 대한 분산투자 규정(자본시장법 81조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그 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함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는 존속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투자하도록 함
- 구체적인 존속 기간 및 투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는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됨
- 다만, 동 규정 폐지일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기업재무안정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는 회사의 존속기간까지 이 법을 적용함

□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회사(기업재무안정PEF) 도입을 위한 특례 마련

(278조의2, 부칙 3조 : 2010/3/12 개정, 6/13 시행)

- 재무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해 재산을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회사'를 도입함
-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사모의 형식으로 자금을 모집함으로써 기관투자자 등 참여가 용이하도록 함
- 부실징후기업, 구조개선기업 등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해 투자하도록 함
-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는 i)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ii)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을 신청한 기업, iii)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기업, iv)합병 등으로 구조조정 등을 하려는 기업 등이 있음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일반 사모투자전문회사(PEF)보다 완화된 자산운용 방법을 마련함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규정(자본시장법 270조)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i)투자의 목적이 경영권 참여가 아닌 단기간의 차익 실현을 위한 투자가 가능하며, ii)채무구조개선기업의 주식, BW, NPL, 부동산 영업권 등 다양한 대상에 투자가 가능하고, iii)회사재산의 200% 내에서 자금차입 및 채무보증을 허용함
- 다만, 일반PEF와 같이 6개월 이내의 주식처분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연기금의 기업채무안정PEF에 대한 출자범위를 해당 기금 여유자금 운용액의 10% 이내로 제한함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의 4개가 이에 해당함(국가재정법 13조 1항 2호~5호)
- 기업채무안정투자회사는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됨
  - 다만, 동 규정 폐지일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기업채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는 회사의 존속기간까지 이 법을 적용함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금융투자업의 신규·변경인가 시 금융투자업자 본인 요건 및 대주주 요건

(6조 8항, 19조의2, 21조 6항, 23조의2 : 2010/6/11 개정, 6/13 시행)

- 자본시장법이 개정(2010/3/12 개정, 6/13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변경 인가·등록을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해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본인 요건 및 대주주 요건 등의 세부적 내용을 마련함
- 금융투자업자 본인의 업무추가 변경인가 요건
  -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근 3년간 지점·영업소 업무의 정지 처분(일부정지는 2년)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대주주의 경우 현행 대주주 유지요건과 동일한 수준에서 규정하되, 모든 대주주가 아닌 최대주주는 5년간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도록 함

□ 펀드 판매 고객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 마련

(68조 5항 13호 : 2010/6/11 개정, 6/13 시행)

-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외의 업무를 연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은행의 꺾기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증권회사 등에도 확대 적용함

□ 펀드의 장외파생거래 상대방 적격요건 완화

(80조 5항 : 2010/6/11 개정, 6/13 시행)

- 펀드의 장외파생거래 상대방의 적격요건을 종래의 '종래에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 이외에 추가적으로 규정함
  -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적격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보증인을 두거나, 또는 거래상대방이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 부동산 펀드 등 신규설립 후 투자의무 기간 연장

(81조 4항 : 2010/6/11 개정, 6/13 시행)

- 신규 설립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래에 1개월 이내로 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6개월' 이내로 투자하도록 함

□ 소규모펀드의 모자형 전환 허용 및 수시공시 강화

(93조~94조, 245조 : 2010/6/11 개정, 6/13 시행)

- 소규모 펀드 난립으로 펀드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둘 이상의 펀드의 자산을 합하여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할 수 있는 모자형 펀드 전환을 허용함

-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는 계속 존속하되 소규모 펀드를 합쳐 운용자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펀드의 수익률 등에 대하여 수시공시를 강화함
  - 소규모 펀드의 수익률은 설정원본이 50억원 이상인 펀드와 별도로 비교·공시하도록 함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기업공시제도 정비

(125조 3항, 136조 2호, 174조 2호 : 2010/6/11 개정, 6/13 시행)

- 증권신고서도 사업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연결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함
- 종속회사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 금융위의 확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기밀 등에 해당하므로 공시 대상에서 제외함

□ 상장기업의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사유 추가

(171조 : 2010/6/11 개정, 6/13 시행)

- 상장기업의 자산양수·양도를 권리행사의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 등의 계약 체결 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
  -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양도인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 기준이 되는 자산액을 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

□ 기업채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채무안정PEF의 특례 사항 구체

(252조의2, 300조의2 : 2010/6/11 개정, 6/13 시행)

-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등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기업채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채무안정PEF를 도입함에 따라(2010/3/12 개정, 6/13 시행),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함
  - 기업채무안정투자회사·PEF의 의무출자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함
- 기업채무안정투자회사의 투자대상
  -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정함

- 기업재무안정PEF의 투자대상인 재무구조개선기업
  -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
- 기업재무안정PEF의 투자 이외의 재산 운용 방법 구체화
  - 증권에 대한 투자,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로서 그 증권이나 그 증권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인수·합병에 드는 자금의 대여 또는 지급의 보증, 단기대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과 같은 일정한 은행에 예치

### 3. 금융지주회사법

#### □ 금융지주회사 업무범위 확대

(11조, 별표3 : 2010/1/18 개정, 2/1 시행)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에 대한 통제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영위할 수 있는 경영관리업무 및 그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함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음(금융지주회사법 15조)
- 경영관리업무 추가사항
  -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위험관리 업무
- 경영관리부수업무 추가사항
  - 자회사등과 공동상품 개발·판매를 위한 경우 또는 자회사등과의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업무용부동산의 소유 및 자회사등에 대한 임대, 자회사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제공, 자회사등에 대한 상표권 및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제공 등 업무자원의 제공

-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비은행지주회사 전환 특례 요건의 구체화

(16조의2 : 2010/1/18 개정 · 시행)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22조 1항)에서는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때부터 전환계획 이행시까지 금융지주회사등으로 간주
  - 전환계획의 이행 완료 후에도 별도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가 필요함을 감안
- 시행령은 이러한 금융지주회사법의 전환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전환계획의 세부적인 승인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시장상황에 대한 전망 등 전환계획의 전제가 된 가정 등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전환계획이 해당 기업집단 내 출자관계 등에 비추어 전환계획에 제시된 이행기간 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
  - 전환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에 대한 재원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 전환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 전환계획을 추진·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 운영체제를 갖출 것
  - 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전환계획 이행 시까지 대주주 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을 것
- 그 밖에 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의 서식, 전환계획의 세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비은행지주회사의 인가요건 완화

(16조의3 1항, 16조의4 1항, 별표4 : 2010/1/18 개정 · 시행)

- 금융지주회사법(23조, 29조)에서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다르게 설립 인가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들 비은행지주회사의 설립 인가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
  - 보험회사와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으로 자회사로 편입되는 보험회사 등의 경우 사실상 기존 회사의 대주주 변경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대주주의 요건(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1)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승인 대상 대주주의 요건(동법 시행령 별표1의 2)을 적용함
- 은행등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 요건 중 출자능력 관한 규정(법 4조 1항 3호, 시행령 5조 3항, 별표1)을 적용하지 않음
  - 자기자본은 출자금의 3배 이상일 것을 요하는 규정의 적용 배제
  - 출자금을 차입으로 조달할 수 없는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적용을 배제하고, 대주주가 일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금의 2/3까지는 차입을 허용

□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의 대주주와의 거래 및 신용공여 한도  
(16조의5~6, 별표5 : 2010/1/18 개정·시행)

- 비은행지주회사 그룹내 회사 전체가 비은행지주회사 대주주등(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총 신용공여의 합계를 일정 한도범위내로 제한하여 규정함
  - 금융지주회사법(34조, 36조 1항)에서 비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해서는 은행지주회사등과는 달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한도, 동일차주 및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 “비은행지주회사 그룹의 자기자본 순합계 ×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 비은행지주회사 그룹의 자기자본 순합계 : 그룹내 회사의 자기자본을 합산하되 그룹내 회사간 출자분을 제외
  -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등 각 회사별 자기자본 대비 비율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 금융지주회사등간 임직원 겸직 허용 절차

(18조 2항~9항 : 2010/1/18 개정 , 2/1 시행)

- 금융지주회사법(39조 2항~7항)에서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 자회사등 간에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되 별도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거나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 겸직의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임직원 겸직시 i)승인, ii)사전보고(겸직개시 7일전), iii)사후보고(매반기) 절차를 거치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의 임직원 겸직
  - 자회사등 직원이 금융지주회사 업무중 경영관리업무·자금조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자회사등에서 위탁이 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함
  - 그 이외의 겸직은 사전 또는 사후보고를 받도록 함
- 자회사등간 임직원 겸직은 업무위탁 허용여부 등(시행령 별표6)에 따라 차등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함
  - 위탁불능업무간의 임원간 겸직은 승인을 통해 가능
  - 위탁가능본질업무간 임원 겸직은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고, 임원이나 직원간의 겸직은 승인을 받도록 함
  - 위탁가능한 비본질업무간의 임원 및 직원사이의 겸직은 사후보고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간 업무위탁 허용범위 및 절차

(26조, 별표6 : 2010/1/18 개정, 2/1 시행)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업 등의 일부를 다른 자회사등에 위탁할 경우(금융지주회사법 47조) 이에 필요한 금융위 승인 또는 보고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
  -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준법감시인·내부감사·위험관리 등에 대해서는 위탁을 금지

- 위탁의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업무위탁시 i)승인, ii)사전 보고(업무수행일 7일전), iii)사후보고(매반기) 절차를 거치도록 함
- 본질적 업무로서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승인(다른 법령에서 위탁시 별도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사전보고)
  - 후선업무 위탁은 사전보고
  - 이미 승인·사전보고를 한 경우와 동일한 내용(주된 업종이 동일한 자회사등간 위탁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 사후보고

## II. 금융위원회 규정

### 1. 금융투자업 규정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외환과생리스크 관리 기준의 설정 및 운용 의무를 부과

(3-45조의2, 8-72조의2 : 2010/4/12 개정 · 시행)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는 외환과생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용하도록 의무화함
  - 은행의 경우 이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2009/12/31제정, 2010/1/1시행)에 따라 '외환과생상품거래 위험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있음(동 규정 41조, 별표15-2)
- 해당 금융투자업자와 종합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운영해야 하는 '외환과생상품거래 위험 관리기준'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금융투자회사 등이 외환과생상품 거래시 거래상대방(전문투자자는 제외)이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 거래상대방별 거래한도를 설정하고, 은행 등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이미 체결된 외환과생상품 거래잔액을 감안하여 운영할 것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 종합포지션 한도의 상향 조정 및 선물환포지션 한도 도입

(제3-47조, 제3-48조, 제3-49조 : 2010/7/26 개정, 10/9 시행)

- 종합매입초과포지션 및 종합매각초과포지션 한도를 각각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
-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 및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 한도를 각각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으로 설정

-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초과가 필요한 업자의 경우 2년 이내의 별도 한도를 인정

□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

(3-8조 2항, 8-44조 1항 2호, 8-45조 4항, 부칙 3조 : 2010/9/1 개정·시행)

- 증권사 및 중금사의 부동산 PF 관리에 있어 건전성을 저축은행 수준으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높임
- 정상 분류자산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BBB-, A3- 이상 기업이 지급 보증한 자산은 0.5%, 매입 대출채권으로 최초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산은 3%, 그밖의 자산은 2%
- 요주의 분류자산의 경우 아파트 자산은 7%, 아파트 외 자산은 10%
- 고정 분류자산은 30%
- 회수의문 분류자산은 75%
- 추정손실 분류자산은 100%
- 종합금융회사는 총대출채권의 30% 이내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을 유지하도록 규정 신설
  - 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적립 이전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본 규정 시행시 30% 한도를 초과하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는 신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30% 이내로 대출 규모를 조정하여야 하는 경과 조치를 둠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시장조성에 있어 채권 종목과 호가수익률범위를 개정 (5-12조 1항, 3항 : 2010/9/1 개정·시행)

- 시장조성채권 가운데 회사채와 금융채 각 2종목 이상을 포함한 9종목 이상의 채권에 대하여 지속적인 시장조성을 하여야 함

- 과거 회사채 및 금융채 각 1종목 이상을 포함한 7종목 이상이었던 것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조성 기능을 강화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시장조성을 위하여 동시 제기하는 매도 및 매수수익률의 호가 간 호가수익률범위를 국채증권의 경우 20bp 이내, 국채증권 이외의 채권은 40bp 이내로 축소
    - 과거 국채증권은 30bp 이내, 국채증권 이외 채권은 60bp 이내였음
    - 장내시장의 매도 및 매수수익률의 호가 간 호가수익률범위는 회사채 40bp 이내, 회사채 이외 채권 20bp 이내임
- 장내파생상품인 금선물과 미니금선물 각각의 대량 보유보고 및 변동보고 수량을 규정 (6-29조 1항, 2항 : 2010/9/1 개정 · 시행)
- 거래단위가 중량 1킬로그램인 경우 보유보고 기준은 30건, 변동보고 기준은 6건으로 완화하였음
    - 과거에는 금선물의 경우 보유보고 기준은 10건, 변동보고 기준은 2건이었음
  - 거래단위가 중량 100그램인 경우 보유보고 기준은 300건, 변동보고 기준은 60계약으로 설정함
- 금융투자업자와 관련하여 영업용순자본비율산정기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회계처리기준을 개선 (3-1조, 3-3조, 3-4조, 3-7조, 3-8조, 3-10조, 3-11조, 3-12조, 3-14조, 3-16조, 3-21조 : 2010/12/31 개정, 2011/4/1 시행. 단, 부동산신탁업자에 대해서는 2011/1/1 시행)
-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 기준 개정
    - 기존에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을 재무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였던 것을 법 제3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개별재무제표로 변경하고, 영업용순자본 산정 시 기존의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가산항목에 해당하는 대상 금액에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설정된 대손충당금 등과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발행잔액을 추가함 (단, 상환우선주 발행잔액의 경우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상환으로 인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계약상의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상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2)상환을 보증하는 담보의 제공, 상계 및 만기 전 상환을 금지하는 약정이 있고, 그 밖에 후순위 변제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는 경우, (3)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대상에 3-8조에 따라 적용한 대손준비금 잔액,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이익잉여금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발생한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을 신설하여 추가하고 그 외 각 호의 대상항목 기준 정비
- 주식위험액 및 옵션위험액 산정 기준을 K-IFRS에 맞게 정비 및 구체화함

—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정비

-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건전성 분류 대상에서 증권 항목을 삭제하고, 충당금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부동산신탁업자를 금융투자업자로 변경
- 기존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대손충당금등의 적립기준으로 명시하고 적립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도록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 회계처리기준관련조항 정비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및 세부규정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재무제표 관련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함. 기존의 신탁업자를 부동산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고유계정 회계를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로 하도록 정비함.
- 준비금의 종류에 있어 기존의 특별유보금을 신착위험충당금으로, 신탁위험충당금을 신탁사업적립금으로 변경함.

□ 종합금융회사와 관련하여 크게 자산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을 개선  
(8-42조, 8-43조, 8-44조, 별표 2-2 : 2010/12/31개정, 2011/4/1 시행.  
단, 부동산신탁업자에 대해서는 2011/1/1 시행)

-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정비
  - 보유자산을 보유자산등으로, 대손충당금을 대손충당금 등(지급보증 충당금 포함)으로 변경하고 해당 기준에 대한 세부규정 명시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 정비
  - 8-32조 2항과 관련 대손준비금을 대손충당금으로 간주하여 기본자본에서 차감하는 등 종합금융회사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를 일부 변경하고 상세히 명시함

## 2.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에 대한 용어 정의 및 K-IFRS를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이 증권 발행시 제출해야할 보고서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반기감사보고서 및 분기감사보고서를 포함 (1-2조 9항, 10항 : 2010/11/8개정, 11/10 시행)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이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회사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종속관계에 있는 회사가 있는 법인을 의미
- 신고서의 통지방법, 일괄신고서 이용범위 등 관련 규정을 정비 (2-3조 5항, 2-4조 2항, 2-4조 3항 : 2010/11/8 개정, 11/10 시행)
  - 효력발생시기 규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신고서를 수리거부한 경우에도 발행인에게 이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 금융위가 신고서를 수리하는 경우 발행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서면의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을 추가

— “잘 알려진 기업”이 조직 변경시 다음의 경우에 이미 제출한 일괄 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최종 매매거래일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상법」 제527조의3의 소규모합병의 방법으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 시가총액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권의 가격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
- 일괄신고서란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기재한 신고서를 의미(자본시장법 119조 2항)

— 일괄신고추가서류 기재사항에 있어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함

- 주권 상장 후 5년 경과, 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 등 시행령 제121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이익참가부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 발행을 위한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다면 대표이사 및 이사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 제출시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하여금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할 것을 요구(자본시장법 119조 5항)

□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이 신고서 제출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 비재무사항을 규정 (2-6조 3항 7호, 2-6조 6항 : 2010/11/8개정, 11/10 시행)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제재현황, 결산기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장래 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실적을 명시

-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금융위원회 고시 사항은 발행인에 관한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및 우발채무 등, 제재현황, 결산기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임

□ K-IFRS 도입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외국기업인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및 첨부서류를 개정

(2-11조 1항 1호, 2항 1호 : 2010/11/8개정, 11/10 시행)

-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발행인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사항 보고서 및 거래소 공시사항 등의 진행·변경상황,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우발채무 등, 제재현황, 결산기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실적, 자금의 사용 내역을 추가
- 외국기업이 국제회계기준 등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우발채무 등, 제재현황, 결산기이후 발생한 주요사항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그 외국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하도록 함
  -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와 그 외국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
  - 단, 해당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 및 그 재무제표에 대한 외국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기업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국제회계기준 등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함
  - 단, 해당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 및 그 재무제표에 대한 외국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결 감사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음

-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에 K-IFRS, 국제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시행령 176조 6항)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결반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반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함
    - 단, 해당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 및 그 재무제표에 대한 외국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결반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반기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음
  -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에 K-IFRS, 국제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시행령 176조 6항)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결분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분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함
    - 단,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 또는 증권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분기감사 또는 분기검토가 의무화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또한 해당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 및 그 재무제표에 대한 외국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연결분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분기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음
-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는 증권금융회사를 대량보유보고 특례적용 전문투자자로 추가 (3-14조 : 2010/11/8개정, 11/10 시행)
-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보유 상황 및 변동 내용, 대량 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등의 발행인을 기재한 보고서로 주식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154조 4항)
-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추가

(4-5조 1항 5호 : 2010/11/8 개정, 11/10 시행)

- 다른 법인의 지분증권 등을 양수하는 자에 대하여 미리 정한 가액으로 그 지분증권 등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 체결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 의사록 등 해당사실 증빙서류를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로 명시
- K-IFRS 도입과 관련하여 발행인의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 내용과 첨부서류를 개정 (4-11조 : 2010/11/8 개정, 11/10 시행)
-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에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을 제외
  - 해당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 및 그 재무제표에 대한 외국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가 아닌 각각 연결감사보고서, 연결반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반기검토보고서, 연결분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분기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음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 등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외국법인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으로 봄
  -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외국법인등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K-IFRS를 적용한 것으로 봄
- 합병가액의 산정기준을 명시 (5-13조 2항 : 2010/11/8 개정, 11/10 시행)
- 상장법인이 가장 최근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채택한 회계기준을 근거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 따라서 2011년 이후 K-IFRS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에 있어 합병비율은 K-IFRS를 기준으로 산정됨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감사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도록 규정 신설

(5-22조, 5-23조의2, 5-24조 : 2010/11/8 개정, 11/10 시행)

- 단,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 전환가액·신주인수권부사채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신주인수권부사채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혹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이를 산정가액이라 함
- 예외적으로 정관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도록 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상장법인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최저조정가액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음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 등에 따라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위 상향조정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자산가치 산정과 관련하여 규정을 정비하면서, 순자산을 산정하는데 있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가감되는 일반적인 요건을 추가

(5조 2항, 부칙(2010.11.30) 2조 : 2010/11/30 개정, 12/6 시행)

- K-IFRS의 재무제표에 의해서도 합병가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개정하는 등 해당사항을 보완

- 개정 이전 시행세칙은 KGAAP(Korea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에 따라 평가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 상장법인의 합병에 있어 합병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됨(시행령 176조의5 1항)
- 상장법인 간 합병은 이사회 결의일과 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최근 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함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상장법인은 상장법인 합병 방법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함
- 순자산액 산정시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 최근사업연도말부터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감액을 가감하도록 신설
- 합병 가액의 자산가치는 발행주식의 총수를 순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때 순자산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접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5조 2항 각목에 규정된 가액을 차감 혹은 가감하여 산정함
- 순자산 산정에 있어 자본총계에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감자에 의해 감소한 자본금 등을 차감하도록 신설
-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6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부터 적용
- 수익가치 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자본환원율을 변경하고 주당추정 이익 산식에 유상증자추정이익을 삭제
- (6조, 부칙(2010.11.30) 2조, 3조 : 2010/11/30 개정, 12/6 시행)
- 자본환원율은 분석기준일 현재 평가대상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모든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의 1.5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조 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 중 큰 이율을 적용하도록 개정

- 이는 수익가치 산정시 해당 비상장법인의 실제 자금조달 비용 등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
  - 개정 이전 자본환원율은 분석기준일 현재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의 1년만기정기예금 최저이율의 단순평균치의 1.5 배로 산정하였음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조 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은 10%임
  - 본 개정 조항은 2010년 12월 6일부터 2012년 12월 6일까지 한시적인 효력을 가지며 위 기간 내에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가 제출된 합병에 대해서는 개정 조항이 적용됨
- 주당추정이익 산식에 유상증자추정이익을 삭제하고 법인세 산정에 유상증자추정이익을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중복 내용을 정리
- 주당추정이익 = (추정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우선주배당조정액 - 법인세등) ÷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수
-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6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부터 적용

#### □ 상대가치 산정 금액을 개정

(7조 1항, 부칙(2010.11.30) 2조 : 2010/11/30 개정, 12/6 시행)

- 상대가치 산정에 있어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 할인한 가액”과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유상증자 발행가액 혹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 중 최근가액을 100분의 10 이내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개정
- 유사회사가 3사 미만인 경우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않도록 함
  - 유사회사 요건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구분 없이 평가대상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하면서(7조 1항 1호), 발행회사와 자본금, 매출액규모, 주요채무비율, 주당수익력 및 제품구성비 등의 발행회사와의 유사성 조건을 삭제(7조 6항)

-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6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부터 적용

#### 4.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 보고대상 보험 자회사등의 대주주와의 거래규모를 개정

(24조의7 6항~9항 : 2010/1/19 개정 · 시행)

-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총자산의 100분의 2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 증권거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므로(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16조의5 8항),
- 당해 자회사등인 보험회사의 보고 대상 해당 금액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자회사등인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100분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거 12개월간의 거래금액을 합산함

##### □ 해외금융기관의 신용공여시 적정담보 확보의무 배제

(22조 2항 9호 : 2010/1/19 개정 · 시행)

-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나(금융지주회사법 48조 2항), 외국금융기관인 자회사등과 국내 자회사등간 원활한 연계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인 경우 담보 확보의무를 면제함
  - 자회사등이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시의 적정 담보 확보의무 적용을 배제

□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겸직 허용 기준

(13조의15, 별표 1-4 : 2010/3/8 개정 · 시행)

-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개별 금융업법과 달리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 사이에 임직원 겸직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위한 사전승인·사전보고 등의 일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후보고 대상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39조, 시행령 18조)
-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겸직을 위해 금융지주회사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함
  - 겸직 승인기준에 포함되는 사항 및 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첨부 서류 등을 규정
  - 자회사 등의 임직원 겸직이 금지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 겸직 변경 내용이 경미하거나 이미 승인 또는 보고된 겸직과 동일한 내용으로써 겸직하는 임직원 개인만 변경되는 경우 등은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간 업무위탁 (19조의2 : 2010/3/8 개정 · 시행)

-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업 등의 일부를 다른 자회사등에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예외적인 위탁금지 사항과 위탁 업무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사전승인, 사전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사후보고 대상업무를 금융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47조, 시행령 26조)
- 이에 따라 위탁이 허용되는 업무 및 사전승인, 사전보고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사항, 사후보고 대상 등을 규정함
  - 준법감시인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위탁이 금지되나(시행령 26조 1항 1호),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된 교육은 위탁을 허용

- 위탁승인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내부통제기준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구비 서류 등을 규정
- 이미 업무위탁에 관해 사전승인 또는 사전보고를 한 후, 그 업무위탁의 내용이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주된 업종이 동일한 자회사 등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후보고 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13조의16, 별표1-5 : 2010/3/8 개정 · 시행)

- 금융지주회사법(41조의5 1항 3호)에서는 임직원의 겸직이나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법령의 준수, 위험 관리 및 이해상충의 방지 등을 위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정해야 하는 경우 및 그 설정 운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완전자회사 등이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등 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 5.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 위원장의 신용정보업감독 관련 위임사항 추가

(별표 4호 : 2010/1/18 개정 · 시행)

-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에 따라 제공하는 신용정보 범위 등 승인”을 위원장의 위임사항으로 규정함

□ 금융회사 구조조정 관련 위원장 위임사항 추가

(별표 12호 차목 : 2010/1/18 개정 · 시행)

-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는 위원장의 위임사항으로 규정함
  -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신용정보업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등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아닌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 6항 1호 가목·다목)의 주식소유에 대한 승인

□ 위원장 위임사항 신설

(별표 17-1호 어목·저목·처목 : 2010/1/18 개정·시행)

- 정책금융공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의 위임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함
  - 금융자회사 출자 보고의 접수
  - 금융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 보고 및 금융자회사등의 사업계획 평가 보고의 접수
  -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별지서식의 개정

## 6. 은행업감독규정

□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 관련 규정 개정

(2010/7/27 개정, 8/1 시행)

- 국내은행의 외화자금조달 장기화 유도를 목적으로 중장기 외화대출채원비율을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로 명칭 변경
- 산정방식의 강화, 규제비율 상향 조정(90% → 100%)
  - 단, 수출입은행은 규제비율을 기존 비율인 90%이상으로 유지

□ 외화유동성리스크관리기준 적용범위 확대

(2010/7/27 개정, 8/1 시행)

- 외화유동성리스크 내부통제를 위해 국내은행에만 적용되어온 외화유동리스크관리기준 운영을 외은지점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외은지점의 외환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

□ 외화유동성 비율 보고 강화 (2010/7/27 개정, 8/1 시행)

-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비율을 매월말일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규제비율 위반 시 제재
- 이와 별도로 은행은 자율적으로 일별관리하고 동실적을 매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7.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 K-IFRS를 적용하는 지배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방법

(2010/12/7 개정 · 시행)

- 해당회사의 재무제표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K-IFRS 기준서 제102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 재무제표 작성 방법을 따름
  - 위 개정규정은 2011/1/1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부칙 2조)
-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하게 하여 기업의 부담 완화
-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을 그 법인의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제20947호) 제23조에 의해 지분법 적용 재무정보를 주석으로 공시

## 8. 전자금융감독규정

- 전자금융거래시의 인증방법 (7조 : 2010/6/30 개정, 6/30 시행)
  - 모든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외에도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의 사용 가능
  -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등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함

### Ⅲ. 한국거래소 규정

####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 레버리지ETF 호가 가격제한폭의 확대

(20조 : 2010/4/21 개정, 5/10 시행)

- 레버리지ETF와 인버스ETF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일반 ETF와 달리 호가의 가격제한폭을 자산운용 배율만큼 확대함
  - 일반ETF의 경우 기준가격에 0.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해 ETF의 가격제한폭으로 하는데 반해,
  - 레버리지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 배율을 곱한 금액”을, 인버스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 음의 배율의 절대값을 곱한 금액”을 각각의 호가 가격제한폭으로 함

##### □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기준의 정비

(26조 2항 4호 : 2010/4/21 개정, 4/26 시행)

- 자본 잠식율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하는데 있어, 국제회계기준(IFRS)을 조기 도입하여 사용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연결 재무제표상의 자본금 및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자본 잠식율을 산정하도록 함
  - 단, 자기자본 중 외부주주(비지배주주)의 지분은 제외하고 산정함
-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에 관한 매출액 산정에 있어 연결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을 적용하도록 함
  - 지주회사의 감사보고서상 기업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조치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대해서는 매매거래정지 사유 중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지주회사의 경우 개별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등에 해당할 경우에도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함

□ 결제시한 전 조기결제제도의 도입

(75조의2, 75조의6 : 2010/4/21 개정, 7/5 시행)

-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의 개시시점을 종래 '결제시한(16시) 이후'에서 '결제시한 1시간 이전(15시)'로 앞당겨 납부·결제할 수 있도록 함
  - 회원의 결제 편의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 거래소의 결제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 미수위탁자의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기준 정비

(89조 2항 : 2010/4/21 개정, 7/5 시행)

- 외국인의 매수대금 결제지연에 대해 적용했던 미수위탁자의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기준(국가간 시차, 결제지시서 오류 등)을 폐지하고,
- 종래에 각각 다르게 정했던 '매수대금' 및 '매도증권' 결제지연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함
  - 천재지변, 긴급사태, 전산장애, 회원의 업무착오 기타 미수위탁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매수대금' 및 '매도증권' 결제지연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의 예외로 인정함
  - 다만, 위탁자의 미납 매수대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위탁증거금 징수의 예외 인정 가능

□ 경쟁대량매매호가 및 경쟁대량매매주문에 관한 정의 조항 및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에 한하여 장중경쟁대량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

(2조 4항, 5항, 4조 1항, 2항, 30조의2, 34조의3 : 2010/7/21 개정, 11/29 시행)

- 경쟁대량매매호가(주문)란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 등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주문)를 의미
  - 장중경쟁대량매매시간은 9시부터 14시30분(4조 3항), 시간외경쟁대량매매시간은 7시30분부터 8시30분으로(33조)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매매거래가 체결
    -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9시부터 15시까지이며, 장 종료후 시간외시장은 시간외경쟁대량매매가 적용되지 아니함
  - 장중·시간외경쟁대량매매 가격은 해당 장중거래 성립 후부터 장 종료시·장개시시부터 장종료시까지 정규시장에서 성립된 해당 거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며,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 없는 경우 당일의 종가, 당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 세칙에서 정하는 가격임
    -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의 산출방법은 세칙에서 정함
  - 호가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 위임
- 장개시전 시장외시장(시장외대량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의 거래시간을 9시로 일부 연장
- (4조 3항, 부칙 1조 : 2010/12/1 개정, 2011/5/30 시행)
- 하지만 장개시전 시간외종가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는 기존과 동일하게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로 함
- 주식워런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을 강화
- (20조의2 2항, 20조의8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거래소에 의한 유동성공급 실적등을 평가 결과 2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그 때부터 1개월 이상 유동성공급자 자격을 제한(20조의2 2항 3호 다목)

- 거래소에 의한 유동성공급실적등을 평가 결과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1개월간 유동성공급 종목수를 초과하여 유동성공급호가 를 제출할 수 없음(20조의8)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6조의 품문 등 관련 종목의 매매거래정지 근거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로 이관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9조 단서의 품문 등 관련 주식관련 사채권 및 무보증사채권 매매거래정지규정은 「유가증권시장공시 규정」 제57조의2 제3항으로 이관

□ 환매채거래의 대상채권 및 대금산정기준, 조기환매근거 마련  
(61조 4호, 65조 1항, 70조 1항 7호, 부칙 1조 : 2010/12/1 개정, 2011/2/14 시행)

- 환매채거래의 대상채권을 모든 사채권 및 통화안정증권, 예금 보험기금채권을 제외한 특수채증권으로 확대
  - 환매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전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사채권과 보증사채권에 한하였던 것을 확대함
- 환매채거래 대금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환매채거래의 조기환매 근거를 마련
  - 일반적으로 환매채거래 대금산정에 있어 1원 단위로 산정하되 국고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환매채거래의 경우 금액 계산시 10원 미만을 절사하도록 함
  - 환매채거래의 종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세칙에 위임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 제70조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14일 시행당시 매매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환매채거래에 대하여도 적용함

##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 SPAC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연기사유의 근거 규정 마련

(40조 3항 : 2010/4/22 개정, 4/26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공시내용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폐지기준(80조의2)에 해당하거나 관리종목지정기준(7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매매거래를 재개하지 않고 연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함

### □ 조기결제제도 도입에 따른 증권의 인도 시기 정비

(101조의7 1항 : 2010/4/22 개정, 7/5 시행)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75조의6)에서 조기결제제도를 도입하여 증권의 결제시기를 15시로 앞당김에 따라,
  - 종래 '결제일 16시'이던 시점을 '결제일 15시'로 변경하여 15시부터 납부 완료된 종목을 결제회원에 대해 인도하도록 하고,
  - 결제교착 해소를 위한 미완납종목의 수령회원에 대한 인도 개시시점도 종래의 '16시 30분'에서 '15시 30분'으로 앞당김

### □ 결제촉진담보금 제도 신설

(101조의7 2항 3호·3항·5항~8항 : 2010/4/22 개정, 7/5 시행)

- 결제회원이 납부한 결제대금 및 결제증권 이외에 현금이나 증권 등을 담보금으로 거래소에 추가로 납부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증권수령가능한도에 가산함
  - 보통거래간의 차감과 관련된 결제를 원활하게 하고 결제회원의 증권수령을 촉진하기 위함
- 결제촉진담보금은 현금,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음

- 현금은 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예탁하되 예탁된 현금은 거래소의 고유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며, 예탁된 현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결제촉진담보금에 산입함
-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은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말소하는 방법으로 예탁 또는 인출함

— 결제촉진담보금의 예탁 및 인출 시기

- 결제일 직전 매매거래일 12시까지 예탁하고, 인출하고자 하는 날의 직전 매매거래일 12시까지 인출을 신청해야 함

— 거래소는 결제일 직전 매매거래일까지 결제촉진담보금의 금액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함

□ 예탁결제원의 결제이행 등 결과의 통지 시기 정비

(101조의6 : 2010/4/22 개정, 7/5 시행)

— 예탁결제원의 거래소에 대한 결제이행·불이행결과의 통지시기를 종래 '결제시한 30분전부터'에서 '결제일 9시'로 앞당김

□ 유동성공급 및 결제지연손해금 부과 기준시점

(101조의4, 101조의5, 101조의10 : 2010/4/22 개정, 7/5 시행)

— 유동성공급 및 결제지연손해금 부과 기준시점을 보통거래간 차감의 경우 16시, 익일결제거래간 차감의 경우 17시 30분으로 규정함

□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의무매수호가수량 확대

(74조 1항 : 2010/5/7 개정, 7/1 시행)

— 당월발행 소액채권 중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종류별매수호가를 종래 호가의 2배로 확대함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12억원 → 24억원
- 지역개발채권 : 2억원 → 4억원

- 전월발행 채권의 최초 매매거래일에는, '전월발행 채권의 매수호가 (74조 1항 2호)'가 아닌 '당월발행 채권의 매수호가(74조 1항 1호)'를 적용하도록 함

□ 소액채권 매도대행 상품매도호가의 조정

(76조 5항 : 2010/5/7 개정, 7/1 시행)

- 매도대행물량을 매수한 회원이 매수수량 전량을 '익일 장개시 전'에 매도호가하는 경우에는, 신고시장가격에 경과일수당 1원을 더하여 호가를 제출하도록 함

□ 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

(별표2의2 : 2010/5/7 개정, 7/1 시행)

- 소액채권 거래실적은 장개시 동시호가 및 장중의 자기매매거래는 각각 순매매량(순매도 또는 순매수)을 기준으로 평가함
- 소액채권전담회원 신규지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배점과 관련하여, '국채전문유통시장의 거래량'과 '채무증권보유 규모'의 배점을 20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고 '소매채권전문딜러' 항목(10점)을 신설함

□ 장중경쟁대량매매 및 경쟁대량매매 관련 규정 개정

(11조 1항, 13조 1항, 14조, 17조 1항, 25조 3항 : 2010/7/29 개정, 11/29 시행)

- 장중경쟁대량매매 호가 접수시간을 장개시시부터 장종료 30분전까지로 정함
- 정규시장의 경우 장중경쟁대량매매와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간, 시간외시장의 경우 시간외종가매매와 시간외경쟁대량매매 호가간 상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 경쟁대량매매 시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등 입력을 금지

- 경쟁대량매매호가의 수량 일부 취소는 취소 후 호가 잔량이 경쟁대량매매의 호가수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
- 경쟁대량매매를 통한 공매도의 경우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을 제한하는 규정 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 경쟁대량매매의 경우 회원이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음
  - 즉 경쟁대량매매를 통한 공매도 시에는 업틱룰(up-tick rule)의 적용되지 아니함

□ 주식워런트증권의 호가가격단위 (32조 : 2010/7/29 개정, 11/29 시행)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와 더불어 주식워런트증권(ELW)의 호가가격단위를 5원으로 정하고, ETF와 ELW를 제외한 1주 가격이 1000원 미만의 종목에 대하여 1원을 호가가격단위로 신설
- 1주 가격이 1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인 종목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호가가격단위를 5원으로 설정
  - 1주는 1증권, 1증서 또는 1좌를 포함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 volume weighted average price) 산출 방법 및 호가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등을 정함

(48조의2, 51조의3 : 2010/7/29 개정, 11/29 시행)

- 장중경쟁대량매매에 적용할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은 해당 거래 성립 후부터 장종료시까지, 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 적용할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은 장개시시부터 장종료시까지 정규시장에서 성립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대금을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
  - 산출한 금액 중 원 미만은 절사하되,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 증가보다 낮은 경우 원 미만의 금액을 절상
  -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 없는 경우 당일의 종가, 당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 기준가격(평가가격을 포함)을 적용

- 호가수량요건으로 호가수량에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매매수량단위는 100주로 하고,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은 경쟁대량매매종목에서 제외함

□ 경쟁대량매매의 가격 관련 규정 개정

(108조, 109조 6항, 136조 1항 : 2010/7/29 개정, 11/29 시행)

- 수탁자는 경쟁대량매매 주문이라는 사실, 이에 부여된 IOC, FOK 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가격은 수탁 항목에서 제외
  - IOC 조건이란 해당 주문과 관련된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
  - FOK 조건이란 해당 주문과 관련된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의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수량의 전부를 취소하는 조건
- 경쟁대량매매 성립 시 회원은 위탁자에게, 거래소는 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체결수량과는 달리 체결가격의 경우 장 종료 후 각각에게 통지하여야 함

□ 거래소의 호가 공표 및 업무처리

(126조 1항, 127조 : 2010/7/29 개정, 11/29 시행)

- 거래소는 장중경쟁대량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는 호가잔량이 있는 방향을 공표하고, 거래시간 종료 후 투자참고사항으로 경쟁대량매매 종목명 및 거래량을 공표

□ 거래소의 업무처리 (123조 4항 : 2010/10/21 개정, 11/29 시행)

- 회원은 접수한 주문을 한국거래소에 호가로 제출함에 있어 위탁자의 주문 사이 및 위탁자의 주문과 회원의 호가 사이에 형평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문서에 의한 방법, 전화등방법(전화·전보·모사전송·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혹은 전자통신방법(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에 따라 주문을 접수 받음
- 회원은 형평성 판단에 있어 주문입력매체의 특징과 주문건수 등을 감안하여야 함

□ 주권(DR 포함) 대응증권의 사정비율 개선

(115조, 115조의2 : 2010/11/9 개정, 11/29 시행)

- 주권 등의 사정비율은 현행 70%(코스피50 구성종목은 80%)에서 기업가치 및 유동성을 기준으로 세분화
  - 일평균거래대금이 상위 50% 이내이면서 코스피200 구성종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정비율을 80%로 상향조정함
  - 일평균거래대금이 하위 5% 이내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는 사정비율을 60%로 하향조정함
  - 그 밖의 종목은 사정비율 70%를 유지함
- 주권 등의 일평균거래대금은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1년간 해당 종목의 정규시장 총거래대금(장중경쟁대량매매, 장중대량매매 및 장중바스켓매매 제외)을 거래일수로 나누어 산출
- 사정비율은 매분기말 산출하여 다음 분기 동안 적용

□ ETF 대응증권의 사정비율 개선 (115조 : 2010/11/9 개정, 11/29 시행)

- ETF의 사정비율은 현행 70%에서 연동하는 주가지수 및 채권지수의 유형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을 신설함
  - 주가지수 ETF는 코스피200, 코스피50, KRX100에 각각 1:1로 연동하는 경우는 사정비율을 80%로 함

- 채권지수 ETF는 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CD로 구성된 지수에 연동하는 경우 95%, 일반사채권·CP(주식관련사채권 및 주가연계증권 제외)로 구성된 지수에 연동하는 경우 85%, 주식관련사채권 및 주가연계증권이 포함된 지수에 연동하는 경우 80%로 각각 조정함
- 그 밖의 ETF는 사정비율 70%를 유지함

— 사정비율은 매분기말 산출하여 다음 분기 동안 적용

□ 분기 중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종목 등의 사정비율 적용 신설

(115조의3 : 2010/11/9 개정, 11/29 시행)

— 분기 중 주권 등의 대용증권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분기의 잔여 기간 동안 사정비율 적용함

- 새로이 지정된 주권 등이 “일평균거래대금이 상위 50% 이내이면서 코스피200 구성종목에 해당하는 종목” 중 일평균거래대금이 가장 적은 종목보다 많은 경우는 사정비율을 80%로 함
- 또한 지정된 주권 등이 “일평균거래대금이 하위 5% 이내에 해당하는 종목” 중 일평균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보다 적은 경우는 사정비율을 60%로 함
- 그 밖의 종목은 사정비율 70%로 함

— 분기 중 코스피200 구성종목으로 편입 또는 제외되는 경우의 사정비율은 분기 중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주권 등의 사정비율을 준용

□ 신규상장종목 및 재상장종목 등의 사정비율 특례 신설

(115조의4 : 2010/11/9 개정, 11/29 시행)

— 주권 신규상장종목 및 재상장종목 등의 경우 최초 매매거래 개시일이 속한 분기와 그 다음 분기동안의 사정비율을 70%로 적용함

□ 소액채권전담회원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액채권의 장 종료시 매매거래에서 개인외의 위탁매수를 제한

(62조 2항, 75조 1항, 부칙 2조 : 2010/11/17 개정, 12/1 시행)

— 소액채권전담회원 수를 현재의 20개사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도에 24개사로 함

- 또한 2011년도 소액채권전담회원 수는 22개사 이내로 함

— 소액채권의 장종료시 매매거래에서 개인외의 위탁매수를 제한함

- 현행 장종료 2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의 매수는 접수된 신고시장 가격 이상의 위탁매수호가를 모두 포함 하였으나 법인의 참여를 배제하여 소액채권전담회원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장 개시전 시장외대량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의 호가접수시간을 기존 8시 30분에서 9시로 연장

(11조 1항 가목 : 2010/12/6 개정, 12/13 시행)

— 하지만 장 개시전 시간외종가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의 호가 접수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로 함

□ 주식워런트증권의 호가 제출의무 기간을 확대

(31조의8 3호 : 2010/12/6 개정, 12/13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에 있어 권리행사기간 만료일 전 최종 5거래일동안 유동성공급호가제출을 제한하여 개별종목 ELW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기간을 확대

- 기존 개별종목 ELW의 경우 권리행사기간 최종만료일 1월 전 이후 유동성공급호가제출이 제한되었음

□ 풍문 등 관련하여 매매거래정지 조문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이관함에 따라 업무규정상의 해당내용을 삭제

(40조 : 2010/12/6 개정, 12/13 시행)

- 환매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함  
(76조 1항 7호, 87조 2호, 88조 1항~2항, 90조 5항, 96조의2 : 2010/12/6 개정, 12/13 시행)
  - 환매채 신고매매의 당사자를 국고채전문딜러에서 일반딜러로 확대함
  - 환매채 대상채권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신용평가등급 AAA이상인 종목에서 AA이상(AA-을 포함)으로 확대함
  - 환매채거래의 거래기간 종류에 2일, 4일을 추가하고 환매일에 3일째, 5일째를 추가함
    - 환매채거래 거래기간이란 매매대금을 결제한 날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을 의미
  - 「국고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환매채거래에 있어 금액산정단위를 10원으로 하고, 환매채거래의 조기종료절차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
  
- 소매채권전문딜러 정규시장에서 채권종류별로 제출하여야 하는 조성호가 대상채권 가운데 특수채증권 범주에 지방공기업채권을 포함 시킴 (99조의3 1항, 116조 3항 : 2010/12/30 개정, 2011/1/3 시행)
  - 2010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는 지방공기업채권이 일반회사채라는 유권해석을 내림
    - 구 「증권거래법」에서 특수채로 인정받았던 지방공기업채권은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채로 인정받을 근거가 사라졌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특수채로 인정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되었기 때문임
  - 지방공기업채권은 2009년 2월 4일 이전까지 발행된 것은 특수채로 이후 발행된 것은 회사채로 분류되나 소매채권전문딜러의 종류별 조성호가 대상 채권에서는 모두 특수채와 동일한 호가방법을 유지하도록 규정

- 일반회사채로 지위가 변경되는 지방공기업채권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대용가격 사정비율을 95%로 유지하도록 규정
  - 대용증권 사정비율 85% 대상채권에 지방공기업채권을 제외

###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 IFRS 조기도입 기업에 관한 상장규정 적용 기준 명확화

(3조 1항 : 2010/4/21 개정, 4/26 시행)

- 국제회계기준(IFRS)을 조기 도입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진입 및 퇴출 등 상장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현행 K-GAAP(한국식 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과 마찬가지로 개별 실체 중심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따라서,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IFRS 별도재무제표상 재무내용을 기준으로 진입 및 퇴출 등을 심사함

#### □ IFRS 조기도입 기업에 관한 퇴출심사기준

(75조 1항 4호·4항 2호 : 2010/4/21 개정, 4/26 시행)

- 국제회계기준(IFRS)을 조기 도입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IFRS 별도재무제표상 재무내용을 기준으로 진입 및 퇴출 등을 심사하지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조 1항),
- 관리종목지정 및 해제에 관한 퇴출심사시에는 자본잠식 산정에 있어 지분법 손익이 반영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도록 함
  - IFRS 별도재무제표에는 자회사 실적이 반영되지 않음 점을 고려한 것으로, 자본잠식 산정시 자기자본액 중 외부주주지분(비지배지분)은 제외함

#### □ 지주회사 신규상장심사 또는 관리종목지정 관련 매출액 적용기준

(33조 2항, 75조 1항 9호 : 2010/4/21 개정, 4/26 시행)

- 지주회사 주권의 신규상장심사시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액 산정 방식을 적용하도록 함
    - 다만, 지주회사의 설립일 또는 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 매출액은 각 사업연도의 자회사 매출액에 설립 또는 전환 당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함
  - 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함
-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보호예수의무 부과  
(10조 3호, 11조 3호, 12조 1항 3호, 46조 7항 : 2010/4/21 개정, 4/26 시행)
-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종합금융사, 보험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등에 대하여 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함
- 이전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의무 면제 (10조 5호 단서 : 2010/4/21 개정, 4/26 시행)
- 최대주주 소유주식등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코스닥상장 법인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경우, 이전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일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보호예수의무를 면제함
- 신주상장 및 변경상장 신청기한 변경  
(51조 : 2010/4/21 개정, 4/26 시행)
- 신주·변경상장의 경우, “신주권 효력 발생 후 또는 변경의 효력 발생 후 지체없이” 상장신청서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신청기간을 변경함

□ 국내법인에 대한 상장 사전협의제도 도입

(9조 3항 : 2010/4/21 개정, 4/26 시행)

- 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청구 전에 거래소와 상장절차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종래에 외국법인의 신규상장의 경우에만 인정되던 사전협의제도를 국내법인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하고,
  - 신규상장 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후 재상장 및 물적분할 재상장의 경우도 적용함

□ 우회상장 정의 규정을 신설

(2조 4항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양수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간 자산양수, 현물출자 및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고 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 우회상장이라고 정의
- 이는 거래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우회상장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우회상장으로 보고 이에 대한 실질적 규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증권의 상장신청에 대한 거래소의 접수 거부 요건

(4조 2항, 부칙 1조 : 2010/12/1 개정, 12/6 시행)

- 증권의 상장신청서 등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증권의 상장신청서 등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 증권의 상장신청이 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우회상장신청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상장주선인을 선임  
(7조 3항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일반적으로 상장신청시 상장주선인을 선임하는 것은 임의적임
  
- 우회상장신청인의 상장예비심사청구 관련 규정을 신설  
(9조 3항~5항, 10조의4, 15조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상장법인은 우회상장에  
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합병 결의 등의 또는 결정하는 경우 상장법  
인은 거래소에 지체없이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우회상장신청인은 우회상장 해당여부, 우회상장 절차, 상장예  
비심사청구서 작성 및 상장예비심사청구시기 등과 관련하여 반드시  
거래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상장예비심사청구 이전 신규상장신청인과 거래소와 사전협의는 임의  
사항임
  - 우회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시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
    -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당해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
    - 비상장법인에 종속회사가 있고 최근 3사업연도중 K-IFRS를 적용한 경  
우,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및 당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인의 감사보고서
    -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반기재무제표와 연결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인의 검토보고서
    -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계속보유확약서
    -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보호예수증명서
    - 인출 또는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보호  
예수계약서 및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당해 주식등의 보호예수증명서
    -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 우회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절차를 정비
  - 거래소는 심사접수시부터 2개월 이내에 상장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상장법인과 금융위원회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 상장부적격인 경우 상장법인의 주권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등 진행
  -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심사결과를 확정

□ 신규상장심사요건 중 3년의 영업활동기간 범위를 확대

(32조 1항 1호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상법상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도 종전 회사의 실질적인 영업활동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개정

□ 우회상장 심사요건 (32조의4 1항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하여야 함
-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당기 순이익이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이익액이 최근 사업연도 25억원 이상,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 50억원 이상(이익액 요건)
  - 최근 사업연도의 이익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 최근 3사업연도 각 이익액의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10 이상(자기자본이익율 요건)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이익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 영업현금흐름이 양(+)(대형법인이익 요건)
- 감사인의 감사의견
- 당해 합병등의 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되었을 것
-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1년 전의 날 현재 최대주주가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 이내에 변경이 없을 것

- 합병, 주식교환의 경우에만 적용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영업양수의 경우에만 적용

□ 우회상장심사에 있어 질적심사 도입

(35조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우회상장심사에 있어 거래소는 형식적인 요건 뿐 만 아니라 법인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다음 내용의 질적심사를 수행하여야 함
  - 영업, 재무상황 및 경영환경 등에 비추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비추어 경영투명성이 인정될 것
  - 법적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
  - 기타 투자자보호 및 유가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 공공적 법인등에 대하여 거래소가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상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병상장 심사요건, 우회상장 심사요건 및 질적심사요건의 적용을 배제

(32조의3 2항, 32조의4 3항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해당 심사요건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인은 공공적법인,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임

□ 투자회사증권,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요건을 정비  
(37조 1항 3호, 38조 2호, 3호 가목, 39조 3호, 부칙 9조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투자회사증권,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주권의 주식 분산요건을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이상으로 개정
  - 부동산투자회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0이상으로 완화
- 투자회사주권과 선박투자회사의 주주 분산요건으로 기존 30명에서 50명으로 상향조정
-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요건을 기존 100억원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자본금 50억(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70억원)이상으로 하향조정

□ 주식워런트증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중 기초자산 요건을 강화

(41조의2 1항 2호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주식워런트 발행대상 기초자산을 KOSPI200지수 종목 가운데 거래 대금 상위 100위 이내의 종목으로 세척이 정하는 종목 또는 당해 복수종목의 바스켓으로 제한

□ 주권의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실질심사기준으로 정비

(80조, 80조의3, 80조의4, 81조, 90조 2항, 95조, 부칙 1조 : 2010/12/1 개정, 2011/4/1 시행)

- 거래소는 다음의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상장폐지를 결정
  - 회생절차개시
  - 공시의무 위반
  -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 가운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
  - 주된 영업이 정지되는 등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기존 상장폐지기준으로 영업활동정지를 삭제하고 이를 종합적인 심사요건 즉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된 영업이 정지되는 경우로 변경

- 공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실질심사기준을 규정
  - 불성실공시 누계별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혹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 상장폐지 요건 중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요건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동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추가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개선기간이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된 영업이 중단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동산투자회사의 상장폐지기준으로 업무가 전부 정지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추가
  - 이는 선박투자회사의 상장폐지기준과 균형을 도모하기 위함
-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 채무증권에 대하여 거래소가 해당 사실을 예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 채무증권을 상장한 법인이 주권의 관리종목지정기준 또는 상장폐지기준 해당하는 경우 해당 채무증권에 대하여 매매거래 정지하도록 규정 신설
- 매매거래 정지기간(1일간)과 관련하여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정지적용을 배제

□ K-IFRS 도입에 따라 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정비  
(10조, 10조의3, 10조의4, 11조, 18조, 32조, 36조, 75조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주권(지주회사 주권) 상장예비심사 청구시 2012년부터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 K-IFRS를 적용하는 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 및 재상장신청인이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 신규상장심사요건 중 기업규모에 대하여 종속회사가 있는 신규상장신청인이 K-IFRS를 적용하여 최근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당해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를 자기자본으로 하고 비지배지분은 제외하도록 규정
  - 이는 종속회사 외부주주의 지분을 제외함으로써 개별 실체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기 위함
- 신규상장심사요건 중 경영성과인 매출액과 관련하여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수익액을 적용하도록 규정
  - K-IFRS의 경우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외의 이자, 배당, 로열티수익까지 수익으로 포함시켜 산정하기 때문
- 신규상장심사요건 및 재상장심사요건 중 경영성과인 이익과 관련하여 종속회사가 있는 신규상장신청인 및 재상장신청인이 K-IFRS를 적용한 사업연도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이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 영업이익 및 세전이익은 지배·비지배지분의 구분이 없어 이를 적용하기 어려움
  - 연결중심의 심사 실시가 예정된 2013년부터는 비지배지분을 제외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상 이익액을 적용
- 신규상장심사요건 중 감사인의 감사의견대상에 종속회사가 있는 신규상장신청인이 K-IFRS를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하도록 규정
- 관리종목지정기준인 감사의견 또는 반기검토의견으로 종속회사가 있는 상장법인이 최근사업연도에 K-IFRS를 적용한 경우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모두를 고려하도록 규정

##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외국법인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산정 기준  
(50조 2항 1호, 3항 2호, 5항 5호 가목· 6호· 6호의2, 별표2 1호(1)· 2호(1)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액면가액이 기재된 외국주권의 상장수수료 산정 기준 및 연부과금 부과 기준을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규정함
    - “자본금 기준”으로 상장수수료를 부과하며 신규상장심사수수료(500만원)을 부과함
    - 무액면 외국주권과 외국주식에탁증권은 종래의 부과기준인 “주식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함(별표2 1호(2)· 2호(2))
  
- 상장심사수수료와 상장수수료의 분리 부과  
(50조 2항 1호~4호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상장심사수수료와 상장수수료를 상계처리하지 않고 별도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부과 규정을 마련함
    - 주권의 신규상장, 재상장시 상장예비심사청구시에 상장심사수수료 부과
    - 주권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권의 재상장신청시 재상장심사수수료 부과
    - 국채증권 등의 일괄상장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시 또는 신주일괄상장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시 상장수수료를 부과
  
- 상장심사수수료의 반환 불가 사유  
(50조 8항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상장심사수수료는 상장심사가 개시된 후에는 반환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신규상장수수료 최저한도 상향조정

(별표2 1호(1)(나)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주권의 신규상장수수료 최저한도액을 “1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주권의 연부과금 부과방법 및 부과시기 구체화

(50조 3항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주권의 연부과금을 정기납부와 수시납부로 구분하여 납부하도록 함
  - 정기납부 : 전년도 연부과금을 매년 1월 중 납부
  - 수시납부 : 상장폐지시 당해연도 연부과금은 상장폐지 전에 납부

□ 주권의 연부과금 면제사유 정비

(50조 5항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부과일 현재 부도, 자본잠식, 회생절차기각 등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연부과금을 면제하도록 함
  - 부과일 현재 부도, 자본잠식, 회생절차기각 등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는 법인 등 : 회생절차 진행법인, 정기납부후 단기간내(3월 이내) 상장폐지법인 등
- 연부과금 면제혜택의 취소
  - 증권의 자진상장폐지를 신청한 법인, 존립기간 만료로 인한 상장폐지 법인에 대해서는 연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함

□ 신주·변경상장 신청시 첨부서류의 제출시기 일원화

(26조, 27조의2, 29조, 30조 : 2010/4/23 개정, 4/26 시행)

- 신주발행일정표, 법인등기부등본, 주권견양, 주금납입증명서 등 신주·변경상장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제출시기를 ‘상장신청서 제출시점’으로 일원화함

□ 지주회사 관리종목지정·해제시기 명확화

(42조 : 2010/4/23 개정, 4/26 시행)

- 감사의견, 매출액 및 자본잠식 관련 지주회사 관리종목지정·지정해제시기를 '사업보고서 또는 연결재무제표 제출일 익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
  - 종래에는 지주회사의 관리종목지정·해제시기를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로만 규정하고 있어 사업보고서 제출후 3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 제출이 가능한 자산 2조원 미만의 지주회사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제출시점에서의 시장조치 근거가 불명확하였음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등 외국주권의 상장신청서류 작성시 환율적용기준 명확화 (51조, 별지 1호 : 2010/4/23 개정, 4/26 시행)

- 외국법인 등이 작성하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등 서류 기재내용 중 '금액관련 사항'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 적용되는 환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 재무상태표 또는 연결재무상태표상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 : 당해 재무제표 작성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말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준환율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 : 당해 재무제표 작성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중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매일의 기준환율을 산술평균한 환율

□ 우회상장에 있어 상장법인의 경영권 변동 기준을 마련

(2조의2 : 2010/12/30 개정, 2011/1/1 시행)

-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등 기준으로 우회상장 대상법인의 최대주주등 또는 5%이상 주주(출자자를 포함)가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주식수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수 이상인 경우를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로 규정

- 경영권 변동 여부는 다음의 주식을 포함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
  - 합병등거래에 따라 교부받을 주식
  - 주요사항보고서 등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아니한 주식관련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가될 주식(주요사항보고서 등 제출일 현재의 전환가액을 기준)
  - 주요사항보고서 등 제출일 현재 법률의 규정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인도청구권을 갖는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권(권리행사에 따라 증가할 주식을 기준)
- 단 주요사항보고서 등 제출일로부터 1년 이전에 우회상장 대상법인의 최대주주등 또는 5%이상 주주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경영권이 변동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우회상장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를 기업결합 유형별로 규정

(2조의3 1항, 2조의3 3항 : 2010/12/30 개정, 2011/1/1 시행)

- 상장법인을 존속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자산액 또는 매출액이 우회상장 대상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 상장법인이 우회상장 대상법인의 최대주주등 또는 5%이상 주주로부터 당해 우회상장 대상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고, 당해 취득의 결과 상장법인이 우회상장 대상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현물출자 가액이 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당해 현물출자의 결과 상장법인이 우회상장 대상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그 밖에 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상장규정에서 위임한 합병 등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다음과 같이 명시
  - 주권비상장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우회상장에 해당된다고 거래소가 판단하는 거래

□ 외국법인등의 감사인 자격기준의 범위를 확장

(2조의6 1항 : 2010/12/30 개정, 2011/1/1 시행)

- 손해배상책임보험(외감법시행령 17조의2 1항, 30억원 이상)에 가입한 경우 손해배상기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아 감사인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 상장법인이 지체없이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우회상장의 거래유형을 구체화함

(4조 2항 : 2010/12/30 개정, 2011/1/1 시행)

-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양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결의 또는 결정을 한 경우
- 상장법인이 자산양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결의 또는 결정을 한 경우
- 상장법인이 영업 또는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월 이내에 제3자배정 신주 또는 주식관련사채권 발행을 위한 결의·결정을 하거나 최대주주 변경을 신고한 경우
-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또는 5%이상 주주에 대하여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에 대한 납입이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당해 신주발행에 대한 결의·결정을 한 경우
- 그 밖에 거래소가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을 결의하는 등 제출 첨부서류 명시  
(4조 3항 : 2010/12/30 개정, 2011/1/1 시행)

-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5%이상 주주의 당해 상장법인 발행주식 소유현황 명세서
- 비상장법인의 주주명부 요약표
- 상장법인 최대주주등의 주식소유현황 명세서
- 그 밖에 경영권 변동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거래소는 우회상장임을 확인한 경우 상장법인에게 지체없이 통보 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상장법인은 지체없이 우회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관련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  
(4조 4항~5항 : 2010/12/30 개정, 2011/1/1 시행)

□ 보호예수주식등의 인출사유를 신설  
(4조의2 1항 : 2010/12/30 개정, 2011/1/1 시행)

- 합병,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액면분할·병합 등에 따라 신주권을 교부받기 위한 경우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등의 권리행사를 위한 경우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등의 상환이 있는 경우 등

□ 우회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서류를 명시  
(4조의3 3항 : 2010/12/30 개정, 2011/1/1 시행)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최근 사업년도 말 현재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 합병가액, 영업양수가액, 자산양수가액, 포괄적 주식교환 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의견서

- 현물출자에 대한 감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
    -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 부도발생사실 등에 대한 주권비상장법인의 주거래은행 확인서
  - 회계감사인이 확인한 거래가 완료된 직후의 추정 재무상태표 등
  - 경영권 변동시점까지 취득할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당해 취득시점에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류 및 해당 보호예수대상 주식등에 대하여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보호예수증명서
    - 위 보호예수 약속서류와 보호예수증명서는 영업 또는 자산양수의 주요 사항보고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경영권변경이 예정된 경우에 한함
  -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예정인 사업부문에 대한 최근 3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당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확인서
  -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우회상장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등에 대한 보호예수 기산일을 신설 (4조의4 : 2010/12/30 개정, 2011/1/1 시행)
- 합병 또는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권의 상장일
  - 영업 또는 자산양수 종료일
    - 다만, 예비심사종료일이 영업 또는 자산양수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예비심사종료일 익일
  - 영업 또는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월 이내에 제3자배정방식의 신주 또는 주식관련사채권을 발행하여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 제3자배정방식의 신주상장일 또는 주식관련사채권 발행일
    - 다만, 예비심사종료일이 당해 신주 상장일 또는 주식관련사채권 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예비심사종료일 익일
  - 영업 또는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월 이내에 최대주주변경 신고가 있는 경우 최대주주 변경 신고일 혹은 예비심사 종료일 익일

-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상장일
  - 다만, 예비심사종료일이 당해 신주상장일 이후인 경우에는 예비심사종료일 익일
- 기타 우회상장에 준하는 거래의 경우 성격·절차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

□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신규상장예비심사 기간을 규정  
(5조의2 : 2010/12/30 개정, 2011/1/1 시행)

- 거래소는 적격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에 대하여 신규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신규상장신청인 또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주식워런트증권 발행대상인 기초자산 종목을 명시하고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의 신고사항을 추가  
(24조의3 1항, 35조의2 1항 12호 : 2010/12/30 개정, 2011/1/1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 발행대상인 기초자산 종목이란 일평균거래대금 100억원 이상으로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 분기별로 공표하는 종목을 의미
-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은 유동성공급회원이 장중 변동성을 직전 대비 10%포인트 이상 변경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함

□ 상장폐지기준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실질심사 적용기준을 신설  
(46조의5, 부칙 1조 : 2010/12/30 개정, 2011/4/11 시행)

- 유상증자, 분할 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행위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매출액 미달(50억원)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통해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였을 때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 당해 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 횡령·배임사실에 대한 공시가 있거나 검찰 기소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전직 임원의 횡령·배임을 포함)
  - 「외감법」 제13조 제3항의 중대한 위반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정정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등을 통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위반내용을 반영할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당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검찰 고발·통보(전·현직 임원에 대한 경우를 포함)의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주된 영업의 정지되어 잔여사업 부문만으로는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 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 주된 영업과 관련한 면허가 취소 또는 반납되는 경우
    - 주된 영업이 양도되거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
    - 그 밖에 주된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46조의6, 부칙 1조 : 2010/12/30 개정, 2011/4/11 시행)
-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 실질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공시의무 위반(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제12호)의 경우 당해 불성실공시에 따른 투자자의 신뢰도 저하로 인하여 상장법인으로서 적격 한 투자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당해 불성실공시 내용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기타 당해 불성실공시로 인하여 증권시장 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한지 여부
- 상장 또는 상장폐지 관련 서류의 허위 기재 등(규정 제80조제12호의2)의 경우 허위 기재 등 내용이 상장·상장폐지 결정 및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허위 기재 등과 관련한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 종합적 심사(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제19호)의 경우 매출 및 손익구조 등에 비추어 정상적 영업활동이 가능한 지 여부, 차입금 규모, 우발채무, 횡령 등으로 인한 재무상태 악화 여부, 횡령 및 최대주주의 빈번한 교체 등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훼손 정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공시위반 정도, 기타 증권시장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한지 여부

#### □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에 관하여 규정을 정비

(50조 : 2010/12/30 개정, 2011/1/1 시행)

- 우회상장심사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
- 한국IR서비스가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IR 모범기업으로 선정된 상장법인 중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법인에 대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의 면제근거를 마련
  - 이는 선정 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권에 대한 신주상장수수료, 변경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에 제한
  - 본 개정규정은 2010년 IR 모범기업으로 선정된 상장법인의 2010년에 대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부터 적용(부칙 2조)

## 5.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 상장 건설사의 담보·채무보증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7조 1항 2호 다목(3) : (2010/4/23 개정, 4/26 시행)

- 상장건설사가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 대해 자기자본의 5% 이상(대규모법인의 경우는 2.5%이상)의 담보 또는 채무보증을 제공한 경우, 일반 주권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 공시하도록 함

### □ 상장자회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공시의무 경감

(8조 3항 : 2010/4/23 개정, 4/26 시행)

-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자회사가 영업 및 생산 활동, 재무구조에 변경,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일정한 사항 등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한 때에는 당해 상장자회사의 지주회사도 공시할 한 것으로 간주함
  - 단, 지주회사가 세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해 중복 공시의무를 면제함

### □ IFRS 조기도입 기업 등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적용 기준 정비

(7조 1항 2호 마목(1) : 2010/4/23 개정, 4/26 시행)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서(2010/4/21 개정) i) IFRS 조기도입기업의 경우 자본잠식 관련 퇴출 심사시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하고(동 규정 75조 1항 4호·4항 2호) ii) 지주회사의 매출액 기준(50억원 미만) 관리종목지정 등 퇴출 심사 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동 규정 75조 1항 9호) 규정함에 따라,
- 이러한 상장규정 개정에 맞추어 IFRS 조기도입기업 및 지주회사에 대한 공시의무사항을 변경함

- 지주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연결재무제표상의 감사의견에 대한 부적정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공시하도록 함
- IFRS 조기도입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상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 및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때는 이를 공시하도록 함

□ 채권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에 대한 적용 면제

(58조 2항 : 2010/4/23 개정, 4/26 시행)

- 채권상장법인이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반복 또는 변경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에 해당하지만,
-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이러한 공시의 해태 등 위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불성실공시의 적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공시담당자

(88조 2항 : 2010/4/23 개정, 4/26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는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그 밖에 별도로 영위하는 사업이 없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2인 이상의 공시업무 등 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있는 일반 상장법인과 달리 공시담당자를 1인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별점부과 등을 위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대상기간 확대

(34조 2항 : 2010/6/23 개정, 7/1 시행)

- 종래 '불성실공시 지정예고일부터 12일 이내(이의신청기간종료 후 5일 이내)'로 하고 있던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대상기간을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로 연장함

□ 불성실공시 개선계획서 제출시기 조정

(39조 1항 : 2010/6/23 개정, 7/1 시행)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 중 추가적으로 부과받은 벌점누계가 종래 '10점 이상' 이던 것을 '15점 이상'인 경우에 불성실공시 개선계획서 제출하도록 변경함
  - 이미 제출된 개선계획서가 공표되고 있는 경우(1개월)에는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담당자 제도 신설

(26조 1항, 3항~4항 : 2010/6/23 개정, 7/1 시행)

- 상장외국법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 공시책임자(1인), 공시대리인(1인) 이외에 외국법인 본사에 공시담당자(1인 이상)를 별도로 두도록 함
  - 국내 상장법인은 공시책임자 1인, 공시담당자 2인(채권상장법인 및 기업수목적회사의 경우에는 1인)을 지정하고 있음

□ 상장 자회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공시의무 경감을 위해서 사전 신청서를 신설 (4조의3·별지 7호 : 2010/9/1 개정, 9/6 시행)

- 지주회사가 연계공시를 위한 사전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
  - 지주회사가 연계공시 신청서를 거래소에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상장 자회사가 신고한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지주회사도 별도의 공시제출 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신청서를 제출한 지주회사는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연계방식으로 공시가 이루어짐
-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주요경영사항 연계공시 신청서
  - 신청서에는 신청일자·사유, 주권상장법인인 자회사의 변동사항 등을 기재
  - 상장자회사가 연계공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자회사 주식의 지주회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함께 기재

□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신고 사항 추가

(7조 1항 2호 가목 (3)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자본시장법 165조의2)의 자사주 취득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신탁계약의 체결, 해지 외 연장도 공시신고사항을 추가

□ '시설외투자'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근거를 마련

(7조 1항 2호 나목 (1)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 2를 통하여 시설외투자를 구체화
- 이는 방송 및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방송인 및 스포츠 선수와의 전속계약은 사실상 기업의 주요 투자활동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시설외투자' 사항으로 공시의무를 부과하기 위함

□ 공시의무 대상으로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한 사항에 있어 퇴직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

(7조 1항 2호 라목 (3)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K-IFRS을 적용하는 기업의 퇴출과 관련하여 신고하여야 할 감사의견에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할 것을 규정

(7조 1항 2호 마목 (1) (가)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통하여 감사의견 부적정 등 적용 기준을 확대하여 별도의 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인 경우에도 상장폐지하도록 함

-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은 감사의견 부적정 등 확인 수단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시하도록 하는데 별도 재무제표 뿐 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도 동일하게 기재하도록 함
  
- 공시신고 사항과 관련하여 매출액 계산에 있어 K-IFRS를 적용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
  - (7조 1항 2호 마목 (1) (다)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기존 K-GAAP에서 매출액은 사업활동에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만을 의미하였으나 K-IFRS상 매출(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외 기타 수익으로 이자, 배당, 로열티수익을 포함하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개정을 통하여 K-IFRS상 매출(수익)에 기타 수익을 제외하여 매출액 50억원 미달에 대한 적용기준을 정비
  -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은 매출액 50억원 미달에 대한 확인수단으로 손익구조변동공시 및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의 경우 K-IFRS상 매출(수익)에 기타 수익을 제외한 수익액을 기준으로 기재할 것을 규정
  
- 품문 등 관련 종목의 매매거래정지 근거 규정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6조 (2010년 12월 1일 개정)에서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40조로 이관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9조 단서의 품문 등 관련 주식관련 사채권 및 무보증사채권 매매거래정지규정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57조의2 제3항으로 이관
  
- 채권상장법인에 대한 조회공시
  - (57조의2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거래소가 채권상장법인에게 주요경영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당 근거 마련
- 해당 채권상장법인은 공시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조회공시를 하여야 함

## 6.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위반제재금 별점대체부과제도 신설

(13조의3 : 2010/6/23 개정, 7/1 시행)

-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 내용이 경미하여 예고별점이 5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별점을 벌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부과금액은 '대체별점×100만원'으로 산정함
- 상장법인의 신청 및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침
  - 다만, 공시의무 위반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이거나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 등을 감안하여 대체부과가 위반의 억제효과가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점대체부과를 허용하지 않음

### □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별점유예제도 등 신설

(13조 4항, 14조 2항 : 2010/6/23 개정, 7/1 시행)

#### 공시우수법인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표창 및 포상을 받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하며, 임·직원이 표창 및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속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함

-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1회 1건을 기준으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별점부과를 6월 이후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단, 유예기간동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별점부과시에 유예받은 별점을 합산 부과
- 별점유예를 받은 공시우수법인에 대하여 ‘不’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표시를 면제함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별점부과 가중·경감기준의 구체화

(13조 4항 : 2010/6/23 개정, 7/1 시행)

- 가중사유
  - 은폐, 축소를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 공시의무 위반 내용이 공시의무 해당 기준의 3배 이상인 경우
  - 공시의무 위반 행위 등을 감안하여 해당법인의 내부통제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개선계획서의 재요구대상(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별점 포함)이 되는 경우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경사유
  - 위반사실을 거래소가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경우
  -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공시업무 또는 기업설명회와 관련하여 수상경력이 있는 법인
  - 공시의무사항이 특정 사안의 진행과정의 일부로서 순차적으로 발생하고 관련된 최초의 공시가 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
  - 최근 3년간 공시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
  - 최근 1년간 자율공시의 비율이 10%이상이고 5건이상인 경우
  - 최근 1년간 기업설명회 개최사실 신고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
  - 귀책사유가 크지 않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중요내용 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제도 보완

(16조 1항 : 2010/6/23 개정, 7/1 시행)

- 자본잠식 등 중요내용공시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이 최초로 확인되는 공시(손익구조변동공시 등)를 기준으로 매매거래정지를 조치를 하도록 함

- 자본금 50% 이상 잠식, 매출액 50억원 미만,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등

□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 주요경영사항으로 해당 사유 발생일 당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공시의무대상인 시설외투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4조의2 : 2010/12/3 개정, 2011/1/1 시행)

- 영화, 음반, 연예, 공연물 등의 제작, 게임, 프로그램 등의 제작, 교육, 지식, 정보, 출판물 등의 제작, 연예·스포츠 매니지먼트 계약 등을 통한 투자임을 명시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자율공시의 대상으로 녹색경영관련 정보를 추가 (8조 7호 : 2010/12/3 개정, 2011/1/1 시행)

- 자율공시란 주요경영사항 외에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해당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는 것(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28조)

- 자율공시대상으로 신설된 녹색경영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녹색기술,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의 확인 및 그에 대한 인증취소 또는 확인취소
- 관리업체(온실가스 배출업체 혹은 에너지소비업체)의 지정 또는 취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개선명령, 시정이나 보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 녹색기업의 지정 또는 취소
-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 또는 처분

□ 불성실공시의 적용 예외 대상 신설

(11조 1호 : 2010/12/3 개정, 2011/1/1 시행)

- 거래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공동관리를 개시·중단 또는 해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불성실공시의 적용 예외로 명시
- 이는 부도가 발생하거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등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로 인한 공시 번복이 경미하거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고 판단하여 불성실공시를 적용시키지 않도록 한 것임

□ 풍문 등 관련 매매거래정지의 대상 및 기간에 대한 근거 조항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2010년 12월 6일 개정)에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6조로 이관

(2010/12/3 개정, 2011/1/1 시행)

- 풍문 등 관련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해당 정지사유에 대한 조 회결과를 공시되면 당해 공시시점부터 30분 경과 후 거래가 재개 되도록 규정
- 다만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간 이전인 경우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한 후,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됨

## 7.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결제시한 전 조기결제제도의 도입

(31조의2, 31조의6 : 2010/4/21 개정, 7/5 시행)

- 결제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회원 및 위탁자의 결제편의 및 자산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래소의 수령회원에 대한 결제(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개시시점을 종래 '결제시한(16시) 이후'에서 '결제시한 이전'으로 변경함

□ 미수위탁자의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기준 정비

(42조 : 2010/4/21 개정, 7/5 시행)

- 외국인의 매수대금 결제지연에 대해 적용했던 미수위탁자의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기준(국가간 시차, 결제지시서 오류 등)을 폐지하고,
- 종래에 각각 다르게 정했던 '매수대금' 결제지연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사유와 '매도증권' 결제지연에 대한 위탁증거금 예외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함
  - 천재지변, 긴급사태, 전산장애, 회원의 업무착오 기타 미수위탁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탁증거금 징수의 예외 인정함
  - 다만, 위탁자의 미납 매수대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위탁증거금 징수의 예외 인정 가능

□ 경쟁대량매매호가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

(2조 6항 6호 : 2010/7/21 개정, 11/29 시행)

- 경쟁대량매매호가란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거래량가중평균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를 의미

□ 장중경쟁대량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 관련규정 정비

(19조의3, 21조의2, 39조 3항 단서 : 2010/7/21 개정, 11/29 시행)

-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에 한하여 장중경쟁대량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

- 장중경쟁대량매매시간은 9시부터 14시30분(4조 3항), 시간외경쟁대량매매시간은 7시30분부터 8시30분으로(21조의2)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매매거래가 체결
  -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9시부터 15시까지이며, 장 종료후 시간외시장은 시간외경쟁대량매매가 적용되지 아니함
- 장중·시간외경쟁대량매매 가격은 해당 장중거래 성립 후부터 장 종료시·장 개시시부터 장 종료시까지 정규시장에서 성립된 해당 거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며,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 없는 경우 당일의 종가, 당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 세칙에서 정하는 가격임
-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의 산출방법은 세칙에서 정함
- 호가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 위임
- 회원은 경쟁대량매매의 체결가격을 장종료후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장 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의 매매거래시간을 오전 7시 30분에서 9시까지로 30분 연장 (4조 3항 : 2010/12/1 개정, 2011/5/30 시행)
- 단, 시간외종가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는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로 함

## 8.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괴리 요건
- (2조 8항 : 2010/1/14 개정, 1/18 시행)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2조 16항)에서는 보통주와 가격 괴리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선주의 경우에는 제출된 매수호가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우선주의 범위를 정함

- “우선주의 가격이 보통주의 가격보다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우선주의 매수호가 기세를 불인정

□ 외국기업 매매거래 관련 호가입력 제한 근거 마련

(8조 7항 : 2010/4/15 개정, 4/19 시행)

- 외국기업의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해당 호가의 입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거래소가 호가입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력 제한 내용을 지체없이 공표해야 함

□ 조기결제제도 도입에 따른 증권의 인도 시기 정비

(36조의8 : 2010/4/22 개정, 7/5 시행)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75조의6)에서 조기결제제도를 도입하여 증권의 결제시기를 15시로 앞당김에 따라,
  - ‘결제일 15시’로부터 납부가 완료된 종목을 결제회원에 대해 인도하도록 하고,
  - 결제교착 해소를 위한 미완납종목의 수령회원에 대한 인도 개시시점도 종래의 ‘16시 30분’에서 ‘15시 30분’으로 앞당김

□ 결제촉진담보금 제도 신설 (36조의8 : 2010/4/22 개정, 7/5 시행)

- 결제회원이 납부한 결제대금 및 결제증권 이외에 현금이나 증권 등을 담보금으로 거래소에 추가로 납부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증권수령가능한도에 가산하도록 함
  - 보통거래간의 차감과 관련된 결제를 원활하게 하고 결제회원의 증권수령을 촉진하기 위함
- 결제촉진담보금은 현금,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음

- 현금은 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예탁하되 예탁된 현금은 거래소의 고유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며, 예탁된 현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결제촉진담보금에 산입함
-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은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말소하는 방법으로 예탁 또는 인출함

— 결제촉진담보금의 예탁 및 인출 시기

- 결제일 직전 매매거래일 12시까지 예탁하고, 인출하고자 하는 날의 직전 매매거래일 12시까지 인출을 신청해야 함

— 거래소는 결제일 직전 매매거래일까지 결제촉진담보금의 금액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함

□ 예탁결제원의 결제이행 등 결과의 통지 시기 정비

(36조의7 : 2010/4/22 개정, 7/5 시행)

- 예탁결제원의 거래소에 대한 결제이행·불이행결과의 통지 시기를 종래 '결제시한 30분전부터'에서 '결제일 9시'로 앞당김

□ 유동성공급 및 결제지연손해금 부과 기준시점

(101조의4, 101조의5, 101조의10 : 2010/4/22 개정, 7/5 시행)

- 유동성공급 및 결제지연손해금 부과 기준시점을 보통거래간 차감의 경우 16시, 익일결제거래간 차감의 경우 17시 30분으로 규정함

□ 호가 접수시간을 장중경쟁대량매매의 경우 장개시시부터 장종료 30분전까지, 시간외경쟁대량매매는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로 함

(6조 1항 1호 다목, 6조 1항 2호 가목 : 2010/7/29 개정, 11/29 시행)

□ 경쟁대량매매의 호가 관련 규정 개선

(7조1항~2항, 7조의3 1호, 8조 1항, 8조 3항, 9조의4 2항, 13조 : 2010/7/29 개정, 11/29 시행)

- 정규시장의 일반 개별경쟁매매에 준하여 호가의 내용 규제
-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및 상장지수펀드에 한하여 경쟁대량매매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경쟁대량매매를 위해 제출되는 호가로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등 입력이 금지
- 경쟁대량매매호가는 경쟁대량매매 이외의 매매거래에 제출하여서는 안 됨
  - 경쟁대량매매호가가 정규시장의 매매 거래시 제출하는 호가, 시간외종가·단일가·대량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및 관리 종목 또는 정리매매 종목을 경쟁대량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와 지정가호가 경쟁대량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 입력이 제한
- 경쟁대량매매를 통한 공매도의 경우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을 제한하는 업틱룰(up-tick rule)를 적용하지 아니함
- 경쟁대량매매호가의 효력은 정규시장·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별로 호가 접수시점부터 매매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인정됨

□ 호가가격단위로 신설 (18조 2항 : 2010/7/29 개정, 11/29 시행)

- 1주 가격이 1000원 미만의 종목에 대하여 1원, 1주 가격이 1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인 종목에 대해서는 5원으로 호가가격단위로 신설
  - 1주는 1증권 및 1증서를 포함

□ 거래량가중평균가격 산출 방법 및 호가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등  
(22조의3, 24조의2 : 2010/7/29 개정, 11/29 시행)

- 경쟁대량매매에 적용할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은 해당 거래 성립 후부터 정규시장(장중대량매매와 장중경쟁대량매매 제외)에서 형성된 매매거래의 총거래대금을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
  - 동가격이 증가보다 높은 경우 1원 미만 절사, 낮은 경우 1원 미만 절상하여 1원단위로 산출함

-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 없는 경우 당일의 종가, 당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 기준가격(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가격)을 이용
  - 호가수량요건으로 호가수량에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매매수량단위는 1주로 하고,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은 경쟁대량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함
- 거래소는 경쟁대량매매에서 형성된 가격의 경우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회원에게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  
(29조 3항 : 2010/7/29 개정, 11/29 시행)
- 회원은 이에 대한 통보를 받은 때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
- 주문 유형으로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을 거래량가중평균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쟁대량매매주문을 신설  
(37조의2 6호 : 2010/7/29 개정, 11/29 시행)
- 주문접수 기재대상, 주문위탁방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  
(42조 1항, 42조 2항 : 2010/10/19 개정, 11/29 시행)
- 주문접수시간 기재대상에 시스템을 포함하고, 주문위탁방법에 전자통신방법을 추가하여 조문을 정비
  - 회원은 접수한 주문을 한국거래소에 호가로 제출함에 있어 위탁자의 주문간 및 위탁자의 주문과 회원의 상품 운영을 위한 호가 간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 회원은 형평성 판단에 있어 주문입력매체의 특징과 주문건수 등을 감안하여야 함
- 주권(DR 포함) 대용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ETF 대용증권의 사정비율 개선 (47조 2항~4항, 47조의2 : 2010/11/9 개정, 11/29 시행)

- 주권 등의 사정비율을 현행 70%에서 기업가치 및 유동성을 고려하여 세분화
  - 일평균거래대금이 상위 20% 이내이면서 코스닥 프리미어지수에 해당 하는 종목인 경우 사정비율을 80%로 상향조정함
  - 일평균거래대금이 하위 5% 이내의 종목인 경우 사정비율을 60%로 하향조정함
  - 그 밖의 종목은 사정비율 70%를 유지함
- 코스닥시장의 ETF 대응증권의 사정비율 신설
  - 코스닥시장과 연동된 ETF의 사정비율은 70%를 적용함
- 일평균거래대금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해당종목의 정규시장의 총거래대금을 거래일수로 나누어 산출
- 사정비율은 매분기말에 산출하여 다음 분기동안 적용

□ 분기 중 대응증권으로 지정된 종목 등 및 신규상장종목 등의 사정비율 적용 신설 (47조의3, 47조의4 : 2010/11/9 개정, 11/29 시행)

- 분기 중 주권 등의 대응증권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분기의 잔여기간 동안 사정비율 적용함
  - 새로이 지정된 주권 등이 “일평균거래대금이 상위 20% 이내이면서 코스닥 프리미어지수 구성종목에 해당하는 종목” 중 일평균거래대금이 가장 적은 종목보다 많은 경우는 사정비율을 80%로 함
  - 또한 지정된 주권 등이 “일평균거래대금이 하위 5% 이내에 해당하는 종목” 중 일평균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보다 적은 경우는 사정비율을 60%로 함
  - 그 밖의 종목은 사정비율 70%로 함
- 분기 중 코스닥 프리미어지수 구성종목으로 편입 또는 제외되는 경우의 사정비율은 분기 중 대응증권으로 지정된 주권 등의 사정비율을 준용
- 신규상장종목 등의 사정비율 적용 특례 신설
  - 주권 신규상장종목 및 채상장종목은 최초 매매거래 개시일이 속한 분기와 그 다음 분기 동안 사정비율 70%를 적용

## 9.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IFRS 조기도입 기업에 관한 퇴출심사기준

(28조 1항 3호·4호, 38조 1항 4호의2·10호 : 2010/4/21 개정, 4/26 시행)

- 국제회계기준(IFRS)을 조기 도입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IFRS 별도재무제표상 재무내용을 기준으로 진입 및 퇴출 등을 심사하되(동 규정 3조 1항),
- 관리종목지정 및 해제 등 퇴출심사시에는 자본잠식 산정에 있어 자 회사의 손익이 반영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도록 함

□ 상장예비심사청구시 보호예수 의무자에 업무집행지시자 포함

(4조 2항 4호 : 2010/4/21 개정, 4/26 시행)

- 상장예비심사시 보호예수 의무자에 해당하는 최대주주등에 상장예정법인의 '업무집행지시자(상법 401조의2 1항)'가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신규상장 심사시 주식의 분산요건 판단기준

(6조 1항 3호, 7조의2 1항 1호 : 2010/4/21 개정, 4/26 시행)

-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예비심사시 주식분산 요건을 심사하는데 있어, 종래에는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및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함
  - 전환우선주의 과다발행으로 인한 주식분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

□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전 사전협의 허용

(4조 1항 : 2010/4/21 개정, 4/26 시행)

- 코스닥시장에 신규 또는 재상장을 하고자하는 법인이나 기업인수 목적회사(SPAC)에 대해 상장예비심사 청구 전 상장절차 등에 관해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우회상장의 정의 규정 (2조 7항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우회상장의 형식적 요건으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합병, 주식교환, 영업·자산양수, 현물출자 등의 기업결합과 실질적 요건으로 경영권의 변동이 있고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을 명시
- 심사대상인 비상장법인에 주권이 아닌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법인(외국기업도 포함)의 경우도 포함

□ K-IFRS 시행에 따라 감사보고서, 상장예비심사청구시와 신규상장시 심사요건,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요건 등 K-IFRS 적용과 관련하여 규정 정비

(3조, 4조, 6조 1항, 28조, 38조 1항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적용되는 감사보고서는 K-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한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를 의미
  - 이때 담당회계사를 포함한 해당 감사인이 당해기업의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보유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득하는 등 상장예정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는 제외됨
- 상장예비심사청구시 당해 사업연도 중 감사인 지정을 받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최근 분기 또는 반기재무제표 및 지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있어 K-IFRS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K-IFRS로 다시 작성하여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

- 신규상장 심사요건에 있어 별도재무제표 중심으로 해당 기준을 마련하되 자기자본,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ROE(자기자본이익률), 감사의견등 일부항목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함
    - 이는 K-IFRS 별도재무제표에 지분법 손익이 미반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 자기자본과 ROE(자기자본이익률)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은 제외하도록 하고, 매출액에 대해서는 별도재무제표상의 수익액에서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한하고 기타 수익을 제외
    - 비지배지분이란 모회사가 소유하는 종속회사 지분 이외의 외부주주 지분으로서 소수주주지분을 의미
  -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에 있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 감사의견 등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 외국기업의 상장예비심사(재심사 포함)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8조 3항, 부칙 1조 : 2010/12/1 개정, 12/6 시행)
- 단 거래소가 지정하는 해외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외국기업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제외
-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신규상장 및 상장폐지 관련 규정을 정비
- (16조, 38조 7항, 부칙 1조 : 2010/12/1 개정, 12/6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의 신규상장에 있어 100억원 이상이었던 자본금을 상장신청일 현재 자본금 50억원,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70억원으로 개정
  - 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신규상장 시 기존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하는 주식 분산요건을 완화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0(부칙 8조), 그 이후부터 100분의 25 이상으로 개정

- 상장폐지 요건으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는 제외되었던 배당요건미달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적용하도록 개정하면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가 전부 정지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새로운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

□ 신규상장과 동일하게 우회상장 심사절차를 정비

(18조의4, 19조, 19조의2, 19조의3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합병, 주식교환, 영업양수, 자산양, 현물출자 등의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우회상장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우회상장 심사서류 제출서류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세척에서 정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함
- 제출된 심사서류는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확정
- 심사결과는 심사청구일부터 2월(외국기업의 경우 3월 이내에 세척으로 정하는 날까지 금융위원회, 당해 법인 및 상장주선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 신규상장과 유사한 수준의 질적 심사를 도입

(19조, 19조의2, 19조의3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이는 우회상장을 통하여 부실한 상장부적격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거래소는 우회상장대상인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회상장이 공익과 투자자 보호상 부적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함
  - 영업, 재무상황 및 그 밖에 경영환경 등에 비추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비추어 경영투명성이 인정될 것
  - 상장전 증자나 주식거래, 상장업무 관련 이해관계자의 주식투자 등으로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이 침해되지 않을 것

- 그 밖에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 영업양수, 자산양수 형태의 우회상장에 주식이전 방법을 신설

(19조의3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최대주주의 변경등이 있는 영업양수, 자산양수 형태의 우회상장에 상장법인이 당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것 외 주식이전 방식도 허용
- 주식이전이란 상장법인 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간의 매매 예약·계약 등을 통한 주식이전에 의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들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 변경공시 되는 것을 의미

□ 상장후 매각을 제한하는 대상 증권의 범위 설정

(21조 1항 1의2호, 8항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상장후 매각을 제한하는 대상 증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 또는 최대주주들로부터 취득한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로 인해 전환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시킴
- 상장 직후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전환 및 매각으로 인하여 부당한 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함

□ 우회상장시 보호예수

(22조 22조의2, 22조의3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합병, 주식교환, 영업양수, 자산양수 및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시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은 비상장법인 주식등과 우회상장대상 상장법인 주식등에 대해 1년간 매각을 제한됨

- 기존 2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을 신규상장수준인 1년으로 일원화하면서 시장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
- 본 조를 적용하는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영업양수, 자산양수 및 현물출자의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은 제3자배정 또는 주식이전에 참여한 자에 한함

□ 우회상장기간 중 상장법인의 주식등에 대하여 매각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 (22조의4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우회상장 중인 상장법인 최대주주등과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은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우회상장 심사일로부터 상장규정에서 정한 추가상장일, 주식교환일 및 세척에서 정하는 날까지 계속 보유하여야 함
- 이는 우회상장심사에 있어 질적심사의 도입으로 인하여 심사기간이 장기화될 것을 예상, 기간 중 경영권이 변동되거나 주가 변동요인을 줄여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투자자의 환금성이 지나치게 제약되지 않도록 최대주주등에 제한하여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보호예수하는 것
- 거래소가 우회상장요건 충족에 따른 상장완료,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우회상장 취소 결정 등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회상장 중 상장법인의 주식등에 대하여 매각이 가능하도록 예외 근거를 마련

□ 해외상장 외국기업에 대한 관리종목지정 요건 신설

(41조 1항, 부칙 1조 : 2010/12/1 개정, 2010/12/6 시행)

- 해외상장 외국기업에 대한 관리종목지정 요건으로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 미개최 혹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하는 경우를 적용
- 개정 이후 해외상장외국기업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의 경우만 관리종목 지정요건에서 제외

## 1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 IFRS 조기도입기업에 관한 퇴출심사기준

(28조 1항 3호·4호, 38조 1항 4호의2·10호 : 2010/4/21 개정, 4/26 시행)

-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식분산 요건을 심사하는데 있어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보통주 이외의 주식'은 소액주주의 지분합산에서 배제하도록 함

### □ IFRS 조기도입기업의 관리종목 지정·해제기준 명확화

(26조 1항 3호 : 2010/4/21 개정, 4/26 시행)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및 자본잠식 등에 따라 관리종목을 지정 및 해제하는 경우 IFRS 조기도입기업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함

### □ 상장폐지법인등의 추가상장수수료 면제

(9조 4항, 38조 3항·7항 : 2010/4/21 개정, 4/26 시행)

- 상장폐지 또는 상장폐지를 신청한 기업이 추가상장을 신청한 경우, 이에 대한 변경상장수수료를 면제함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외국기업의 상장예비심사(재심사를 포함) 기간을 3월로 연장함에 따라 시행세칙도 외국기업의 상장심사기간을 2월에서 3월로 변경 (8조 3항 : 2010/12/3 개정, 12/6 시행)

- 단 「코스닥시장상장규정」 6조 1항 3호 마목의 거래소가 지정하는 해외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외국기업 즉 적격증권시장 상장 외국기업의 2차 상장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2월의 상장심사기간을 적용받음

□ 상장주선인의 기업분석보고서 제출의무

(23조 2항~3항 : 2010/12/3 개정, 12/6 시행)

- 상장주선인은 2년간 반기별 1회 이상, 총4회 이상 거래소에 기업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분석보고서란 상장을 주선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재무 상황 등을 분석한 자료를 의미(코스닥시장상장규정 26조 5항)
- 다만 상장일로부터 상장일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혹은 반기별 잔여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다음 반기부터 적용
  - 자본시장법은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면서 증권이 상장된 후 40일 이내에 해당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1조 4호, 동법 시행령 68조 3항)
- 상장주선인의 기업분석보고서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심사수수료를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

(38조 1항 : 2010/12/3 개정, 12/6 시행)

- 외국기업 상장심사에 있어 해외실사 등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

□ 외국기업의 감사인 자격으로 「외감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상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건으로 추가

(2조의2 1항 : 2010/12/31 개정, 9/6 시행)

- 기존에는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합산한 금액이 20억원 이상에 해당할 것을 요구
- 외국기업의 감사인은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상장예정법인이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함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신규상장과 동일하게 우회상장 심사 절차를 정비함에 따라 시행세칙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18조의3, 18조의4 : 2010/12/31 개정, 9/6 시행)

- 우회상장심사를 받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우회상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방법, 요건 및 절차는 우회상장 유형별로 코스닥 상장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우회상장보고서는 [상장서식 30-5]에 따라 우회상장의 목적, 일정, 회사의 개황 및 경영조직, 사업내용, 재무사항 등을 작성
- 우회상장의 유형으로 합병, 주식교환, 영업양수, 자산양수, 현물출자에 준하는 거래(코스닥시장상장규정 18조의4 1항 6호)로 분할합병과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
  - 비상장법인의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분할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최대주주 변경등이 있는 경우 우회상장으로 보아 그 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합병 유형의 우회상장규정을 준용하고 요건은 영업양수 유형의 우회상장규정을 준용
  -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우회상장 심사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 심사의 방법, 요건 및 절차등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함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위임한 우회상장 심사서류 제출시 추가서류로 거래소가 질적심사를 위하여 요청한 경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합병등 이후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그 밖에 기업결합에 관한 재무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증권신고서의 제출대상이 아닌 우회상장심사대상법인은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 상장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함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경영조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지배구조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주식을 분석한 경우 그 분석에 관한 사항, 이외에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 우량한 상장법인의 우회상장 질적심사 완화를 위하여 기업계속성요건(코스닥시장상장규정 6조 1항 19호 가목)을 적용 배제 요건 신설 (19조 3항, 19조의2 3항, 19조의3 9항 : 2010/12/31 개정, 9/6 시행)
  - 상장법인이 상장(재상장, 우회상장 완료)를 포함한 이후 3년이 경과 되었을 것
  - 상장법인이 최근 2년 이내에 관리종목 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것
  -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이 없을 것
  -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영업이익이 있을 것
  - 상장법인이 최근 2년 이내에 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여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대상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
  - 우회상장 대상 비상장법인이 국민경제의 발전 및 자본시장의 효율적 자금조달을 저해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개정된 상장규정에 맞춰 영업양수, 자산양수 형태의 우회상장에 제3자배정 주식발행 외에 주식이전 방식을 신설하고 상장규정에서 위임한 영업양수를 구체화 (19조의3 : 2010/12/31 개정, 9/6 시행)
  - 영업양수의 영업에 대하여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자산액 또는 매출액이 우회상장 대상 주권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을 규정
  
- 개정된 상장규정상의 우회상장 심사절차에 맞추어 시행세칙 정비 (19조, 19조의2, 19조의3 : 2010/12/31 개정, 9/6 시행)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합병, 주식교환, 영업양수, 자산양수, 현물출자 관련하여 각종 상장서식과 확인서 및 첨부서류 제출시기를 명시하고(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기준), 관련서류 제출 이후 거래소는 우회상장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상장법인에 통지하도록 신설

- 우회상장에 해당된다는 통지를 받은 즉시 해당 상장법인은 우회상장에 대한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합병, 주식교환, 영업양수 등이 완료되기 전까지 제출한 확인서 및 첨부서류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상장법인은 해당사항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함
-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호예수특례기간에 대하여 외국기업 제외  
(21조의3, 20조 1항 2호 : 2010/12/31 개정, 9/6 시행)
-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의 경우 추가상장일부터 1월간 보호예수
-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와 관련하여 자본잠식률, 자기자본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구체화 (26조 1항 4호 : 2010/12/31 개정, 9/6 시행)
- 자본잠식률 및 자기자본 관리종목 지정요건(상장규정 28조 1항 4호가목 나목)의 경우 반기연결검토보고서 미제출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은 관리종목의 지정시기를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3에 따른 반기검토보고서의 주석상지분법 적용 재무정보에 의하여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 11.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 IFRS 조기 도입기업에 대한 재무사항 적용기준 명확화  
(3조 6항 : 2010/4/21 개정, 4/26 시행)
- 국제회계기준(IFRS)을 조기 도입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의 재무사항과 관련해서는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IFRS 별도재무제표상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되,

- 국제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과의 회계처리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잠식률,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등(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조 1항 2호 다목, 37조 2항 4호 (가)·(나) 등)이 이에 해당함
  - 다만, 감사보고서상 매출액과 관련된 공시사항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에 따름

□ 상장건설사의 담보·채무보증 및 금전대여 등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6조 1항 2호 다목 4·5 : 2010/4/21 개정, 4/26 시행)

- 상장건설사의 재무위험에 대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공표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공시의무를 부과함
  - 상장건설법인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을 하거나,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대여를 하는 경우

□ 상장자회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공시의무 경감  
(7조 3항 : 2010/4/21 개정, 4/26 시행)

-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자회사가 영업 및 생산활동, 재무구조에 변경,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일정한 사항 등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한 때에는 당해 상장자회사의 지주회사도 공시를 한 것으로 간주함
  - 단, 지주회사가 세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중복 공시의무를 면제함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책임자, 공시대리인 외 공시담당자 1인 지정  
(22조 1항, 부칙 2조 : 2010/9/17 개정, 9/27 시행)

- 공시담당자와 공시대리인 간 의사소통 창구 단일화를 통해 효율적인 공시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
- 이 규정 시행 이전 기상장된 상장외국법인은 9월 17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의 심의 개최 기한을 15일로 연장 조정

(32조 3항 : 2010/9/17 개정, 9/27 시행)

- 기존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일로부터 해당 법인에게 7일 이내 이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12일 이내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해 실질적인 검토기간이 최대 5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시 일정 수준 이상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도록 함

(1항 3호 : 2010/9/17 개정, 9/27 시행)

- 기존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위반의 경중과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음
  - 단순 착오 및 경미한 위반임에도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선의의 투자자에게 피해발생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코스닥상장법인의 공시신고 사항으로 자기주식 취득 특례(자본시장법 165조의2)상의 자사주 취득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신탁계약의 체결, 해지 외 연장도 경우도 추가

(6조 1항 2호 가목 3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K-IFRS 도입에 따라 공시신고사항 관련 규정 개정

(6조 1항, 37조 2항 : 2010/12/1 개정, 2011/1/1 시행)

- 공시신고 사항의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K-IFRS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하도록 함
- 매출액에 있어 K-IFRS을 적용하는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제한
  - 기존 K-GAAP에서 매출액은 사업활동에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만을 의미하였으나 K-IFRS상 매출(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외 기타 수익으로 이자, 배당, 로열티수익을 포함하고 있음

□ 조회공시요구시 '특이사항 없음' 답변에 검토의무를 부과

(6조 1항, 10조 6항 : 2010/12/29 개정, 2011/3/1 시행)

- 시황 변동에 따른 조회공시요구에 '중요정보가 없다(특이사항 없음)'고 답변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하여금 공시신고사항 유무 또는 검토 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였음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대표이사 확인서를 공시하도록 신설
  - 2009년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에 '특이사항 없음'이 대부분(75.2%)을 차지하자 이를 축소하기 위하여 '특이사항 없음'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의무를 부과

□ 코스닥시장법인의 미확정공시시 입증자료 첨부

(11조 3항 : 2010/12/29 개정, 2011/3/1 시행)

- 미확정공시를 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하여금 품문이나 보도 혹은 시황변동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공시하도록 신설
- 다만, 경영상 비밀 등의 사유로 입증자료 제출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시 가능

□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의 불성실공시유형 가운데 다음의 내용을 공시번복에 추가 (28조 2항, 4항 : 2010/12/29 개정, 2011/3/1 시행)

— 이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조회공시답변이 보다 성실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제공되도록 하며, 인위적인 정보가 은폐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조회공시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 시황변동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 공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 공시한 사항 외의 사항을 공시한 경우로서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미확정공시에 따른 재공시기한까지 확정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의사결정 중에 있다는 기 공시내용의 확정이 지연되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미확정공시 및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에 따라 미확정공시 이후 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변경·중단·취소한 경우로서 의사결정의 변경·중단·취소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조회공시 및 상장외국법인의 조회공시에 의하여 품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 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중단·취소 또는 부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내용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에 예측·조정 등이 가능하여 공시번복기한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시황변동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 공시한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 공시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공시한 경우로서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에 예측·조정 등이 가능하여 공시번복기한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시번복의 심사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

## 12.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상장 자회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공시의무 경감을 위해 사전 신청서를 신설 (7조의2, 공시서식 8호 : 2010/9/1 개정, 9/6 시행)

- 지주회사가 연계공시를 위한 사전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
  - 지주회사가 연계공시 신청서를 거래소에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상장 자회사가 신고한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지주회사도 별도의 공시제출 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신청서를 제출한 지주회사는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연계방식으로 공시가 이루어짐
-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주요경영사항 연계공시 신청서
  - 신청서에는 신청일자·사유, 주권상장법인인 자회사의 변동사항 등을 기재
  - 상장자회사가 연계공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자회사 주식의 지주회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함께 기재

□ 시설외 투자 항목에 연예·스포츠 매니지먼트 계약을 통한 투자 항목을 신설 (6조 4호 : 2010/9/1 개정, 9/6 시행)

- 연예·스포츠 매니지먼트 계약이 자기자본의 10%이상을 차지할 경우 시설외 투자 항목에 포함되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함
  - 현행 시설외 투자 항목은 영화·음반·연예 공연물, 게임·프로그램 및 교육·지식·정보·출판물 등의 제작을 위한 투자임(6조 1호·2호·3호)

□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된 벌점이 4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 정지 (18조 3항 : 2010/9/20 개정, 9/27 시행)

- 위반행위의 동기, 중요성, 투자자 영향 및 해당 법인의 성실공시 관행 등을 고려
- 본 규정은 9월 27일 시행 이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 되는 법인부터 적용

### 1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미니금선물의 거래대상과 거래단위 (56조 : 2010/6/23 개정, 6/24 시행)
  - 미니금선물의 거래대상은 금선물과 동일하게 순도 99.99%의 금괴로 함
    - 거래단위 : 100g (금선물 : 1kg)
    - 거래승수 : 100 (금선물 : 1,000)
  
- 미니금선물의 가격표시 및 최소가격변동폭 (58조 : 2010/6/23 개정, 6/24 시행)
  - 미니금선물의 가격은 금선물과 동일하게 '1g당 원화'로 표시하며 최소가격변동폭은 '10원'으로 함
  - 미니금선물의 최소가격변동금액은 1,000원(= 거래승수 100 × 10원)으로 함
    - 금선물의 최소가격변동금액 : 10,000원(거래승수 1,000×10원)
  
- 미니금선물의 거래시간 (4조 : 2010/6/23 개정, 6/24 시행)
  - 미니금선물의 거래시간을 평일에는 금선물과 동일하게 9시부터 15시15분까지로 하고, 최종거래일시간도 동일함
    - 금선물의 최종거래일시간 :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 미니금선물의 상장결제월 및 거래시간 (57조 : 2010/6/23 개정, 6/24 시행)
  - 미니금선물의 상장결제월(종목)의 수 : 7개(2,4,6,8,10,12월 6개와 그 밖의 월 중 1개)
  - 거래기간 : 2,4,6,8,10,12월물은 1년, 기타월물은 2개월

□ 미니금선물과 금선물의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59조 : 2010/6/23 개정, 6/24 시행)

- 미니금선물의 최종거래일 : 각 결제월의 세 번째 수요일
  - 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김
- 미니금선물의 최종결제일 : 각 결제월의 최종거래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 거래일(T+2일)
- 금선물의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도 이와 일치시킴(59조)
  - 최종거래일 : 각 결제월의 마지막 거래일의 직전 2거래일 → 각 결제월의 세 번째 수요일
  - 최종결제일 : 각 결제월의 마지막 거래일 → 각 결제월의 최종거래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째의 거래일(T+2일)

□ 미니금선물의 최종결제방법 (60조 : 2010/6/23 개정, 6/24 시행)

- 실물인수도 방식인 금선물과 달리, 미니금선물은 현금결제방식을 채택
  - 최종결제일에 매수자와 매도자는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과의 차이로 정해지는 최종결제차금만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최종결제
- 최종거래일의 국제금가격을 1g당 가격으로 환산한 수치에 최종거래일의 미국달러 현물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치를 '최종결제가격'으로 함
  - 국제금가격 : 미니금선물 최종거래일 장종료 이후 The London Gold Market Fixing Limited가 최초로 공표하는 1온스당 美달러화 가격을 1g으로 환산한 가격

□ 금선물 및 미니금선물의 미결제약정수량 제한 도입

(154조 : 2010/6/23 개정, 6/24 시행)

- 금선물은 300계약, 미니금선물은 3,000계약을 미결제약정수량 보유 한도로 설정하여, 시장과열, 현·선물을 이용한 시장조작 및 포지션 과다 보유에 따른 결제불이행의 사전에 방지함
  
-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의 거래중단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근거 마련 (4조의2, 82조의9 3항 : 2010/6/23 개정, 6/24 시행)
  - 코스피200선물의 야간거래의 회원시스템 장애발생으로 인한 임의적 거래 중단 등 시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거래소가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거래중단 등을 위한 세부적 요건은 세칙에서 정함
  
- 국채선물 기초자산, 거래단위 및 거래승수 변경 (38조 : 2010/9/1 개정, 9/13 시행)
  - 3년·5년 국채선물 기초자산의 표면금리를 현행 '연 8%'에서 '연 5%'로 변경함
    - 현행 표면금리는 '99년 국채선물 상품 도입시 8%였던 실제금리를 반영하여 설정되었음
    - 최근 금리수준은 4~5%로 낮아졌기 때문에 국채선물을 이용한 헤지거래의 정밀도와 효율성이 하락하게 되어, 최근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표면금리를 변경함
  - 10년 국채선물의 거래단위(1계약의 크기)는 '액면 5천만원'에서 '액면 1억원'으로, 거래승수는 '50만'에서 '100만'으로 변경함
    - 3년·5년 국채선물의 거래단위·거래승수와 일치하도록 변경함
  
- 국채선물 결제일 변경 (39조 : 2010/9/1 개정, 9/13 시행)
  - 10년 국채선물의 결제일수는 '3개'에서 '2개'로, 각 결제일의 최장거래기간은 '9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함
    - 3년·5년 국채선물의 결제일수 및 최장거래기간과 일치하도록 변경함

- 장·단기 국채선물 상품 간 스프레드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 국채선물 호가가격단위 변경 (40조 : 2010/9/1 개정, 9/13 시행)

- 10년 국채선물의 호가가격단위를 '0.02'에서 '0.01'로 변경
  - 3년·5년 국채선물의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도록 변경함
  - 단, 최소가격변동금액은 10,000원(거래승수 1,000,000×0.01)으로 현행(거래승수 500,000×0.02)과 동일하게 됨

□ 국채선물 최종결제방법 및 최종결제일 변경

(41조, 42조 : 2010/9/1 개정, 9/13 시행)

- 10년 국채선물의 최종결제방법을 '실물인수도'에서 '현금결제'로 변경(42조 1항)
  - 장기 국채선물에 대한 결제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경되었으며, 단기 국채선물의 최종결제방법과 동일함
- 10년 국채선물의 최종결제일은 'T+2일'에서 'T+1일'로 변경(41조)
  - 현행 10년 국채선물의 실물인수도 결제방식에 따라 인도 채권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최종결제일을 T+2일로 지정하였으나, 최종결제방식이 현금결제로 변경됨에 따라 결제가 용이하게 되어 최종결제일을 T+1로 변경함
- 3년·5년 국채선물 기초자산의 표면금리 및 10년 국채선물의 최종결제제도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종결제가격 산출식을 변경
  - 최종결제가격은 결제수익률(시장금리)와 채권 현가모형을 이용하여 산출됨

$$3\text{년 국채선물 최종결제가격} = \sum_{i=1}^6 \frac{5/2}{[1+(r/2)]^i} + \frac{100}{[1+(r/2)]^6}$$

$$5\text{년 국채선물 최종결제가격} = \sum_{i=1}^{10} \frac{5/2}{[1+(r/2)]^i} + \frac{100}{[1+(r/2)]^{10}}$$

10년 국채선물 최종결제가격 =  $\sum_{i=1}^{20} \frac{5/2}{[1+(r/2)]^i} + \frac{100}{[1+(r/2)]^{20}}$

<부록 표-1> 국채선물 관련 규정 변경 사항

구 분	3년 국채선물	5년 국채선물	10년 국채선물	변경 사항 (음영표시)
기초자산표면금리	연 5%	연 5%	연 5%	8% → 5%
거래단위	액면 1억원	액면 1억원	액면 1억원	0.5억원 → 1억원
거래승수	1,000,000	1,000,000	1,000,000	50만 → 100만
결제월수	2개월	2개월	2개월	3개 → 2개
최장거래기간	6개월	6개월	6개월	9개월 → 6개월
호가가격단위	0.01	0.01	0.01	0.02 → 0.01
최종결제일	T+1	T+1	T+1	T+2 → T+1
최종결제방법	현금결제	현금결제	현금결제	실물인수도 → 현금결제
최종결제가격	$\sum_{i=1}^6 \frac{(5/2)}{[1+(r/2)]^i} + \frac{100}{[1+(r/2)]^6}$	$\sum_{i=1}^{10} \frac{(5/2)}{[1+(r/2)]^i} + \frac{100}{[1+(r/2)]^{10}}$	$\sum_{i=1}^{20} \frac{(5/2)}{[1+(r/2)]^i} + \frac{100}{[1+(r/2)]^{20}}$	(3년·5년) 표면이율 변경 (10년) 정산가격 → 표준물 현가

□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지급 범위를 확대 변경

(87조 : 2010/9/1 개정, 9/13 시행)

- 현행 ‘해당 시장조성상품의 거래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조성대가 지급이 가능하던 것을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으로 지급기반을 확대함
  - 저유동성 종목은 거래가 부진하여 시장조성자에게 지급되는 조성대가 취약하므로 조성유인을 감소시켜 거래부진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지속됨

- 유동성관리종목 등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조성상품의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파생상품시장 수수료 수입을 조성대가로 지급하도록 범위를 확대함

## 14.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파생상품시장의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현금위탁증거금액의 자율산정 허용 (148조 1항 : 2010/4/19 개정, 6/28 시행)

-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적격기관투자자가 선물거래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증거금 중 현금의 비율을 최대 0%까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는 증권 및 선물회사가 적격기관투자자의 선물거래시 납부하는 증거금 중 1/3 이상을 현금으로 예탁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금리·통화·일반상품의 현금위탁증거금비율 단계적 인상 시기를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현금증거금 제도 변경 시기와 일치

(제3조 : 2010/4/19 개정, 6/28 시행)

- 과거에는 주식상품에만 적용되던 현금위탁증거금제도를 모든 파생상품에 확대 적용하되, 기존투자자의 자금부담 최소화 및 회원사시스템 변경 소요시간 확보 등을 위해 금리·통화·일반상품만 거래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동 시행세칙을 개정한 바 있음(2009/1/20 개정, 2/4 시행)
  - 현금위탁증거금액(사전·사후)을 산출하는데 있어 현금위탁증거금비율 및 선물현금비율의 최저율을 2009년 10월 26일 전까지는 1/12로, 2010년 4월 26일 전까지는 1/6로, 2010년 4월 27일부터 1/3로 적용함
- 이와 관련하여 2010년 4월 27일부터 1/3로 적용하도록 한 금리·통화·일반상품의 현금비율의 인상 시기를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현금위탁증거금액의 자율산정 허용시기(148조 1항, 2010/6/28 시행)와 일치시킴

□ 회원사 자체시스템 장애에 따른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의 거래중단 (4조의2 : 2010/6/23 개정, 6/24 시행)

- 회원사 자체시스템을 통한 코스피200선물의 야간거래 중, 최근 6월간의 약정수량을 기준으로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75%이상 장애 발생 시에는 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의 임의적 중단사유

(79조의8 : 2010/6/23 개정, 6/24 시행)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82조의9 3항)에 따라,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의 임의적 중단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호가를 입력하거나 거래내용의 통지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원의 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이 모든 회원의 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장개시전협의거래의 적용대상 신설

(72조의9 : 2010/8/25 개정, 8/30 시행)

- 유렉스에 상장된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의 최종결제를 위한 코스피200옵션거래를 장개시전협의거래의 적용대상으로 정함

□ 장개시전협의거래 신청시간 등 관련 조항 신설

(72조의10 : 2010/8/25 개정, 8/30 시행)

- 장개시전협의거래 신청시간은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로 정함
  - 단, 유렉스청산기관이 계좌를 개설한 회원이 협의거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시간을 8시 20분부터 8시 30분까지로 함
- 거래소는 협의거래신청시간을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장개시전협의거래신청 예상내역의 통지 신설

(72조의11 : 2010/8/25 개정, 8/30 시행)

- 거래소와 유렉스는 최초로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수행하기 전에 거래 신청 예상내역 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08.12월 거래소와 유렉스의 코스피200옵션 연계거래 계약 체결
  - '09.10월 양 거래소간 연계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IT 보충계약 체결
- 유렉스청산기관은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의 최종결제수량을 확정 한 후 다음의 장개시전협의거래신청 예상내역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통지해야 함
  - 거래일련번호, 종목, 수량, 가격, 매도·매수회원번호, 파생상품계좌식별번호 및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거래소는 장개시전협의거래시간 전에 예상내역을 회원에게 통지함
  - 단, 장개시전협의거래의 상대방 회원번호와 파생상품계좌식별번호는 제외

□ 장개시전협의거래의 신청내용 및 방법 신설

(72조의12 : 2010/8/25 개정, 8/30 시행)

-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 주문을 회원에게 위탁하는 경우, 거래편의 및 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종결제의무 이행에 필요한 코스피200옵션의 장개시전협의거래 주문을 동시에 위탁하는 것으로 함
- 회원은 장개시전협의거래에 대해 거래소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신청함
  - 거래일련번호, 종목, 수량, 신청수량(61조의 호가한도수량은 적용하지 않음), 거래소 회원번호, 매도·매수 구분, 위탁거래·자기거래 구분, 투자자의 구분, 파생상품계좌식별번호 및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유렉스청산기관계좌개설회원 신설

(72조의13 : 2010/8/25 개정, 8/30 시행)

- 유렉스청산기관은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최초로 행하기 전에 1개 이상의 회원을 지정하여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유렉스청산기관계좌개설회원), 계좌 개설·회원 변경시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함
- 유렉스청산기관계좌개설회원은 아래의 예상내역을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아 유렉스청산기관을 위탁자로 하는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신청함
  - 각 회원이 수탁을 거부한 경우 장개시전협의거래신청 예상내역
  - 수탁을 거부하지 않고 8시 20분까지 거래 신청을 하지 않은 장개시전협의거래신청 예상내역
  - 그 밖에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의 최종결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개시전협의거래신청 예상내역
- 유렉스청산기관계좌개설회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유렉스청산기관이 장개시전협의거래로 취득한 코스피200옵션거래의 미결제약정을 지체없이 해소하도록 함
- 거래소는 장개시전협의거래신청 예상내역을 유렉스청산기관계좌개설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거래소와 유렉스청산기관은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최초로 시행하기 전에 1항·2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08.12월 거래소와 유렉스의 코스피200옵션 연계거래 계약 체결
  - '09.10월 양 거래소간 연계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IT 보충계약 체결

□ 장개시전협의거래 약정수량의 공표시기 신설

(79조 1항 3호 : 2010/8/25 개정, 8/30 시행)

- 장개시전협의거래를 통해 체결된 약정수량은 정규시장개시시점부터 공표
  - 일반적인 협의거래는 체결될 때마다 공표
  - 시가 단일가격거래시간이 종료되고 정규거래시간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정규시장의 시세와 구분하여 공표

□ 장개시전협의거래의 수탁 신설

(118조의2 : 2010/8/25 개정, 8/30 시행)

-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수탁할 경우 확인할 사항 규정
  - 종목, 수량, 가격, 파생상품계좌번호, 매도·매수 구분, 파생상품계좌식별번호, 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를 수탁하는 것은 최종결제를 위한 코스피200옵션의 장개시전협의거래도 수탁하는 것을 의미함
  -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 종료 후 위탁자가 직접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위탁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여 거래의 편의성을 높임

□ 수탁거래의 제한 신설

(119조 2항 5호, 3항, 4항 : 2010/8/25 개정, 8/30 시행)

-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의 최종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원은 장개시전협의거래에 대한 수탁거부사항을 명시하여 8시20분까지 수탁을 거부하여야 하며, 수탁거부 사실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함
  - 거래소에 통지하는 내용은 거래일련번호, 가격, 파생상품계좌번호, 투자자의 구분(72조의12 1항 1호·4호·6호·9호)관련 정보임
- 수탁거부사항
  - 주문가격이 상·하한가를 벗어나는 등 규정에 위반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 옵션매수전용 파생상품계좌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위탁 증거금도 예탁하지 않은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않은 위탁자로부터 글로벌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 파생상품계좌식별번호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 유렉스청산기관의 적격기관투자자 인정 신설

(132조 4호 : 2010/8/25 개정, 8/30 시행)

- 코스피200옵션거래에 한하여 유렉스청산기관을 적격기관투자자로 인정함
  - 유렉스청산기관은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의 결제기관이므로 회원이 수탁을 거부한 경우 유렉스청산기관이 최종결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시장조성상품에 대한 계약 기간,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 지급액 등 관련 규정 개정

(82조 4항, 90조 1항, 2항, 5항 : 2010/9/6 개정, 9/13 시행)

- 기존 분기 단위로 제한하였던 시장조성상품에 대한 계약 기간을 시장조성상품의 특성,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 지급액을 시장조성상품의 거래수수료 및 청산·결제수수료의 80% 이내의 금액으로 시장조성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함
  - 과거 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 지급액은 거래수수료의 80%에 해당하는 현금이었음
- 시장조성 실적에 따른 차등지급액이 시장조성에 따른 비용 등 일정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최대 4분기까지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고정비성 경비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중 큰 금액을 시장조성 대가로 지급하도록 시장조성대가 지급방식을 개선한 것임
  - 시장조성에 따른 비용 등 일정금액이란 시장조성실적의 평가 기간 동안 국가계약 회계예규 별표5에 따른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중 용역참여율 100%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구원 등급의 월 임금 기준단가로 국가계약 회계예규 별표5에서 정한 연구원 등급의 월 임금 기준단가는 약 400만원임

- 거래조성자에 대한 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장조성에 따른 비용 등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시장조성상품·지급기준·지급대상을 추가

□ 거래증거금률 조정 및 주가지수선물거래를 품목별로 코스피200선물거래와 스타지수선물거래로, 주가지수옵션거래를 코스피200옵션거래로 변경 (별표 19. 1 : 2010/9/13 개정, 10/11 시행)

- 코스피200선물과 코스피200옵션의 거래증거금률이 10%에서 9%로, 위탁증거금률은 15%에서 13.5%로 하향 조정
- 3년국채선물의 거래증거금률은 1%에서 0.8%로, 위탁증거금률은 1.5%에서 1.2%로 하향 조정되고, 5년국채선물 기본증거금률(1.2%→1%)과 위탁증거금률(1.8%→1.5%)도 모두 낮아짐
- 돈육선물도 거래증거금률이 14%에서 12%로, 위탁증거금률이 21%에서 18%로 하향 조정
- 반면 가격변동성이 거래증거금률을 초과하고 있는 엔선물은 기본증거금률이 3.5%에서 4%로 위탁증거금률이 5.25%에서 6%로 상향 조정

**<부록 표-2> 증거금률 조정 현황**

구분	품 목	거래증거금률	위탁증거금률
인하	코스피200선물	10% (9%, ↓1.0)	15% (13.5%, ↓1.5)
	코스피200옵션	10% (9%, ↓1.0)	15% (13.5%, ↓1.5)
	3년국채선물	1.0% (0.8%, ↓0.2)	1.5% (1.2%, ↓0.3)
	5년국채선물	1.2% (1%, ↓0.2)	1.8% (1.5%, ↓0.3)
	돈육선물	14% (12%, ↓2.0)	21% (18%, ↓3.0)
인상	엔선물	3.5% (4%, ↑0.5)	5.25% (6%, ↑0.75)

주: 유지위탁증거금률은 거래증거금률과 동일

□ 선물거래 기준가격 변경 (55조 : 2010/10/1 개정, 10/11 시행)

- 거래개시일부터 최초 거래성립일까지 기준가격은 선물이론가격(돈육선물거래의 경우 제외)으로 하며 단, 주식선물거래에 있어서 배당락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선물조정이론가격으로 함
  - 최초 거래성립일에는 선물스프레드 거래 성립에 따라 선물거래의 결제월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보는 거래일이 포함됨
  - 선물이론가격이란 돈육선물거래를 제외하고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7부터 별표 13까지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이론가격임
  - 돈육선물거래의 경우 거래개시일부터 최초 거래성립일까지 기준가격은 직전 거래일에 공표된 돈육대표가격으로 정함
  - 주식선물조정이론가격이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8의 산식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이론가격을 의미
- 개정 전에는 거래개시일의 익일부터 최초의 거래성립일까지의 기준가격은 조건에 따라 전일의 기세, 전일의 기준가격 혹은 선물이론가격을 적용하였음
- 시장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거래 상황에 이상이 있는 등 필요시 기준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옵션거래 기준가격변경 (57조 : 2010/10/1 개정, 10/11 시행)

- 거래개시일부터 최초 거래성립일까지 기준가격은 옵션이론가격으로 하며 단, 주식옵션거래에 있어서 배당락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옵션조정이론가격으로 함
  - 옵션이론가격이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15부터 별표 17까지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이론가격임
  - 주식옵션조정이론가격이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16의 산식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이론가격을 의미
- 개정 전에는 거래개시일의 익일부터 최초의 거래성립일까지의 기준가격은 조건에 따라 전일의 기세, 전일의 기준가격 혹은 옵션이론가격을 적용하였음

- 시장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거래 상황에 이상이 있는 등 필요시 기준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가격제한 기준을 개정

(60조 : 2010/10/1 개정, 10/11 시행)

- 원월종목의 기준가격 - 최근월종목의 기준가격 + 최근월종목의 기준가격 × 별표 14의 가격제한비율을 선물스프레드거래의 상한가로 정함
- 원월종목의 기준가격 - 최근월종목의 기준가격 - 최근월종목의 기준가격 × 별표 14의 가격제한비율을 선물스프레드거래의 하한가로 정함

□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협의거래를 수탁하는 경우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장개시전협의거래는 제외됨을 명시

(118조 1항 : 2010/10/1 개정, 10/11 시행)

-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수탁하는 경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118조의2를 통하여 규정

□ 옵션거래의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및 최유리지정가주문 위탁가격을 정하는데 있어 기존 기준가격적용최대이론가격을 위탁가격적용최대이론가격으로 변경

(121조, 121조의2 : 2010/10/1 개정, 10/11 시행)

- 옵션거래의 위탁가격적용최대이론가격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별표 19의 위탁가격적용이론가격비율만큼 상승하는 경우의 상승콜옵션이론가격 및 하락하는 경우의 하락풋옵션이론가격으로 함
  - 상승콜옵션이론가격의 산출에 57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는데 별표 15에서 별표 17까지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은 각각 전일의 기초자산 기준가격과 그 가격에 위탁가격적용이론가격비율을 곱한 수치를 더한 가격으로 봄

- 하락풋옵션이론가격의 산출도 마찬가지로 57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는데 별표 15에서 별표 17까지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은 각각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과 그 가격에 위탁가격적용이론가격비율을 곱한 수치를 뺀 가격으로 봄

— 한국거래소는 거래 상황에 이상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옵션거래의 위탁가격적용최대이론가격을 변경할 수 있음

□ 10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가 가능한 종목수를 3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5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와 동일하게 기존 2개에서 1개로 변경 (46조 1항 1호 : 2010/10/20 개정, 10/25 시행)

— 이는 10년국채선물거래의 결제월이 3개에서 2개로, 거래시간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 데에 따른 일련의 국채선물 개선 사항임

□ 10년국채선물거래에 있어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에 대한 호가 제한 및 최종약정가격결정

(50조 4호, 63조 : 2010/10/20 개정, 10/25 시행)

— 10년국채선물거래에 있어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경우 조건부지정가호가를 입력하지 못하도록 제한

- 이전에는 통화상품거래 및 일반상품선물거래와 더불어 10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조건부지정가호가를 입력하는 것은 허용되었음

— 10년국채선물거래에 있어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최종약정가격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의 방법인 접속거래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함

- 이전 10년국채선물거래는 통화상품거래, 금선물거래, 미니금선물거래 및 돈육선물거래와 동일하게 접속거래방식이 아닌 단일가로 최종약정가격을 결정하였음

□ 거래소의 3년국채선물거래, 5년국채선물거래 및 10년국채선물거래의 호가 관련 공표의무

(79조 1항 1호 가목, 79조 1항 2호 : 2010/10/20 개정, 10/25 시행)

- 거래소는 단일가호가시간 외의 호가접수시간의 경우 3년국채선물거래, 5년국채선물거래 및 10년국채선물거래의 호가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매도·매수별 5개의 우선가격의 호가수량 및 당해호가수량의 합계수량을 공표하여야 함
  - 매도·매수별 5개의 우선가격이란 매도·매수별 최우선평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5개의 우선호가의 가격으로 잔량기준에 의해 산정
  - 이전에는 3년국채선물거래, 5년국채선물거래 및 10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호가단위로 그 범위를 정하여 매도·매수별 연속 5개 우선가격의 호가수량을 공표하였음
  - 매도·매수별 연속 5개 우선가격이란 매도의 경우 최우선평호가의 가격과 그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더한 4개의 가격을, 매수의 경우에는 최우선평호가의 가격과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4개의 가격을 의미
- 거래소는 3년국채선물거래, 5년국채선물거래 및 10년국채선물거래의 종가단일가호가시간의 경우 단일가호가시간의 호가로 선출된 예상체결가격을 공표하여야 함
  - 이전에는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3년국채선물거래, 5년국채선물거래 및 10년국채선물거래도 종가단일가호가시간의 경우 매도와 매수별 총 호가수량을 공개하였음

□ 시장조성기간 개시일 및 시장조성계약 기간, 체결시기 규정

(81조 4항, 82조 5항 : 2010/10/20 개정, 10/25 시행)

- 최초로 상장되는 상품의 경우 상장일,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이 개시되는 날로 특정
  - 시장조성기간이란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
  - 이전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 시장조성기간의 개시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었음

- 개정안은 유동성관리상품의 시장조성기간을 최초로 상장되는 신상품과 동일하게 최초개시일이 속하는 분기를 포함하여 12개 이내 분기로 정함
- 시장조성계약에 있어 조성상품의 특성,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체결시기와 관련하여 최초 분기에 한하여 분기개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시장조성계약체결을 통하여 시장조성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
  - 원칙적으로 시장조성자는 분기개시 이전에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이전에는 시장조성 개시 이후에는 추가적인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장조성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
  - 개정안은 회원사의 시스템 준비 등을 고려하여 시장조성의 최초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경우 시장조성개시일부터 그 분기 마지막 거래일까지 추가적인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조성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의 최초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에 있어 시장조성의 최초개시일이 분기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를 포함시킴

□ 10년국채선물거래의 기초자산기준가격

(별표 1 : 2010/10/20 개정, 10/25 시행)

- 10년국채선물거래의 최종결제방식이 현금결제로 변경됨에 따라 10년국채선물거래의 기초자산기준가격을 3년국채선물거래, 5년국채선물거래와 동일하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최종결제기준채권의 수익률을 해당 산식의 결제수익률에 대입하여 산출한 수치로 정하도록 함

□ 3년, 5년, 10년국채선물 이론가격 산출식

(별표 9 : 2010/10/20 개정, 10/25 시행)

- 10년국채선물거래의 최종결제방식 변경 및 3년국채선물거래, 5년국채선물거래의 이자율이 8%에서 5%로 하락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론가격 산출식을 변경

- 3년국채선물 이론가격 = 
$$\sum_{i=1}^6 \frac{\frac{5}{2}}{(1 + \frac{r}{2})^i} + \frac{100}{(1 + \frac{r}{2})^6}$$

- 5년국채선물 이론가격 = 
$$\sum_{i=1}^{10} \frac{\frac{5}{2}}{(1 + \frac{r}{2})^i} + \frac{100}{(1 + \frac{r}{2})^{10}}$$

- 10년국채선물 이론가격 = 
$$\sum_{i=1}^{20} \frac{\frac{5}{2}}{(1 + \frac{r}{2})^i} + \frac{100}{(1 + \frac{r}{2})^{20}}$$

$r$  = 최종결제기준채권의 평균선도수익률

(이론가격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10년국채선물거래의 계약당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 계약당최소증거금액, 계약당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액을 3년, 5년국채선물거래와 동일하게 규정 (별표 19, 19의2 : 2010/10/20 개정, 10/25 시행)

- 10년국채선물거래의 거래단위가 1억원, 거래승수가 100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약당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의 경우 거래증거금은 15만원에서 30만원, 위탁증거금은 25만원에서 50만원, 계약당최소증거금액의 경우 3만원에서 5만원, 계약당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액의 경우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주식(DR 포함) 대용증권 사정비율을 개선

(127조 : 2010/11/12 개정, 11/29 시행)

- 사정비율 차등화 및 사정비율 산출주기

- 분기 중 대응증권으로 지정된 종목 등의 사정비율
- 신규상장종목 및 재상장종목의 사정비율

□ ETF 대응증권 사정비율의 개선

(127조 3항 : 2010/11/12 개정, 11/29 시행)

- 주가지수 및 채권지수에 연동하는 ETF 대응증권의 사정비율

**<부록 표-3> 대응증권별 사정비율 현황**

대상종목			사정비율
주권 (DR포함)	유가증권시장	일평균거래대금 상위 50% & 코스피200종목	80%
		일평균거래대금 하위 5%	60%
	코스닥시장	일평균거래대금 상위 50% & 코스피200종목	80%
		일평균거래대금 하위 5%	60%
	상기 이외 주권		
ETF	주가지수	코스피200, 코스피50, KRX100 (1:1로 연동하는 경우)	80%
	채권지수	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CD	95%
		일반사채권·CP (주식관련사채권 및 추가연계증권제외)	85%
		주식관련사채권 및 추가연계증권 포함	80%
	상기 이외 ETF		

□ 선물거래에 있어 시장조성가능 종목 확대

(81조 1항 1호, 부칙 : 2010/12/10 개정, 2011/1/1 시행)

- 시장조성종목으로 선물거래에 있어 최종거래일 전 4거래일부터 최근월종목 및 차근월종목 가운데 1개 이상의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이 가능하도록 개선
  - 기존 선물거래에 있어 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 전 4거래일부터는 차근월종목을 시장조성종목으로 함에 따라 4일간 최근월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이 불가능하였음
  - 이에 만기가 도래한 최근월종목도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개정

□ 선물거래에 있어 정산기준가격 산출

(103조, 별표 19의3 : 2010/12/10 개정, 12/20 시행)

- 선물 당일 정산가격은 당일 정규거래시간 중 성립된 최종 약정가격으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가격이 없거나 그 가격이 정산기준가격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괴리되면 정산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함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이 있는 선물거래의 정산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음
  - 최근월종목의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당일 선물거래의 기준가격(돈육선물의 경우 실시간 대표가격)
  - 차근월종목의 경우에는 선물이론정산가격
  - 차근월종목을 제외한 원월종목의 경우에는 해당 원월종목의 선물이론정산가격에서 차근월종목의 선물이론정산가격을 뺀 수치를 차근월종목의 정산가격에 더한 가격(차근월종목의 정산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선물이론정산가격)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이 없는 선물거래의 정산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음
  - 최근월종목의 경우에는 선물이론정산가격
  - 원월종목의 경우에는 해당 원월종목의 선물이론정산가격에서 최근월종목의 선물이론정산가격을 뺀 수치를 최근월종목의 정산가격에 더한 가격(차근월종목의 정산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선물이론정산가격)

— 정산기준가격 적용 괴리수치를 다음과 같이 설정

거래구분	괴리수치	
	현행	개정
코스피200선물거래	5.0%	2.5%
스타지수선물거래	5.0%	2.5%
주식선물거래	6%	5%
3년국채선물거래	0.5%	0.6%
5년국채선물거래	0.6%	0.6%
10년국채선물거래	0.9%	0.9%
통안증권선물거래	0.1%	0.1%
미국달러선물거래의 최근월종목 (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부터 기산하여 소급한 4거래일간은 차근월종목을 포함)	1.5%	1.5%
미국달러선물거래의 원월종목(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부터 기산하여 소급한 4거래일간은 차근월종목을 제외), 엔선물거래, 유로선물거래	0.3원	0.3원
돈육선물거래	7%	10%
금선물거래, 미니금선물거래	3%	2%

—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기타 시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가 정산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15.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 시장경보제도 중 투자경고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 요건 개선

(3조의3 : 2010/5/31 개정, 6/1 시행)

- 투자경고종목을 지정하는데 있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여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종목 등의 매매거래가 재개된 후 매매거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매거래 재개 후의 기간'만 대상으로 함
- 투자경고종목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데 있어, 신규상장 후 20일 미만인 종목 또는 매매거래 재개 후의 매매거래 일수가 20일 미만인 종목의 경우에는 20일 미만의 매매거래 일수를 기준으로 함

- 자기주식매매의 신고관련규정 위반시 약식제재금 면제범위 확대  
(별표2 1호 가·다 : 2010/5/31 개정, 6/1 시행)
  - 자기주식매매 신고관련 규정 위반시 위반수량이 신청수량 대비 10% 이하이고, 거래량 대비 5% 이하인 경우 약식제재금을 면제함

## IV. 금융투자협회 규정

### 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 협회와 금융투자회사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의무 신설

(3-25조의2 : 2010/1/14 개정·시행)

- 협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고충을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조)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

#### □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 대상 펀드 범위

(4-112조 : 2010/1/25 개정·시행)

- 원칙적으로 판매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모든 펀드를 판매회사 변경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함
  - 다만, 예외적으로 펀드 판매회사의 변경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회장이 시행세칙에 의해 적용 배제 대상 펀드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모펀드는 제외하고 있으며,
  - 그 밖에 단독 판매사 펀드, 역외펀드, MMF, 판매보수이연(CDSC)펀드, 엠브렐러 펀드와 조세특례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고수익고위험펀드·장기비과세펀드 등은 제외됨(동 규정 시행세칙 40-1조)

#### □ 펀드 판매회사의 변경의무 (4-113조 : 2010/1/25 개정·시행)

- 펀드 판매회사는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된 모든 펀드에 대하여 변경 판매회사 또는 변경대상판매회사가 되어야 함

- 변경판매회사 :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하기 전 펀드를 판매한 판매회사
  - 변경대상판매회사 : 투자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77조 1항 5호)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 판매회사
-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 변경을 요청한 경우 변경판매회사 및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펀드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함
-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펀드가 i)결산일 또는 결산일 이전 1영업일인 경우, ii)압류, 가압류 등 투자자의 권리행사에 제약이 있는 경우, iii) 일부 좌(주)에 대하여만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iv)변경대상판매회사가 해당 펀드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vi) 변경대상판매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불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v)기타 협회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됨

□ 펀드 변경절차 (4-114조 : 2010/1/25 개정 · 시행)

-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 변경하고자 할 경우, 최초 판매회사에서 계좌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변경을 원하는 판매회사에서 변경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변경을 신청함
- 변경판매회사 :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의 변경을 위하여 해당 펀드의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계좌정보확인서의 발급의무를 부담
  - 변경대상판매회사 : 투자자가 변경판매회사로부터 발급한 계좌정보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해당 펀드를 거래할 수 있는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펀드 판매회사 변경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야 함

□ 펀드 판매회사의 변경 수수료 징수 금지

(4-115조 : 2010/1/25 개정 · 시행)

- 펀드 판매회사는 판매회사 변경의 절차를 이행하는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징구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펀드 판매회사의 환매수수료의 징수 금지

(4-116조 : 2010/1/25 개정 · 시행)

- 펀드 판매회사의 변경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환매수수료를 징구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판매회사를 변경한 펀드의 환매수수료 면제를 위한 기산일은 해당 펀드의 최초 가입일로부터 계산

□ 변경대상 펀드의 수수료 등에 관한 자료 보고 의무

(4-117조 : 2010/1/25 개정 · 시행)

- 신규 판매 또는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판매회사 변경대상 펀드의 수수료율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매회사에 대한 관련 자료 협회 제출을 의무화함
  - 투자자가 판매회사별 수수료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 주요 매체별 투자광고 위험고지 표시기준 구체화

(2-37조 5항 : 2010/1/29 개정, 2/4 시행)

- TV·신문·잡지 등 주요 매체별로 이루어지는 투자광고에 대해 위험고지문구의 가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매체별 특성에 따른 표시기준을 구체화함
- TV의 위험고지 표시기준
  - 방영시간 : 1/3이상, 화면면적 : 1/5이상
- 신문의 위험고지 표시기준 세분화
  - 4단 이하 : 8point
  - 4단 초과 : 9point
  - 전면 : 10point

— 잡지의 위험고지 표시기준

- 종래 A4기준 "7point"를 "8point"로 강화

□ 집합투자기구의 적립식투자 수익률 표시기준 신설

(2-40조 5항 : 2010/1/29 개정 · 시행)

-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시 집합투자기구의 적립식 투자에 따른 수익률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거치식펀드의 수익률 개념인 "운용실적"과 구별되는 적립식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수익률 표시기준으로 "적립식수익률"을 별도로 마련함
-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그 운용규모가 200억 원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적립식투자상품에 대해 과거 3년 이상의 적립식수익률을 표시하도록 함
  - 매월 첫 영업일에 일정금액의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적립과 기간말 영업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 수익률을 사용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보수·수수료가 차감된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으로 평가한 수익률을 사용

□ 펀드 판매회사 변경에 따른 이익제공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2-8조 4항, 2-68조 1항 9호 : 2010/1/29 개정 · 시행)

-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의 시행(2010/1/25 시행)으로 판매회사간 타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과도한 재산상 이익 제공 및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등의 불건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규정을 마련함
- 펀드 판매회사 변경 또는 변경에 따른 이동액을 조건으로 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를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로 규정함
  - 펀드 판매회사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의 제한적 금지
- 집합투자증권 판매시 펀드 판매회사의 변경제도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함

- 펀드 판매회사는 부당하게 다른 판매회사의 고객을 유인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직원 또는 투자대행권유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됨

□ CMA 투자권유대행인 자격 단일화

(2-17조 2호, 2-18조 1호~2호 : 2010/1/29 개정, 2/4 시행)

-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 제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의 CMA 투자권유자격을 “증권투자권유대행인”으로 단일화함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 개정(2009/12/1 개정, 2010/2/4 시행)되어 CMA 투자권유시 그 투자형태에 따라 증권투자상담사(RP형)와 증권펀드투자상담사(MMF형)로 구분되던 자격이 증권투자상담사로 일원화됨(동 규정 1-4조 2호)

□ 금융투자권유대행인 자격 및 시험 요건

(2-18조 3호 : 2010/1/29 개정, 2/4 시행)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 개정(2009/12/1 개정, 2010/2/4 시행)되어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 및 시험이 투자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로 통합(동 규정 1-4조 5호)됨에 따라,
  - 금융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및 시험 요건도 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로 일원화 함

□ 금융투자분석사 정의 명확화

(2-25조 2호 : 2010/1/29 개정, 2/4 시행)

- 금융투자분석사의 정의를 “조사분석 자료를 작성·심사·승인하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함

□ 신용 파생결합증권 관련 위험고지

(2-5조 2항, 별표 6-1 : 2010/2/26 개정, 3/8 시행)

- 종래에는 신용 파생결합증권과 관련된 위험고지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자자가 상품의 구조 및 투자 위험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 금융투자업자가 신용 파생결합증권에 관한 영업을 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는 위험고지의 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금융투자협회에서 마련한 위험고지에 관한 투자설명서(별표 6-1)는 신용 파생결합증권의 상품 구조, 신용사건 및 신용사건 발생의 정의 및 범위, 중도환매에 관한 사항 등을 위험고지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금융투자회사는 이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위험고지 내용을 정할 수 있음

□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정의 및 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신설

(7-2조, 7편 9장 : 2010/2/26 개정, 4/1 시행)

- 협회의 호가집중시스템(BQS)과 메신저 기능을 통합하여 종래의 사설메신저를 대체하는 정형화된 거래 플랫폼인 장외채권거래전용시스템(FreeBond)의 구축 및 이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함
-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의 정의 규정 신설
  - 채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전자시스템

□ 시스템의 지원범위 명시 (7-33조 : 2010/2/26 개정, 4/1 시행)

-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은 채권 장외거래 또는 장외거래중개 업무를 위한 호가정보 등의 탐색 및 거래상대방과의 협상 등을 지원함
  - 단, 거래의 체결 및 결제는 지원하지 않음

□ 시스템 이용자의 신고·등록제 도입

(7-2조 9호, 7-34조 : 2010/2/26 개정, 4/1 시행)

- FreeBond는 채권거래자만을 위한 전용 거래시스템이므로, 시스템 이용자는 채권거래인력으로 제한됨
  - 채권거래인력 : 금융투자회사에서 채권의 장외거래 또는 장외거래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시스템 이용자는 개별적으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시스템 이용자를 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 시스템 이용자를 제한함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채권 거래자에 특화된 기능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함

□ FreeBond를 통한 호가정보 보고의 일원화

(7-3조 1항, 7-35조, 부칙 1조 단서 : 2010/2/26 개정, 7/1 시행)

-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채권의 장외거래와 관련된 모든 호가정보를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을 통해서 협회에 보고하도록 일원화함
- 다만,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가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을 통해 거래상대방과 호가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협회에 대해 호가정보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일방의 호가정보 제공도 호가정보 교환에 포함

□ 협회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7-36조 : 2010/2/26 개정, 4/1 시행)

- 협회는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스템 이용자의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당해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금융투자회사 투자광고시 명예훼손성 표시행위 금지

(2-38조 : 2010/3/26 개정 · 시행)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를 할 경우 사진·문자·그림 등을 이용하여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광고 금지행위로 추가함
  - 법적 분쟁의 사전예방 및 투자광고의 신뢰도 제고

□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범위 확대 (2-85조 : 2010/4/30 개정 · 시행)

- 배타적 사용권 부여 대상인 신상품의 범위를 금융투자상품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확대함
  -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CMA, Wrap Account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속하지 않은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부여 가능

□ 신상품심의위원 의결정족수의 명확화

(2-89조 1항 : 2010/4/30 개정 · 시행)

-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신상품 여부 등을 심의하는데 있어,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에 의결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소규모펀드의 운용실적 비교 공시 규정 마련

(4-80조 1항 6호 : 2010/6/13 개정 · 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2010/6/11 개정, 6/13 시행)하여 소규모펀드의 운용실적을 비교·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펀드의 수익률과 관련하여 50억원을 기준으로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 펀드, 리츠 등 1인 단독 매수자가 확정된 경우 관리형토지신탁의 선지급기준 예외사유로 추가 (별표15 : 2010/6/25 개정, 7/1 시행)

- 오피스, 물류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개발시 펀드, 리츠 등 1인 단독 매수자가 확정된 경우에는 시공(BBB0이상)의 책임 준공 약정이 체결된 경우로서, 위탁자 및 시공사의 요청과 매수자의 동의를 있으면 관리형토지신탁의 신탁 종료 전 선지급 예외 사유로 인정함
  - 다만, 1인 단독매수자의 중도해지 리스크를 고려하여, 신탁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매수자 일방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매수자가 중도금을 납입한 이후에 한함

□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양도담보 금지

(별표15 : 2010/6/25 개정, 7/1 시행)

-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신탁사업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신탁재산을 구성하는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 양도담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관리형 및 차입형 토지신탁 모두 적용

□ 애널리스트 및 리포트 관련 정보 공시 (2010/7/23 개정, 8/9 시행)

- 애널리스트 관련 공시시스템 구축
  - 금융투자협회가 보유중인 전문인력 DB를 활용, 애널리스트 관련 공시시스템 구축
  - 공시항목: 성명, 협회등록번호, 현소속증권사명, 근무경력(총경력, 회사별근무기간), 증권사별 애널리스트 현황(총인원수) 등
- 리포트 관련 공시시스템 구축
  - 개별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리포트 관련 공시시스템 구축
  - 공시항목: 제목, 분석대상회사명, 작성애널리스트성명, 리포트공표일자, 주요 내용(투자의견, 목표주가 등), 원문 사본
- 애널리스트 및 리포트 공시시스템 간 상호 연결
  - 금융투자협회 애널리스트 공시시스템과 개별 증권회사 리포트 공시시스템의 연계로 투자자 편의성 제고

- 일반 ELW 거래설명서에 조기종료 ELW 정의, 조기종료 발생과 관련된 투자유의사항, 조기종료 여부 확인방법 등을 규정

(2010/9/2 개정, 9/6 시행)

- 매매거래정지 시점과 실제 조기종료 시점 간 차이로 인한 위험, 시가단일가격이 결정된 직후 조기종료가 발생할 위험, KOSPI 200 주가지수 산출 시점, 조기종료발생 기준가격 부근에서의 가격 급변에 대한 위험성 등을 기재하여 투자자 보호 제고

-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에서 미니금선물의 기초자산, 거래단위, 거래수량단위, 결제월 및 거래기간, 호가가격단위와 가격표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거래시간을 규정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III. D. 일반상품거래 편 : 2010/9/2 개정, 9/6 시행)

- 순도 99.99%의 금괴로 거래단위는 100g, 거래수량단위는 가격에 거래승수(1백)를 곱한 금액의 1계약, 거래시간은 9:00~15:15, 결제월, 거래기간, 호가가격단위, 가격표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은 금선물과 동일함

- 전문투자자 신청 시 적용되는 요건 중 잔고증명 및 개인투자자의 계좌개설요건을 수정하고 실명확인증표 범위 확대

(2-12조 : 2010/9/17 개정, 9/20 시행)

-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의 잔고요건을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로 개정

- 전문투자자 지정 시 적용되는 잔고증명은 자본시장법 시행령(10조 3항)과 금융투자업규정(1-8조 2항)에 의하면 국내외 금융기관의 예치 잔고를 의미하나 개정 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는 해외 기관 예치분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규정 간 불일치 야기

- 외국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금융투자회사에 1년 이상의 계좌개설의무를 부여하도록 개정
- 신분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로 주민등록증, 여권 사본 이외에도 성명, 주민번호, 사진에 의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표로 신분증 범위를 확대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펀드 판매 창구의 구분 및 표시 조항 신설  
(2-8조의2 1항 : 2010/10/15 개정, 10/25 시행)

- 펀드 판매사 영업점의 펀드 판매 창구를 자금입출 등을 취급하는 통상적 창구와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도록 함(표준준칙 16조 1항에서 이관)
  - 펀드 판매 창구를 통해 적합한 판매자격을 보유한 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입출금 또는 예금 창구 등에서 부적절한 펀드투자권유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
  - 특히, 겸영금융투자업자(특히 은행)의 경우에는 예금 등 원본보장상품을 판매하는 창구와 분리되므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펀드 판매회사 및 임직원의 펀드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금지 행위 사항 신설

(2-8조 7호~9호 : 2010/10/15 개정, 10/25 시행)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모로 발행되는 펀드의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표준준칙 18조3항에서 이관)
- 펀드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을 회사나 제3자에게 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거래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표준준칙 21조 2호~3호에서 이관)
- 투자자로부터 펀드 취득자금 수취와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표준준칙 20조에서 이관)
  - 임직원 이외의 자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 판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거나, 회사 또는 임직원이 선납하는 행위
- 자금의 실제 납입 전에 납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하는 행위

□ 펀드를 다른 금융투자상품 등과 연계하여 판매할 경우 준수 사항 신설 (2-8조의2 2항 : 2010/10/15 개정, 10/25 시행)

- 펀드 연계 판매가 위법 행위에 해당되거나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펀드투자상담사가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에게 부당한 환매 제약을 가하지 않고, 실적배당원칙이 훼손되지 않아야 함(표준준칙 19조에서 이관)

□ 펀드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해피콜 제도 관련 조항 신설 (2-8조의2 3항~5항 : 2010/10/15 개정, 10/25 시행)

- 펀드 판매후 7영업일 이내에 해당 판매가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자신이 마련한 투자권유준칙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판매되었는지를 고객으로부터 확인(해피콜)받아야 함(표준준칙 18조 1항에서 이관)
  - 단, 인력현황 및 판매건수를 감안하여 확인 대상 고객 중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할 수 있음
- 해피콜 결과는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함(표준준칙 18조 2항에서 이관)
- 임직원 등의 펀드판매실적을 평가할 때 관계법규등의 준수 및 민원발생 여부를 반영하도록 함(표준준칙 18조 4항에서 이관)

□ 펀드 온라인 판매시 적합성원칙 구현 절차 마련하도록 조항 신설 (2-8조의2 6항 : 2010/10/15 개정, 10/25 시행)

- 온라인으로 펀드를 판매할 경우 적합성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투자자가 원할 경우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표준준칙 18조 5항에서 이관)

- 온라인을 통한 펀드 거래시 일반투자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투자의 적합성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함

□ 일중매매거래 및 시스템매매 위험고지서 개정

(별표7·별표8 : 2010/10/15 개정, 10/25 시행)

- 판매를 간소화하고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위험고지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수정함
  - 현행 일중매매거래위험고지서(별표7) 및 시스템매매위험고지서(별표8)는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 투자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문제가 있음

□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삭제

(별지 1호 : 2010/10/15 개정, 10/25 시행)

-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삭제하여 투자자가 확실적인 정보가 아닌 회사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투자자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할 것을 유도
  - 현행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별지 1호)는 (구)표준준칙의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와 중복된 서식임
  - 표준준칙 개정('01.8.27)으로 표준준칙에서는 투자자정보 확인 항목들의 예시를 제공하고, 회사가 예시를 참고하여 회사 특성에 맞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되었음

□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와 관련한 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관련 조항 변경 (2-5조 2항 : 2010/10/15 개정, 10/25 시행)

-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 방법에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포함하도록 확대함
  - 현행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는 서명 및 기명날인으로만 가능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설명서의 수령 거부 방법이 확대되어 관련 내용(시행령 132조 2항)을 반영함

□ 장·단기 국채선물 거래제도가 일치하도록 「장내파생상품거래설명서」의 상품명세, 거래제도 및 결제제도를 변경

(별표1 : 2010/10/21 개정, 10/25 시행)

— 장내파생상품거래설명서 'III-2. 거래상품 주요 내용'의 'B.금리상품 거래', 'E.선물스프레드거래'와 'III-3.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개요' 부분을 변경함

- 표면금리: '연 5%'로 통일
- 거래단위: '액면 1억원'으로 통일
- 결제월: 결제월수를 '2개'로, 각 결제월의 최장거래기간은 '6개월'로 통일
- 호가가격단위: '0.01'로 통일
- 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T+1)'로 통일
- 최종결제방법: '현금결제'로 통일

**<부록 표-4> 국채선물 거래 및 결제제도 변경 내용**

구 분	현행 제도		개선안
	3·5년 국채선물	10년 국채선물	모든 국채선물
결제방식	현금결제	실물인수도	현금결제
거래단위	1억원	5천만원	1억원
표면금리	연 8%	연 5%	연 5%
결제월	6개월 이내 2개	9개월 이내 3개	6개월 이내 2개
호가단위	0.01	0.02	0.01
최종결제일	T+1	T+2	T+1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주식워런트증권 매매시 별도 신청서 징구 및 사전교육 확인하여야 함

(2-5조 5항~6항 : 2010/11/19 개정, 2011/2/1 시행)

- 금융투자회사는 최초로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일반투자자로부터 위탁계좌 거래신청서와 별도로 ELW 서면 거래신청서를 징구하여야 함
  - 별도의 ELW 서면 거래신청서를 대신하여 온라인상의 공인인증 후 전자문서를 통한 거래신청서 작성 가능
- 금융투자회사는 주식워런트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함
  - 사전 교육은 주식워런트증권의 투자설명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며 투자자교육협의회에서 1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실시
  - 해당 투자자가 법인이나 단체 혹은 외국인 경우에는 사전 교육 대상에서 제외
- 본 규정은 시행일 이전 주식워런트증권 매매 유경험자로서 투자자 정보에 근거하여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투자자에 대하여는 2011년 6월 1일부터 적용
  - 본 규정 시행시 주식워런트증권 매매 유경험자로서 투자자 정보에 근거하여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자 혹은 시행 전 이미 보유한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도하려는 투자자에게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 시스템 이용자의 신고 방법

(46조 1항, 별지 30호 : 2010/2/26 개정, 4/1 시행)

-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시스템을 이용자를 협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7-34조 1항),
- 시스템 이용자 신고를 위한 신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 최종호가수익률 보고회사 선정시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의 이용실적 반영 근거 마련 (51조 : 2010/2/26 개정, 4/1 시행)

— 최종호가수익률 공시와 관련하여 협회가 수익률을 보고해야 하는 금융투자회사를 지정하는데 있어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의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실적도 감안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협회는 최종호가수익률을 전산매매 등을 통해 공시하며 이와 관련하여 매 6월마다 수익률 보고의무를 지는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를 지정함

□ 소규모펀드의 수시공시 서식 마련

(17조, 별지 8호 : 2010/6/13 개정 · 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2010/6/11 개정, 6/13 시행)하여 소규모펀드에 대해 수시공시 하도록 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수시공시 서식을 마련함

- 소규모펀드(1년)여부 공시,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 처리방안결정 사실(방법)공시

□ 증권사 신용공여 이자율 현황 입수에 필요한 서식 마련

(56조 3항 9호, 별지52호 : 2010/6/21 개정 · 시행)

— 증권사별 신용공여 이자율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공시를 위해 해당 이자율 입수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 서식 규정을 마련함

- 금융회사는 신용공여 중 신용거래용자와 예탁증권담보용자의 이자율 현황을 제출하고, 이자율은 기간별, 고객등급별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펀드별 투자운용 인력정보 추가

(별지 제8호 : 2010/8/3 개정, 8/9 시행)

— 제1호 서식 운용전문인력정보: 책임매니저 여부(Y/N) 추가

□ 판매사 변경대상 적용펀드 확대

(41-1조 6호 : 2010/7/30 개정, 8/30 시행)

- 1단계 시행 시 제외되었던 온라인전용펀드(e-class), 온라인 상으로 판매되는 모든 펀드 등 온라인 판매펀드를 변경제도에 포함시킴

□ 판매회사 변경절차 개선

(40-3조 1호~2호 : 2010/7/30 개정, 8/30 시행)

- 판매사 변경을 위한 이수판매사 계좌확인서접수를 지점방문 및 온라인 상 모두 가능토록 판매사변경신청 절차 개선

□ 채권형펀드 분류기준 일부 개정

(별지 제15호 : 2010/7/1 개정·시행)

- 집합투자기구 분류 > 집합투자기구 종류 > 채권형(MMF제외): 문구 추가
  -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을 채권 및 채권관련파생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 다만, 증권집합투자기구가 100분의 60이상을 국채, 통안채로 구성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 「별지 제8호 (제1호 서식) 운용전문인력 변경 (2) 전산파일 작성양식」에 해당펀드 책임매니저 여부(Y/N)를 추가

(2010/8/3 개정, 8/9 시행)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의 '특수채' 항목 중 '공사채 및 공단체' 란에 정금채를 추가 (별지 제44호 : 2010/12/30 개정, 2011/2/7 시행)

- 금융투자협회가 시장정보의 안정적 제공의 위해 2009년 11월부터 채권평가회사로부터 받아 공표해 온 시가평가기준수익률에서 정책 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정금채)의 수익률 정보에 대한 시장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서식을 개정

### 3.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심의기준

-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범위를 금융상품 이외에 서비스로 확대  
(2조 1항 3호~4호, 별지 1호 가~나, 별지 2호~4호 : 2010/5/13 개정·시행)

- 배타적 사용권 부여 대상인 신상품의 범위를 금융투자상품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확대함
  -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CMA, Wrap Account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속하지 않은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부여 가능

-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위한 서식 개선

(별지 1호~4호 : 2010/5/13 개정·시행)

-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위해 회사가 제출하는 서류 중 '신상품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식을 마련함

### 4.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부동산PF ABCP 매입보장약정 심사 및 승인요건 강화

(6조 2항 4호 : 2010/5/17 개정·시행)

- 부동산PF ABCP 매입보장약정에 대한 승인을 위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 시공사의 지급보증 여부와 신용평가회사의 ABCP 신용평가 등급 이외에도 금융투자회사의 고유위험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포함하도록 함
  - 금융투자회사 고유위험에 관한 자체 사업성 분석은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현금흐름 등을 고려함

□ 해외 부동산PF 관련 심사요건 강화

(6조 2항 3호 : 2010/5/17 개정 · 시행)

- 해외 부동산PF와 관련한 심사 및 승인시 포함되어야 하는 적격성 심사기준을 마련함
  - 시공사의 재무건전성 : 신용등급 BBB+ 이상, 자기자본대비 PF 익스포져 3배 이내 등
  - 시행사의 시행능력 : 사업주체로서의 독립성, 자금조달의 안정성, 부동산 개발 전문성 등

## 5.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절차를 개선

(17조2 2항~4항 : 2010/8/20 개정 · 시행)

- 대표주관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명칭, 해당 사유 등 관련 사항을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를 지정
  - 자율규제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됨에 따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근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는 사실 확인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게 됨

- 자율규제위원회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에 따른 결과 및 해당 위규사유 등을 고려하여 지정 결정 대신 협회 정관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고 공모주식 배정을 금지하는 기산점을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이 아닌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일로 변경

□ 의무보유기간 확약 준수에 대한 판단에 있어 해당기간 중의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규정

(17조의2 1항 2호 : 2010/8/20 개정 · 시행)

- 대표주관회사가 확약기간(통상 15일~30일) 종료일의 잔고증명서를 통해 의무보유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현 규정은 상당수 기관들이 확약기간 내에 공모주를 처분한 뒤 종료일에 잔고를 채우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해당 의무보유기간 내의 보유주식 처분 여부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기관들에 대한 의무보유확약 실질적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 발생

□ 채권발행을 위한 주관회사는 실적 공시와 관련하여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에 '표준무보증사채수탁계약서' 사본을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18조, 별지 제3호 서식 : 2010/11/30 개정, 12/1 시행)

- 금융투자협회는 주관회사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투자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쉽고 편리하게 '표준무보증사채수탁계약서'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음

## 6.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 금융투자협회가 인정하는 신분증을 다음과 같이 추가

(2010/7/23 개정, 7/23 시행)

-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및 신분확인증명서, 군인의 경우 장교·부사관신분증, 군복무확인서 및 신분확인서,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등을 금융투자협회가 인정하는 신분증으로 추가
- 주민등록증 분실 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
  - 이 경우, 신분증, 증명서에는 사진이 부착되고 발급기관장의 직인이 있는 것에 한함

### □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의 문항구성을 변경

(별표 3-1 : 2010/10/15 개정, 2011/1/1 시행)

- 제3과목 부동산펀드 문항 수를 10문항 축소하여 '15문항'으로, 제1과목 펀드일반의 문항 수는 10문항 확대하여 '60문항'으로 변경함
  - 현행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은 총 100문항으로, 제1과목 펀드일반 50문항, 제2과목 파생상품펀드 25문항, 제3과목 부동산펀드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10. 9월 현재 펀드별 설정 규모를 살펴보면 총 펀드수 대비 증권펀드 61.2%, 파생상품펀드 27.4%, 부동산펀드 3.4%로 증권펀드의 비율이 가장 높고, 부동산펀드의 비율이 가장 낮음
  - 부동산펀드는 설정된 총 펀드 수 대비 3.4%, 총 설정원본 대비 3.7%에 불과하나 시험문항 비중이 25%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펀드 규모를 고려하여 부동산펀드 문항 수를 축소하고 펀드일반 문항수를 확대함
  - 개정 후 부동산펀드 과목은 부동산펀드 법규 2문항, 부동산펀드 영업 6문항, 부동산펀드 투자·리스크관리 7문항으로 구성됨
  - 개정 후 펀드일반 과목은 법규 12문항, 직문 윤리 및 투자자분쟁예방 10문항, 펀드영업실무 10문항, 펀드 구성·이행 18문항, 펀드 운용·평가 10문항으로 구성됨

**<부록 표-5> 펀드별 설정 규모**

구분	펀드		공모펀드		설정원본	
	개	%	개	%	조원	%
증권펀드	5,603	61.2	3,020	81.3	270	82.3
파생상품펀드	2,502	27.4	431	11.6	19	5.8
부동산펀드	307	3.4	7	0.2	12	3.7
기타	736	8.0	257	6.9	27	8.2
계	9,148	100	3,715	100	328	100

## 7.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관한 규정

### □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3조, 7조, 8조 : 2010/6/9 개정, 6/13 시행)

- 위원회는 위원장 및 관련기관 추천위원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관련기관 :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중앙회, 은행연합회, 파생상품학회, 금융투자협회
- 의결사항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 사전심의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전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본 규정은 자본시장법(2010/3/12 개정, 6/13 시행)에 따라 설치된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 사전심의 대상 장외파생상품 (14조 : 2010/6/9 개정, 6/13 시행)

- 전문투자자 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 및 자연 등 파생상품
- 일반투자자 대상 파생상품

□ 사전심의 대상 제외 장외파생상품

(15조 : 2010/6/9 개정, 6/13 시행)

- 일반투자자 대상 장외파생상품
  -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과 상품구조는 동일하나 기초자산(해당 기초자산을 지수화한 것을 포함한다)이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 일정한 어느 하나의 기초자산분류 내에서 변경된 경우
  -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과 기초자산은 동일하나 상품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약기간, 계약금액, 행사가격 등에 해당하는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에서 기초자산은 일정한 기초자산분류 내에서 변경되고 계약조건은 상품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된 경우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과 준거기업, 신용사건의 범위 및 준거채무의 범위는 동일하나 그 외의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 전문투자자 대상 장외파생상품
  - 기초자산은 동일하고 상품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 신용상품의 경우 준거기업의 신용등급이 AA등급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이 규정 시행 이후 사전심의를 받은 상품
  -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거래한 기존상품과 기초자산은 동일하나 상품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사전심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투자회사간의 거래

- 제3의 기관이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심의받은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 가격정보 제공자인 금융투자회사가 심의받은 상품을 해당 금융투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거래당사자인 금융투자회사에게 심의의무가 없는 장외파생거래를 투자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 약식심의 (17조 : 2010/6/9 개정, 6/13 시행)

- 일정한 장외파생상품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사전심의하고, 해당 사전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이 규정 시행 이후 사전심의를 받은 상품과 동일한 상품
  -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이 규정 시행 이후 사전심의를 받은 상품 중 심의대상 제외에 해당(15조 1항·2항)하는 변경만 있는 경우

□ 사전심의를 기준 (22조 : 2010/6/9 개정, 6/13 시행)

- 전문투자자 대상상품은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성'을 심의사항으로 하고 그 밖에 세부 심의기준을 별도로 마련함
- i)주기적·지속적 제공 가능성, ii)제3의 기관이 가격정보 제공시 다수 시장참여자로부터 받은 호가인지 여부, 제공기관의 독립성 및 객관성, 거래당사자의 접근 용이성, iii)금융투자회사가 직접·산출 제공시 가격산출 방법의 객관성 및 합리성, 가격산출방법의 내부통제절차 여부 등, iv)신용상품의 경우 준거기업 또는 준거채무의 신용등급정보 등의 제공 가능성
- 일반투자자 대상 파생상품은 '위험회피 구조의 타당성, 설명자료의 충실성, 판매계획의 적정성'을 심의사항으로 함

법상 심의사항	세부 심의기준
위험회피 구조의 타당성	i) 위험회피대상과 기초자산의 일치성 ii) 위험회피의 방향 및 크기 iii) 특정 계약조건의 적정성
설명자료의 충실성	i)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변동 내용 설명 ii) 구간별 손익구조 설명 iii) 특정조건에 따른 위험설명 등
판매계획의 적정성	i) 투자권유인력의 자격여부 ii) 판매교육의 적절성 iii) 판매절차의 적정성 등

□ 사전심의기간 (23조 : 2010/6/9 개정, 6/13 시행)

-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후 도래하는 위원회의 정기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함
  - 10영업일 이전 안건 부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간 단축 가능
- 약식심의를 5영업일 이내에 심의하되, 전문투자자 대상상품은 3영업일 이내에 심의함

## 8.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 중요사항 변경시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6조 2항·8조 3항,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12조 2항·19조 2항,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4조 3항·10조 2항 : 2010/6/25 개정, 7/5 시행)

- 중요사항 변경시 고객에 대한 사전 통지를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 중요한 변경내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등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명시적으로 통지받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통지 생략이 가능함

□ 수탁거부사유의 서면고지 의무

(과생상품계좌설정약관 5조 4항 : 2010/6/25 개정, 7/5 시행)

- 회사의 임의적 수탁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신용상태 및 재산상태 등의 수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고지하고 해당 거부사유 발생시에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추가예탁시한 변경시 서면고지 의무 부과

(과생상품계좌설정약관 9조 4항 : 2010/6/25 개정, 7/5 시행)

-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신용상태 등에 비추어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기고자 할 경우, 회사는 계약체결시에 서면으로 고객에게 고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함

□ 외화증권매매거래자인 고객자산 인출 제한·거부 사유 축소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2조 5항 : 2010/6/25 개정, 7/5 시행)

- 종래 동일하게 정해져 있던 '주문의 수탁 제한·거부 사유' 및 '고객 자산의 인출 제한·거부 사유'를 명확히 구별하여 규정함
  - 회사는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고객의 과거 거래내역, 보유 외화증권의 규모 및 재무상황에 비추어 매매거래결제의 불이행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결제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출의 제한 또는 거부가 가능함

□ 전자금융거래의 공인인증서·일회용비밀번호 사용 원칙의 예외 사유 추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12조 : 2010/6/25 개정, 7/5 시행)

- 원칙적으로는 공인인증서·일회용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으로 그 예외사유를 추가함에 따라, 약관에도 해당 예외사유를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의 10년 국채선물 최종결제방법 변경

(별표2의 24 : 2010/10/25 개정·시행)

- 10년 국채선물의 결제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종결제방법을 ‘실물인수도’ 방식에서 ‘현금결제’ 방식으로 변경한 개정내용을 약관에 반영하여 실물인수도 결제규정을 삭제하고, 금리선물거래의 현금결제조항을 신설함
  - 현행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서는 10년 국채선물거래의 최종결제방법으로 실물인수도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음

**<부록 표-6> 만기별 국채선물의 최종결제방법**

구분	3년 국채선물	5년 국채선물	10년 국채선물
최종결제방법	현금결제	현금결제	(기존)실물인수도→(개정)현금결제

## 9.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 기준

□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 기준의 적용대상

(1.3조 1항~2항 : 2010/9/1 제정, 2011/1/1 시행)

- 적용대상은 투자자예탁금을 제외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투자중개·매매업자임(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 집합투자업자 등은 적용 제외)
- 콜머니 등 초단기 무담보차입 관리(제2.5.3조)의 경우에는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중개·매매업자가 적용대상이 됨

□ 이사회등은 역할 및 책임

(1.5조, 2.2조 : 2010/9/1 제정, 2011/1/1 시행)

-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지휘·통제권과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경영진이 마련한 유동성리스크 관리 전략, 정책 및 한도를 승인하며, 유동성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야 함

□ 유동성리스크 내부통제 (2.3조 : 2010/9/1 제정, 2011/1/1 시행)

-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부서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적정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직원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내부통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유동성리스크 측정 및 운용

(2.4.1조, 2.4.2조 : 2010/9/1 제정, 2011/1/1 시행)

- 지급보증 등 부외항목, 파생상품으로 인한 현금흐름 등 파악가능한 모든 주요 현금흐름을 반영하여 유동성리스크를 측정하고, 단기 유동성비율(1개월, 3개월)을 100% 이상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용하여야 함

□ 유동성리스크 관련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2.4.3조 : 2010/9/1 제정, 2011/1/1 시행)

- 회사는 보유 자산을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 반기 1회 이상 유동성 위기상황 분석(stress test)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 유동성리스크와 관련하여 회사의 자산 보유 및 자금조달구조

(2.5.1조, 2.5.2조, 2.5.3조 : 2010/9/1 제정, 2011/1/1 시행)

- 회사는 양질의 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거래상대방, 부채만기, 자금조달수단 등을 다변화하여 적절하게 분산된 자금조달구조를 갖추어야 함
- 자금조달다변화의 일환으로 이사회등의 승인을 얻어 콜머니 등 무담보차입에 대하여 한도를 설정·운영 하도록 하고, 자기자본 100% 내에서 일별 콜머니한도를 설정·운영
  - 자기자본이란 최근 분기말 자기자본으로 증자·감자 등 자본금 증감사유발생시 이를 반영할 수 있음
  - 본 규정은 2010. 10. 1부터 최대 허용한도를 준수하여야 하나 2010. 10. 1부터 2011. 3. 31. 까지는 부득이한 경우 일별 콜머니가 자기자본 10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기간의 일별 콜머니 평균 잔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함

□ 유동성리스크 관련하여 유동성 관리

(2.5.4조, 2.5.5.조, 2.5.6조, 2.8조 : 2010/9/1 제정, 2011/1/1 시행)

- 허용한도,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단계별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며, 매일의 지급결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일중(intraday) 유동성을 관리하여야 함

## 10. 연계신용 리스크 관리등을 위한 모범 기준

- 보유불가종목과 관련하여 반대매매사유를 설정하는 경우 약관 또는 핵심설명서를 통해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개별적인 동의를 얻도록 하였음 (2010/8/19 개정, 2011/1/3 시행)
  - 현재 업계 사용 약관은 회사가 임의로 반대매매사유(연계신용으로 취득한 종목이 관리종목편입, 거래정지예정 등 투자위험성이 과도하거나 담보평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당일 장 종료시 최저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SMS 등으로 담보의 추가납부를 최고하고, 고객이 기간 내 추가납부 미이행 시 반대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함 (2010/8/19 개정, 2011/1/3 시행)
  - 현재 업계 사용 약관은 장중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담보충당 기회를 부여함 없이 실시간 매도하였음
    - 담보비율은 (계좌내 담보평가금/대출원금) ×100%로서 연계신용의 경우 회사별 통상 115%~120% 수준으로 설정됨
  - 개정안에 따라 증권회사는 장 종료 이후 증가기준으로 연계신용계좌별로 담보유지비율을 산정, 최저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한 고객에게 지체없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여야 함
  
- 반대매매 사유발생 후 고객이 담보물 미충당시 그 다음날 시장개시 동시호가(9:00)에 담보가치 부족분 해소에 필요한 수량만큼 처분하도록 함 (2010/8/19 개정, 2011/1/3 시행)
  - 현재 반대매매 사유발생 즉시 전량 반대매매를 하였음
  - 증권회사는 상이한 최저담보유지비율에 따라 반대매매 시기를 각각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시기는 사유 발생 후 익일 이상이어야 함

— 담보가치 부족에 따른 반대매매 순서 등은 계약체결 시 고객에게 약관 또는 핵심설명서등을 통해 미리 고지하여야 함

□ 반대매매 처분당일 오전 담보물 충당에 대하여 추가로 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안내를 실시하도록 함

(2010/8/19 개정, 2011/1/3 시행)

— 기존 모범규준에는 담보비율 하락 시 2회, 반대매매 처리 후 1회 고객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담보물 충당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데 미흡하였음

□ 증권회사에 대하여 연계신용서비스 이용약관의 제정하고 이를 협회에 신고할 것을 모범규준에 명시적으로 규정

(2010/8/19 개정, 2011/1/3 시행)

— 그동안 연계신용서비스 이용 약관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회사들이 다수였으며, 약관의 부존재로 인해 고객이 연계신용과 관련하여 증권회사에 대한 권리·의무를 파악이 어려웠음

**<부록 표-7> 반대매매 관련 개정 모범규준 비교**

반대매매요건	연계신용 이용약관		신용거래 표준약관
	현재 이용 중인 약관	개정 모범규준	
발생사유	1. 최저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2. 회사 임의로 정한 보유제한종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최저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2. 고객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 설정한 보유불가종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보유제한 종목은 해당사항 없음)
절차	담보유지비율 하락 시 고객에게 SMS 안내 제공	반대매매 사유 발생 이후 담보물 추가납부를 위한 최고 절차 실시	반대매매 사유 발생 이후 담보물 추가납부를 위한 최고 절차 실시
범위	보유 주식 전량 반대매매	담보 부족분 해소에 필요한 수량 반대매매	담보 부족분 해소에 필요한 수량 반대매매
시기	반대매매 사유 발생 당일 실시간 처분	반대매매 사유 발생 후 익일 동시호가 처분	반대매매 사유 발생 후 익일 동시호가 처분

## 11. 표준투자권유준칙

회사 자율적으로 투자자성향을 유형화하도록 함

(8조, 참고1 : 2010/8/27 개정 · 시행)

— 투자자성향 파악을 위한 배점기준 등을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5단계 구분(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외 회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그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예를 들어 7단계(공격투자형, 주식선호형, 주식편드선호형, 고수익채권형, 혼합투자형, 안정투자선호형, 이자소득형), 4단계(파생상품형, 주식선호형, 성장형, 이자·배당형), 5단계(위험선호형, 적극형, 성장형, 안정성장형, 위험회피형) 등

□ 투자자 보호에 따른 투자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별도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 (8조 : 2010/8/27 개정·시행)

- 저위험 상품인 CMA, MMF, RP 또는 국채 등만을 거래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만을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자정보의 파악 및 관리 절차를 합리화

(8조, 9조 : 2010/8/27 개정·시행)

- 대리인이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된 위임장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에 투자자 정보 유효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단하는 방식에 있어 투자성향 점수화(scoring)방식에 국한되었던 것을 다양화하여 추출(factor-out)방식, 혼합방식, 상담방식을 제시 (10조, 참고 4 : 2010/8/27 개정·시행)

- 투자성향 점수화(scoring)방식이란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으로 확정하는 방식
- 추출(factor-out)방식이란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확정하지 않고,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통해 적합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별하는 방법
- 혼합방식이란 점수화 방식과 추출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식
- 상담방식이란 투자자와의 상담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여, 적합한 투자권유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

- 투자자의 투자 경험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14조 : 2010/8/27 개정 · 시행)

- 임직원 등이 충분하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중지하여야 함

-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방식을 개선

(표준투자권유준칙 16조, 참고3 : 2010/8/27 개정 · 시행)

- 기존 5단계(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방식을 개선하여 위험도 측정 및 조정 시 참고할 만한 정성적·정량적 요소 등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증권, 은행, 보험 업종별 고객성향 및 취급상품 차이 등을 반영하여 위험도를 합리적으로 평가 및 분류하도록 함

## 12.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회원사의 위법·부당행위의 제재를 구체화하기 위한 가중·감면 사유 추가

(12조 2항 : 2010/9/17 개정, 9/20 시행)

- 최근 3년 이내 유사한 행위로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사실이나 유사행위의 반복성 및 고의·중과실 여부를 가중징계 요건에 추가
- 한편, 동일한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상당한 제재를 받았거나 행위 정도의 경미성 및 시정·변상 등을 고려해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감면 사유로 추가됨

- 회원사 및 회원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의 제재금 부과기준 수정 및 주의 조치 요건 개선 (별표1 : 2010/9/17 개정, 9/20 시행)
  -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회원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제재금 부과로 대체해야 하거나 위법행위로 금전적 손실을 회피, 부당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제재금 부과 가능
  - 위반행위가 경고사유와 관련이 없더라도 경미하게 규정을 위반했을 시에는 주의 조치 가능

### 13.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부동산 PF 업무 조직을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으로 구분하여 모범규준 구분 적용 (1편 3조, 3편 1장 14조 3항 : 2010/9/28 개정)
  - 고유재산 부문은 현행과 동일하게 영업조직, 사후관리조직, 리스크 관리조직, 심사조직, 의사결정기구로 분리하고 투자자재산 부문은 운용부서, 준법감시부서, 투자심의위원회로 나누어 담당업무를 구분
    - 운용부서는 투자의 계획, 실행, 마케팅, 자금관리, 사후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준법감시부서는 익스포져 설정 및 운용부서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투자심의위원회는 투자계획 심사 및 승인을 담당(3편 1장 13조)

**<부록 표-8> 부동산 PF 관련 개정 조직 구분 비교**

담당 업무	조직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고유재산	투자자재산
투자의 계획, 실행, 마케팅 및 자금관리 등	영업조직	영업조직	운용부서
사업장별 리스크관리 및 사후관리 업무 등	사후관리조직	사후관리조직	
익스포저 설정 및 통제관리	리스크관리조직	리스크관리조직	준법감시부서
사업성분석, 투자구조 및 리스크분석 등의 심사업무	심사조직	심사조직	투자심의위원회
사업계획, 심사업무, 사후관리에 대한 승인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기구	

□ 투자자재산 부문의 부동산 PF 투자계획 승인절차와 준법감시부서의 사후관리 (3편 2장 17조~18조 : 2010/9/28 개정)

- 부동산 PF 투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운용부서가 투자계획서 및 심사보고서를 준법감시부서로부터 확인을 받고 투자심의위원회에 제출
  - 개정 전 부동산 PF 관련 투자한도와 ABCP 투자 신용등급 기준제한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완화가 가능했으나 투자자재산 관련 부동산 PF는 투자심의위원회가 심의기준을 토대로 준법감시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투자계획을 승인하는 것으로 개정
- 사후관리업무 절차 및 기준은 준법감시부서가 마련해야 하며 업무수행자는 반드시 운용부서 외의 임직원이어야 함
  - 단, 운용부서 임직원이 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가 해당 임직원을 감독하고, 해당 임직원은 사후관리현황을 준법감시부서에 정기보고 해야 함

□ 투자자재산의 부동산 PF 관련 익스포저 설정 및 관리

(3편 2장 16조 : 2010/9/28 개정)

- 현재 운용하고 있는 투자자재산 부동산 PF의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준법감시부서가 기준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투자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면 투자심의위원회가 이를 점검하는 형태로 관리

## 14. 불공정거래방지 업무처리 모범기준

### □ 불공정거래방지 업무처리 모범기준의 목적

(1조~2조 : 2010/12/28 제정, 2011/1/1 시행)

-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투자업자 포함)가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함

### □ 불공정거래방지 업무처리 모범기준의 적용 대상

(5조 : 2010/12/28 제정, 2011/1/1 시행)

- 불공정거래 방지에 관한 업무에는 불공정거래 방지 체계의 구축 및 감독, 이상매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 점검, 이상매매의 사전 승인, 운용과 자산취득·매각 업무의 분리 및 위의 업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 포함

### □ 운용과 매매의 분리 원칙 (7조 : 2010/12/28 제정, 2011/1/1 시행)

-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이나 매각 등 실행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으며 (1항) 매매담당자는 매매업무와 운용지시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2항). 단, 관련법규에서의 예외사항은 제외.

### □ 매매담당자의 의무 규정 (8조 : 2010/12/28 제정, 2011/1/1 시행)

- 매매담당자가 투자중개업자에게 전달 또는 지시하는 매매주문은 관련 법령과 이 규준이 규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달받은 주문이어야 하며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 매매를 거부할 수 있음

□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행위 규정

(9조 : 2010/12/28 제정, 시행 2011/1/1)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행위
  - 특정시세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의 계속적 또는 순차적 제출, 단일가 매매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호가 제출, 시세를 변동시킨 후 대량거래, 시장수급상황에 반해 과도하게 거래, 동일가격 호가를 일정시간 분할 제출 또는 거래성립가능성이 희박한 호가의 대량제출 행위, 시세변동을 위한 풍문 유포,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수량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호가의 제출
- 시장흐름을 조작하는 행위
  - 장종료시의 가격을 당일의 최고가, 최고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만들기 위해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일정기간 동안 높은 가격으로 매수 후 낮은 가격으로 매도 하거나 이와 반대의 거래 또는 같은 가격으로 거래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소유나 매매의사 없이 가장하여 거래하는 행위, 그밖에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및 공신력을 훼손하는 행위

□ 불공정거래방지 체계 수립

(10조~14조 : 2010/12/28 제정, 2011/1/1 시행)

- 불공정거래 방지 모니터링
  - 회사는 점검항목을 만들고 (별표 1호부터 8호까지 참고) 이를 감시 및 분석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전산)을 운영해야 하며 그 결과를 1년 이상 전산으로 유지 및 관리 해야 함
- 준법감시인의 감시 의무 규정

#### IV. 금융투자협회 규정

- 준법감시담당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매일 점검하고 위반 발견 시 운용총괄책임자,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거래에 대해 소명요구 또는 매매중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통보 후 운용총괄책임자,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는지 수시로 관리 및 감독해야 함